

WTO가입과 중국의 금융법제도 개혁

(China's Measures for Improving the Financial Legal System In relation to the Accession to WTO)

2003. 10

연구자: 문준조(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국 문 요 약

먼저, 중국의 은행, 증권, 보험 등 3가지 금융분야에 대하여 WTO 가입에 따른 대외적 개방내용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부유의 은행중심적 금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금융기관간의 겸업금지와 엄격한 분업감독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유상업은행으로의 예금 편중현상,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문제, 금리규제, 국제경쟁력 낙후성, 대출비중의 과다 등은 중국 은행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중국 증권시장 역시 은행업 분야에 마찬가지로 중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보고서에서는 제도상·정책상의 문제점, 증권회사·상장회사·감독기구의 문제점 및 법률적인 문제점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보험 분야의 법제개혁에서는 먼저, 중국 보험시장의 문제점, 특히 회사 설립, 상품과 요율, 업무, 자산운용 규제와 건전성, 퇴출, 재보험 등과 관련된 규제주의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외국인 보험회사 관련규제와 시장 개방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WTO 가입이후 금융업 부문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주요 법령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법 이외에도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은행감독관리법, 인민은행법 및 상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증권법 개정논의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키워드 : 금융, 은행, 보험, 증권

Abstract

After its accession to WTO, China should comply with the legal duties to implement the WTO Agreements, including GATT and GATS as well as its protocol on the accession to WTO, resulting in having China's various sectors of service markets including the financial sector such as banking, stock exchange and insurance open to Contracting parties to WTO.

Among others, the above-mentioned sector has been considered to be the most vulnerable one on the part of China, it is the reason why China has made utmost efforts to open that sector to foreign countries and enterprises to the extent as narrow as possible in spite of its aspiration for the accession to WTO.

Since China has developed its own particular financial systems which are designed for the State's effective control. But such systems can not remain unchanged because China should implement the duties of WTO Agreements and commitments to the Contracting parties for the accession to WTO and make domestic enterprises actively respond to the overall openness of its financial market and obtain the competitiveness.

In this context, China has improved its relevant acts, administrative rules and regulations, and local laws in conformity with the rules of WTO and commitments. This

research paper is focused on introducing and analyzing not only China's recent improvements of financial laws but also the prospect for the future changes.

Key Word : Financial System, Banking, Insurance

목 차

국문 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3
제 1 절 연구의 목적	13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6
제 2 장 WTO가입과 중국의 금융분야 개방합의	17
제 1 절 의 의	17
제 2 절 GATS의 일반원칙	19
제 3 절 WTO가입에 대비한 금융법령 정비 현황	21
제 4 절 중국의 WTO가입을 위한 금융분야 개방 합의 내용	24
I. 주요 국가와 체결한 쌍무협정의 주요 합의내용	24
II.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상의 금융부문 합의내용	26
1. 은행업	26
2. 증권업 및 자산관리	27
3. 보험업	28
제 5 절 WTO가입에 따른 금융업 개방·발전을 위한 중국의 기본정책 방향	29
제 3 장 중국의 WTO 가입과 금융부문 법제개혁	37
제 1 절 은행업부문의 법제개혁	37
I. 중국의 은행제도의 발전	37

1. 의 의	37
2. 시기별 금융제도 추진상황	38
II. 금융기관의 조직체제	44
1. 은행중심의 금융구조	44
2. 금융기관의 구분	46
3. 법제도적 특징	56
III. 금융기관간의 점업금지와 엄격한 분업감독체제	57
1. 점업금지원칙과 전망	57
2. 은행업과 증권업의 협력	61
IV. 중국은행업의 현황과 문제점	62
1. 국유상업은행으로의 예금 편중현상	62
2.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문제	63
3. 금리규제	67
4. 국제경쟁력의 낙후성	68
5. 대출비중의 과대	69
V. WTO가입에 따른 은행업 개방과 전망	70
1. 은행업 개방 수준	70
2. 중국 은행업에 미칠 영향	75
3. 중국은행업의 과제	79
제 2 절 증권업 부문의 법제개혁	81
I. 중국의 증권업 발전단계	81
1. 사회주의 초기	81
2. 1979년 개혁개방이후 증권시장 성립이전까지	82
3. 1990년대초의 증권시장 성립이후 WTO가입이전까지	86
II. WTO가입이후 증권시장의 개방과 발전	92
1. WTO 가입이후 증권시장 개방	92
2. 증권시장 개방 확대의 영향	97

Ⅲ. 증권시장의 특징과 문제점	98
1. 제도상의 문제점	98
2. 증권정책상의 문제점	105
3. 증권회사, 상장회사 및 투자자와 관련된 문제점	106
4. 주식시장 후진성에 기인하는 문제점	113
5. 법적 문제점	115
Ⅳ. 향후 증권시장의 전망과 과제	121
1. 증권시장 개방의 전망	121
2. 시장구조의 변화	123
제 3 절 보험법 부분의 법제개혁	129
Ⅰ. 보험업 분야의 발전	129
Ⅱ. 중국 보험시장현황과 문제점	130
1. 1사 보험업 독점	130
2. 지나친 규제주의	131
3. 외국인 보험회사 관련규제와 시장 개방 현황	137
제 4 절 신탁업 부문	143
Ⅰ. 중국에서의 신탁업 발전	143
Ⅱ. 상사신탁업무	145
1. 신탁투자공사의 상사신탁업무	145
2. 기타 상사신탁 업무	147
Ⅲ. 신탁법의 및 주요 내용	148
1. 신탁법 시행의 의의	148
2. 주요 내용	149
Ⅳ. 신탁법 제정과 분업경영의 문제	154
Ⅴ. 신탁업의 과제	155
제 4 장 WTO가입 이후 정비된 금융업관련 주요 법령 ..	157

제 1 절 은행부문	157
I. 외자금융기구관리조례	157
II. 외국인투자리스회사심사승인관리관법	158
1. 입법배경	158
2. 주요내용	160
III. 외국인투자벤처캐피탈기업잠정규정	161
IV.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금융자산처리업무 관련 조세문제 통지」	164
V. 은행감독관리법, 인민은행법 및 상업은행법 개정안	165
제 2 절 증권부문	168
I. 중외합자펀드관리회사(外資參股基金管理公司)설립규칙	168
II. 외국인투자주식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169
III. 외자투자주식회사의 비상장외자주식을 B주식시장에서 유통하는 문제에 관한 보충통지	169
IV. 상장회사인수관리관법	170
V. 상장회사 국유주와 법인주의 외국인투자자에의 양도에 관련한 문제에 관한 통지	171
VI. 상장회사와 관련당사자 자금거래 및 상장회사의 대외적 담보 제공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통지	173
VII. 외자주식참여 증권회사 설립 규칙	174
VIII. 역외기관투자자역내증권투자관리잠정관법	176
IX. 역외기관투자자 역내증권투자 외환관리 잠정규정	176
X. 상장회사 주주의 보유지분변경 정보공시 관리관법	177
XI. 상장회사와 관련 당사자간의 자금거래 및 상장회사의 대외 담보 제공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통지	178
XII. 증권법 개정 추진	178
제 3 절 보험부문	179
I. 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保險公司管理條例) ...	179
II. 재보험사 설립규정(再保險公司設立規定)	181

Ⅲ. 2003년 개정 보험법	182
1. 의 의	182
2. 개정 배경	183
3. 주요 개정 내용	183
4. 개정보험법의 문제점	188
제 5 장 결 론	191
參 考 文 獻	19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1978년 덩소평의 개혁개방정책 선언으로 시작된 중국의 경제발전은 지난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금융제도도 많은 변화와 개선을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금융부문은 과거 오랜 기간동안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바로 이러한 위상으로 인하여 선진적인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중국경제발전과정에서 파생된 부정적인 부산물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WTO가입 이전까지 금융부문에서 자유경제원리 추구가 아닌 경제의 통제수단으로 인식하여 왔다. 다시 말해서, 금융부문을 중국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고 통제가능한 국유기관을 기반으로 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추구하여 왔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WTO 가입과 관련하여서도 대외 시장개방의 속도와 정도를 낮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2001년 12월 10일 WTO의 143번째 회원국이 됨에 따라 대외적인 개방공약과 가입의정서상의 양허내용을 스케줄에 따라 서비스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중국이 가장 우려하였던 부문은 바로 은행, 증권, 보험등의 금융부문인 바, 금융기관들이 국가의 정책적 보호하에 비정상적인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 개방의 충격과 영향은 대단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의정서와 대외적 약속내용에 따르면 은행업은 점진적으로 완전개방될 예정이다. 지역별, 취급 화폐 및 거래고객별 다양한 방법의 진입장벽 및 업무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

지역별로는 WTO가입후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여야 하고 취급대상 통화와 고객과 관련하여서는 WTO가입 3년 후부터는 중국 기업에 대한, 그리고 가입 5년후부터는 중국 개인고객에 대한 인민폐 취급업무를 허용하여야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은 증권 및 보험 등

의 자본시장 개방에 대해 극단적인 경계를 하여 WTO 가입 5년 후에도 자본시장 개방 수준은 49%으로 묶어 두었다. 이에 따라 증권 및 보험업은 50-51%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작 및 부분적 업무 허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WTO 가입에 따른 대외적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증권법, 보험법 모두 수정이 불가피하며, 이들 3분야의 분야의 분리주의는 겸업주의로 변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스톡옵션, 파생상품 등 각종 상품과 감독규정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금융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 및 그 운용과 관련된 발전 현황과 그 추이를 살펴보고 전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WTO 가입 직전까지 중국이 진행하여온 금융관련 법제 정비와 그로 인한 관련 금융부문의 시장 변화 그리고 WTO가입의정서상의 양허의 내용과 개방일정에 따라 정비되고 있는 주요 법령들의 갖는 의미와 변화내용을 살펴보고 그로 인한 중국 금융관련 법과 제도 변화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이상의 연구 목적에 따라 이 연구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대외적 개방내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이 미국, 일본, EU등 주요 국가와 체결한 WTO 가입을 위한 쌍무적 협정에서 명시된 금융분야의 개방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WTO가입의정서상의 구체적인 양허내용과 일정에 대해서도 은행, 증권, 보험 부문을 세부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3장은 WTO 가입이라는 맥락에서 중국 금융부문의 법제발전과 그 개혁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1절에서는 은행업 관련하여 먼저 중국의 은행제도의 시기별 발전과정과 변천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조직체제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 특유의 은행중심적 금융구조가 갖는 의미 및

금융조직체제와 그 구성기관들에 대해 보다 세분하여 그 기능과 관련 법제에 대해 소개하였다. 다음으로는 금융기관간의 점업금지와 엄격한 분업감독체제에 대해 소개하였다. 은행업과 관련된 이러한 기본적인 분석을 토대로 중국은행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유상업은행으로의 예금 편중현상,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문제, 금리규제, 국제경쟁력 낙후성, 대출비중의 과다 등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아울러 WTO가입에 따른 중국은행부문 개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상의 변화와 영향을 전망하고 중국은행업의 과제에 대해서도 진단하여 보았다.

제2절 증권업 부문의 법제개혁에서는 중국의 증권업 발전단계별 증권시장과 관련된 법제의 변천과 WTO 가입이후의 증권시장의 개혁과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중국 증권시장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소개하였다. 여기에서는 제도상·정책상의 문제점, 증권회사·상장회사·감독기구의 문제점 및 법률적인 문제점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3절 보험업 부문의 법제개혁에서는 먼저, 보험업 분야의 발전과 보험시장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회사설립, 상품과 요율, 업무, 자산운용 규제와 전전성, 퇴출, 재보험 등과 관련된 규제주의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외국인 보험회사 관련규제와 시장 개방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절 신탁업 부문에서는 명확한 근거 법률 없이 운영되어온 신탁투자기관들이 철저한 분업주의 실시로 인하여 겪어온 발전의 장애요소와 실제 영업과정에서의 애로 사항을 소개하고 중국 신탁업의 향후 과제를 전망하여 보았다.

제4장 WTO 가입이후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 부문에서 개정 또는 개정된 주요 법령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금년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은행감독관리법, 인민은행법 및 상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WTO 가입직전부터 개정이 추진되어왔으나 아직까지 개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증권법 개정논의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아울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법에 대해서도 상세한 개정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2001년 새로 제정된 신탁법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금융 부문은 중국의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가장 취약 부분중의 하나이고 법제 정비가 가장 낙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구자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단순한 법령의 내용 소개에 앞서 법률외적인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서는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의 법률외적인 요소들과 실제 운용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연구서는 순수한 법적인 접근방법에 따르기보다는 法的 및 非法的 요소들을 모두 고려한 이중적(dual) 접근방법에 따라 작성되었다. 아울러 지면상의 한계로 인하여 금융부문의 모든 현상과 문제점을 모두 추출해내는 것은 어려웠지만, 법적 요소와 법률외적인 요소에 대한 균형적인 연구·분석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편, 이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에 대한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다. 종전의 경우 중국 금융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구적 기준에 따라 재단하는 경향이 있었던 미국 등 금융부문의 선진국들의 자료가 훨씬 참고할 가치가 있었으며 중국의 자료들은 중국의 금융 상황에 대한 단순 소개와 방언논리에만 치우쳐 있었다. 그러나, WTO 가입전후 중국의 관료들과 학자들도 WTO가입과 관련하여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 내용들에 대해 깊은 연구와 대비를 하여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서구 학자들의 연구 성과물보다 참고가치가 많다고 생각된다.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서는 중국학자들 스스로 진단한 WTO가입과 관련된 중국 금융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최근의 저서들과 논문을 주로 참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비교법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선진국이나 우리 나라의 금융법 제도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은 너무 방대한 자료 수집·분석과 많은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그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중국의 금융업 현실과 법제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제 2 장 WTO가입과 중국의 금융분야 개방합의

제 1 절 의 의

중국은 약 15년에 걸친 노력 끝에 2001년 12월 10일 WTO의 143번째 회원국이 됨에 따라 상품무역은 물론 서비스 무역분야, 특히 금융시장 개방약속 이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WTO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GATS)의 기본원칙은 시장접근 허용, 내국인 대우, 최혜국 대우, 투명도, 시장자유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중국이 대외적인 개방공약과 가입의정서에서 약속한 바에 따라 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을 스케줄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WTO 가입에 따라 서비스무역협정(GATS)과 1997년 금융서비스협정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중국금융업에 여러 분야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외국이 중국에서 금융서비스회사를 설립하여 경쟁원칙에 따라 운용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중국의 모든 금융업무는 외국자본에 개방하여야 한다. 즉, 외국자본에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외국회사는 중국회사와 동등한 국내시장진입의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고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진입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금융시장에 진입하는 외국자본에 대하여 규모, 수량 분야에서 제한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¹⁾

그런데, 중국이 WTO가입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여 왔던 분야가 바로 금융부문이고 그 동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등의 금융기관들이 국가의 정책적 보호하에 비정상적인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부문의 개방보다 더 큰 충격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5-10년 이내에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세제, 업무영역 등에서 중국 금융기관들과 동일

1) 간단히 말해서 외국자본으로 하여금 중국금융시장진입에의 진입, 중국자본과 동일한 대우의 향유를 허용하고 중국시장 진입후에는 중국자본과 동일한 조건의 경쟁을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동시에 중국자본이 다른 제약국 금융시장에 진입하고 당해 국가의 자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최혜국 대우원칙에 입각하여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는 일국에 대한 금융개방과 우대를 무조건적으로 제3국에 대하여도 부여하여야 한다.

조건하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므로 외국계 금융기관 시장점유율이 급증하여 10년후에는 20-60%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외화예금 대출 및 국제결제업무 분야에서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시장점유율은 35-60%로 중국계 금융기관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민폐 업무 등에서는 중국계 은행의 점유율을 앞지르기 어렵고 약 10-3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 중국은 그 동안 WTO 가입을 준비하여 법을 개정해 왔으며 특히 2000년과 2001년 금융관련 법규정비를 가속화하였다. 금융법도 다른 중국법과 마찬가지로 정부간섭 및 자의적인 법적용 가능성이 높고 법, 규정, 조례보다는 통지, 공고, 의견, 잠정조례, 잠정규정 등의 보완적 형식의 규범성 문건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법이나 조례 등의 성문법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정부의 금융시장 간섭이 쉽도록 되어 있었다. 향후 중국의 금융법 분야도 다른 법 분야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종전의 입법상 문제점들이 시정되는 방향으로 법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즉 WTO가입과 더불어 요구되는 투명성(transparency) 수준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

이에 따라, WTO가입후에는 WTO 가입의정서²⁾ 및 대외적 공약에 따라 점진적 개방원칙에 따라 WTO 가입의정서에서 약속한 각종 개방일정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건전성 규제를 통해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입속도를 컨트롤하고 있다. 가입의정서와 대외적 약속내용에 따르면 은행업은 점진적으로 완전 개방될 예정이다. 다시 말해서, 종전에 행하여진 지역별, 취급 화폐 및 거래고객별 다양한 방법의 진입장벽 및 업무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 지역별로는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취급화폐 및 취급고객과 관련하여서는 WTO 가입 3년 후 중국기업, 가입 5년 후 중국 개인고객에 대한 인민폐 취급업무를 허용하여야 한다.³⁾

2) 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World Trade Organization WT/ACC/CHN/49/October 2001).

3)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경계를 해왔다. WTO 가입 5년 후에도 자본시장 개방은 49%에 불과하다. 종전부터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문제 여부는 IMF의 관찰사항이며 WTO의 관찰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

결국 WTO 가입에 따라 은행법, 증권법, 보험법 모두 수정이 불가피하며, 이들 3분야의 분리주의는 점업주의로 변화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도 중국은 업종간 상호진출 금지원칙에도 불구하고, 각종 우회진출이 활발하며 세계적 점업주의 추세에 따라 점업주의를 수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 제도나 금융기관 점업제도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 바, 금융지주회사 제도라 함은 은행, 증권, 보험, 신탁회사를 산하에 둔 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하여 직접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1개 금융기관 점업제도와 같은 UBS등과 같이 1개 금융기관이 은행업무 및 증권업무를 사내에서 점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뿐만 아니라 스톡옵션, 파생상품 등 각종 상품과 감독규정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 파생상품, 스톡옵션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인터넷 뱅킹과 온라인 트레이딩 및 관리감독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미비하여 동 분야에 대한 수정·보완될 전망이다. 팩토링, 자산유동화 증권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동 분야에 대한 내용들이 은행, 증권, 보험법 수정안에 포함될 것이다.⁴⁾

제 2 절 GATS의 일반원칙

첫째, GATS는 최혜국대우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GATS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회원국은 모든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른 회원국에게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지체없이 무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한다(제2조 제1항). 그러나, GATT와 달리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회원국은 "제2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합

권 및 보험업은 50-51%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작 및 부분적 업무 허용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중국계 금융기관과 외국계 금융기관 동등조건하에서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며 금융시장 추가 개방의 가능성도 있지 않다. 뉴라운드 협상에서 금융시장의 추가개방이 의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4) 2001년 하반기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및 중국인민은행 등의 금융구조개혁 실무반이 한국과 일본 등을 방문하여 통합감독기관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지만, 중국인민은행의 감독권한 이양에 대한 강력한 반대로 현재 잠정적으로 논의중단 상태이며 채택여부는 불투명하다.

의서"에 열거되어 있고 동 부속서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혜국대우를 이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조 제2항). 서비스무역의 경우에는 해운, 항공, 금융, 보험 등과 같은 서비스분야별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양자협정체제가 지배적이며 최혜국대우원칙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할 경우 관련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무임승차를 취하는 불공정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⁵⁾

둘째, GATS의 내국민대우원칙은 GATT와 달리 다소 제한적이어서 회원국의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s)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서 명시된 조건과 제한에 따라"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자국의 '동종 서비스'와 '동종 서비스공급업자에게 부여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 즉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제17조 제1항).

셋째, GATS의 투명성 원칙은 무역과 관련된 국내법규, 사법적·행정적 결정 및 정책을 명료하게 하고 공개하는 원칙을 말한다. 투명성 원칙은 명료성(clearness)과 공개성(publicity)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무역관련 규칙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방지함으로써 국제무역규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협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회원국은 GATS의 운용에 관련된 또는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즉시 공표하며 서비스무역에 관련된 또는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에 서명한 경우에도 공표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넷째, GATS는 개별업종의 자유화(시장개방)는 국가별 산업발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진전시켜 나가야 하며(제19조 제1항), 점진적 자유화 과정은 서비스 무역이사회에서 마련한 구체적인 협상지침과 절차에 따라 양자간·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진행된다(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점진적 무역자유화 방식에 있어서 GATS는 양허계획서에서 양허하는 서비스 분야는 "positive 방식"(양허하지 않으면

5) 崔承煥, 國際經濟法, (法榮社: 2001), pp.380-381.

자유화할 의무가 없도록 하는 방식)에 따라 기재하고, 양허된 분야에 대해 외국인의 서비스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는 'negative'방식(기재된 제한조치이외에는 규제하지 못함)으로 기재하는 절충적 방식을 채택하였다(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다섯째, GATS의 다원주의(multilateralism) 원칙은 중국의 시장개방수준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다원주의라 함은 관세수준과 기타 무역제한수준 등과 같은 각종 국제무역규범의 제정, 변경, 적용 및 집행은 모든 관련 국가의 참여하에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하며, 협정 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방적인 해결이 아닌 관련 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GATS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특정한 경우 상호주의와 지역주의를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상호주의라 함은 쌍방간에 동등한 대우를 약속하는 것으로 주로 양국간 무역협정이나 무역협상에서 주요한 기능을 하여 왔다.

특히 미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와 같이 자국의 국제경쟁력이 높은 분야에서 타국의 시장개방을 촉구하는 협상논리로 상호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GATS 제2조에 따라 최혜국 의무면제를 신청한 미국 등 다수의 국가들은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시장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리고 GATT와 달리 GATS에서는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가 회원국의 일반적 의무가 아니라 양자협상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호주의 또는 양자주의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지역주의는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지역경제통합협정을 체결하여 역내국가에 대해서만 최혜국대우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GATS 제5조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⁶⁾

제 3 절 WTO가입에 대비한 금융법령 정비 현황

WTO의 가입 및 더 나아가 중국금융시장의 개방확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중국은 지난 수년동안에도 금융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왔다. 전국인민

6) *Ibid.*

대표대회는 1995년 3월 1일 《중국인민은행법》을 제정하였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그에 뒤이어 《商業銀行法》, 《票據法》(어음수표법),⁷⁾ 《保險法》, 《證券法》, 《擔保法》 등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국무원은 《外匯管理條例》, 《企業債券管理條例》 등의 행정법규를 제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중국인민은행, 중국 증권감독회, 중국보험감독회 등이 일련의 規章을 제정하였다.⁸⁾

그러나, 중국이 WTO 가입직전까지도 여전히 외국계와 중국계 금융기관간의 법규상의 차별이 존재하였는 바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⁹⁾

구분	외국계	중국계	비고
취급 가능 업무 영역	은행, 증권, 분야에서 지역별, 고재별, 업무영역별 제한	분업주의 이외에는 별 차별 없음	WTO합의문에 따라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해 향후 3-5년 이내에 대폭의 시장개방 예정
소득세	5개 특구 및 49개 정 부지정 특구에 투자한 외국계기업 및 금융기관에 소득세 15%부과	소득세 33%	중국계에 대한 역차별로 반발이 심하며, WTO의 내국인대우원칙에 따라 법개정에 의하여 2003년부터 동일세율 적용

7) 어음·수표법은 어음·수표제도를 규정하고 어음·수표활동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다. 중국경제체제개혁이후, 어음수표제도는 자금 회부되어 어음수표는 지불, 환어음, 신용, 상계체무 및 운자 등의 면에서 중요하고 대체할 수 없는 작용을 발휘하여왔다. 1996년 1월부터 시행되어온 《중화인민공화국 어음·수표법》은 사람들이 날로 발전하는 거래중에서 더욱 빈번하게 더욱 원활하게 어음·수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음·수표가 가져야 할 작용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보장을 하였으며, 시장경제의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8) 이에 대해서는 張忠軍, “WTO與中國金融法制的完善”, 中國法學, 2000年 第3期, p.14-15.

9) *Ibid.*

구분	외국계	중국계	비고
은행 취급 가능 상품	예금 단기·중기·장기대출 국내외 결산 어음할인 정부채, 금융채, 주식및 기타 외화표시 유가증권 신용증 업무 및 보증업무 외환 trading 업무 환전업무 call market trading 은행카드 업무 custodian services 신용조사 컨설팅 기타 인민은행에서 인가 한 업무	예금 단기·중기·장기 대출 국내외 결산 어음할인 금융채권 발행, 정부채권 대리발행, 대리 결제 정부채권 매매 대리수금 업무 대리보험 업무 외환 trading 업무 환전업무 call market trading 은행카드업무 custodian services 기타 인민은행에서 인가 한 업무	근거법규: 외국계는 〈外資金融機關 管理條例〉, 〈外資金融機關 管理條例 實施細則〉 중국계는 〈商 業銀行法〉 적용 *특히 중국계 은행은 비 은행 금융기관의 주식 취득 등 투자업무를 할 수 없으며 업무목적 이 외의 부동산 투자 업적 제한

한편, WTO가입이 목전에 다가오자 중국도 이에 발맞추어 WTO가입에 대비한 대대적인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중국법의 특징이 반영된 금융법제도의 불합리한 점들은 WTO의 가입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해소될 필요가 있었다.¹⁰⁾ 중국은 이미 15년 가까이 WTO 가입을 준비하여 법을 개정해왔으며 특히 2000년과 2001년 금융관련 법규정비가 가속화되었다. 아래에서는 2000년 및 2001년 개정현황을 소개하였다.

10) 흔히 중국법의 특징으로 정부간섭 및 자의적인 법적용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즉, 법, 규정, 조례보다는 통지, 공고, 의견, 잠정규정 등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하거나 불확실한 형식의 이권 바 규범성 문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법이나 조례 등의 성문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시행에 대하여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정부의 금융시장 간섭은 대단히 용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의적인 법 적용 및 人治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외국인들에게 대단히 높았던 것이다. 沙銀華, 「中國投資·金融債權に關聯する紛争の解決策課題-CITIC系列ノンリンクの例産·債務不履行等事件を中心に」, 國際商事法務, Vol.29.No.7(2001), p.845.

중국의 금융관련 법규 개정현황¹¹⁾

구 분	제 지	실 효	신규발표	비 고
2000년	12건	7건	17건	신규발표법규는대부분 의견통지공고등의형식
2001년	3건	6건	61건	

제 4 절 중국의 WTO가입을 위한 금융분야 개방
합의 내용

I. 주요 국가와 체결한 쌍무협정의 주요 합의내용

먼저, 中·日間 쌍무협정의 금융분야에 관한 합의내용(99년 7월)을 다 음과 같다. 은행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외국은행의 인민폐 영업 제한, 지리 적 제한, 중국인 및 중국기업에 대한 영업 제한을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증권사와 관련하여서는 증권회사는 합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한다. 보험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은 합작기업 설립을 허가하고 손해보험은 지점 및 100% 외자기업의 설립을 허가한다. WTO 가입시점에는 大連, 上海, 廣 州 3곳을 개방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업무범위는 점차적으로 개방한다.

中·美間 쌍무협정의 합의내용(1999년 11월)에서는 중국은 은행 서비 스와 관련하여 중국은 5년내에 미국계 은행에 대해 완전한 시장접근을 약속하며 외국은행은 WTO가입 후 2년 내에 중국기업을 상대로, 5년내 중국개인을 상대로 인민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역적 제한 및 소비자 제한은 5년내에 철폐하며 중국은 WTO 가입시 비은행 외국금융회사의 자동차 금융업무를 허용한다.

11) 中國人民銀行, Annual Report 2001 및 2002.

증권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중국과 합작기업이 중국기업과 동등의 조건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중국기업의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합작증권회사에 대해 이와 동일한 업무범위 인정한다. 외국인 지분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합영기업은 중국국내 증권 인수, 외화기준 증권(사채와 주식)의 인수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중국의 WTO가입 즉시 외국재산보험·손해보험회사가 중국 내에서 高리스크 보험업무를 인정하고 5년을 초과하는 장래의 라이선스에 대해 모든 지리적 제한을 철폐한다.

보험분야에 관련하여서는 중국의 WTO가입후 5년이내에 화재보험과 상해보험분야에서 외국 보험회사의 지역적 제한은 철폐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보험회사의 업무범위는 가입 후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단체보험·의료보험·연금보험 등으로까지 확대되며 이 분야 수익이 전체 이윤의 85%까지 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국내지점 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 생명보험업자는 스스로 지분파트너 선정이 가능하고 WTO가입시에 50% 지분보유를 인정하고 비생명보험업자와 재보험업자에 대해서는 전역출자의 자회사를 2년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국 보험회사의 영업허가 신청규제도 철폐된다. 투자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자의 다수지분 보유(majority ownership)도 인정되어, 외국기업은 합작보험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외국 생명보험회사의 중국내 합작회사 설립신청조건이 철폐되고 중국 내 지점설립이 자유화되게 된다.

셋째, 중국·EU間 쌍무협정의 합의 내용을 보면 은행분야의 경우 외국계 은행회사에 대한 지역적 영업제한을 철폐하고 인민폐 영업을 허용하며 특히 보험시장의 개방 시기를 크게 단축시켰다. 의료보험, 연금보험, 단체보험 등의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의 개방시기를 2년간 단축시키고 100% 외자의 보험중개업의 중국내 진출 길을 열어 놓았다.

II.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상의 금융부문 합의내용

1. 은행업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p>○ 대부분 외국계은행은 외국기업과 외국인 대상 외환업무에 종사</p> <p>○ 일부 외국계은행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외국기업/외국인대상 위엔화업무 개시</p> <p>○ 외국계은행의 중국기업/중국인대상 영업 금지</p> <p>○ 외국계 독자/합자은행 설립 허용</p> <p>○ 모든 주요 도시에 외국계은행 지점 각 1개 설치 허용(자산 US\$ 200억 이상)</p> <p>○ 외국계은행의 자회사 설치 허용(자산 US\$ 100억 이상)</p> <p>※외환업무</p> <p>○ 대부분의 외자은행은 외자기업, 외국인에 대해서만 외환업무 가능</p> <p>※위엔화업무</p> <p>○ (상하이 및 선전 소재) 32개 외국계은행이 위엔화 영업허가증 보유</p> <p>○ 상하이(上海), 선전(深圳)지역 외국기업/외국인 상대의 제한적인 위엔화 영업</p> <p>○ 상하이소재 외자은행은 江蘇, 浙江 지역 고객상대 영업 가능</p> <p>선전소재 외국계은행은 廣東, 廣西, 湖南 지역 고객상대 영업 가능</p>	<p>● 가입후 5년내 모든 지역 및 고객제한 규정 폐지</p> <p>● 엄격한 심사관리기준에 따라 영업허가증 발급. 가입후 5년내 외자은행의 소유권, 경영 및 법정형태에 관한 제한 규정 폐지</p> <p>● 중국계은행과 동시에 외국계은행에 대해서도 금융리스업무 허용</p> <p>● 비은행 금융회사의 자동차할부금융업무 허용</p> <p>● 외자은행이 부속기관 또는 지점을 설립할 경우, 총자산 US\$ 200억을 초과해야 함</p> <p>※외환업무</p> <p>● WTO 가입후 외환업무의 지역제한규정 폐지</p> <p>● WTO 가입후 외국계은행의 중국기업/중국인 대상 외환업무 허용</p> <p>※위엔화업무</p> <p>● WTO 가입후 위엔화업무 지역제한 규정 단계적 폐지</p> <p>- 가입후 : [上海, 深圳, 大連, 天津]</p> <p>- 1년내 : [廣州, 珠海, 青島, 南京, 武漢]</p> <p>- 2년내 : [濟南, 福州, 成島, 重慶]</p> <p>- 3년내 : [昆明, 北京, 廈門]</p> <p>- 4년내 : [汕頭, 寧波, 瀋陽, 西安]</p> <p>- 5년내 : 전역 지역제한 폐지</p>

현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내 3년이상 영업기록과 최근 2개년도 흑자경영일 경우에 한해 위엔화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후 2년내 중국기업, 5년내 일반가계대상 위엔화영업 허용 ● 한 지역에서 위엔화영업이 허용된 외국계은행은 다른 개방지역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가능 ● 외자은행은 개업후 최소 3년(최초 2년 흑자달성요건)이후 위엔화영업 신청가능

2. 증권업 및 자산관리

현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p>※증권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계 증권회사는 외국인전용 B株만 거래 가능(역외투자자 대상) ○ 외국계 증권회사는 국제증시에 상장된 채권, 증권 매매 가능 <p>※자산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기업의 자산관리업무 참여 불허 ○ 외국계 펀드관리회사의 중국계 펀드회사 고문 역할 가능 	<p>※증권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가입후 3년내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 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p>※자산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유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3년 경과후 49%까지 확대 가능함)

3. 보험업¹²⁾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p>○ 중국내 영업 가능한 외국계 보험회사는 20개 미만으로써 영업지역과 범위의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음</p> <p>○ 외국계 보험회사는 상하이와 광저우(廣州)에서만 영업 가능 단, AIG는 선전, 푸산(佛山)에 영업장 보유</p> <p>○ 각 도시별로 지점 1개 사만 허용</p> <p>※非생명보험</p> <p>○ 외국계 非생보사는 지점설립이 가능하나 고객은 외자기업으로 제한. 자동차 보험업무 불가</p> <p>※생명보험</p> <p>○ '97년부터 외국계 독자 생보사의 선별적 설립 허용(개인생명보험만 취급 가능)</p> <p>※재보험</p> <p>○ 해외 재보험회사는 위엔화업무 취급불가</p> <p>○ 재산·상해보험회사는 부보액의 20%를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재보험해야 함</p>	<p>●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년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년후, 전 세계적으로 총자산 US\$ 5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p> <p>● 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廣州, 深圳, 大連, 佛山을 시작으로 가입후 2년내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瀋陽, 武漢, 天津 등지로 확대. 3년 내 지역제한 전면 폐지</p> <p>● 지역제한의 점진적 취소에 따라 외자 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p> <p>※非생명보험</p> <p>● 지점설립 또는 외국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이 가능. 가입후 2년내 독자 부속기업 설립도 허용</p> <p>● 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도 폐지. 제한적 역외기업 보험, 외자기업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도 가능</p> <p>※생명보험</p> <p>● 외자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p> <p>● 제한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가입후 3년내 의료, 단체, 퇴직, 연금보험 가능</p> <p>※재보험</p> <p>● WTO 가입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합자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p> <p>● 가입 4년내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p>

12) 楊國華, 『中國加入WTO法律問題專論』, (北京:法律出版社, 2002), p.159이하의 中國服務貿易讓許表的 관련 부분을 참고하였음.

제 5 절 WTO가입에 따른 금융업 개방·발전을 위한 중국의 기본정책 방향

중국에서 일련의 법제도 개선 및 제안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금융법 제도이다.¹³⁾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상업은행법·보험법·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외국인의 금융분야에의 직접무자가 규제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외자금융기관에 관한 관리조례와 국무원의 관련 조례에 의해서도 개별적인 규제되어 왔다. WTO 가입과 관련하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¹⁴⁾

WTO가입을 전후하여 중국 당국이 추진하고 있고 중국 금융업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업화와 세계화의 지향형 금융업 발전방안이다. WTO 가입에 따라 중국 금융업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은행 복합경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은행, 신탁투자, 증권, 보험 업무를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외자은행의 설립이 허용된다면 자본력과 서비스 질의 우위를 앞세워 많은 우수 고객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고, 이는 중국 국유 은행의 이윤을 감소시켜 중국 금융업은 전체적으로 열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¹⁵⁾

이에 대비하여 중국인민은행은 2001년 7월에 '상업은행 중간업무 잠행 규정'을 공포하여, 은행들이 중국인민은행의 기준을 거쳐 금융파생 업무, 증권 대리 업무, 투자자금 위탁 업무, 자문 및 재무 고문 등의 투자은행 업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은행들은 계좌 조사, 여수신 등에 대한 통제 등을 통하여 불량채권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주식제 신설 상업은행들은 규모확대를 위하여 5년내 상장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떤 은행들은 국외 은행과의 합병을 통하여 국제 금융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13) 중국 학자의 입장에서 본 중국 금융업법의 방향에 관해서는 江平, "關於金融立法的講演," 『中國律師』2001年 5期(總 第127期), pp.56-60.

14) 姜一春, "中國의 WTO에加盟に向けて의實際と法制度改革の現狀課題," 『國際商事法務』, Vol.29, No8(2001), p.959.

15) 繆劍文·羅培新, 『WTO與國際金融 法律實務』, (長春: 吉林出版社, 2001), pp.1-3.

기초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둘째, 신용사회 보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다. 1996년 지방성 은행인 중국 초상은행이 최초로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4대 국유은행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업은행들이 은행 전산화 및 온라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자체 전산망을 구축하고 신용카드(대부분 Debit Card이며, 타행거래 불가)를 발급하고 있으며, 또 온라인 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2002년에는 중국은행연합이란 조직을 중국인민은행 산하에 신설하여 은행공동망 구성 및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몇 개 지역 및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추어져 있는 상하이시의 경우는 향후 5년내에 100만 개의 금융POS를 보급하여 1인당 1장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셋째, 금융 리스크 관리를 위한 노력이다. 중국 은행들은 금융 리스크 이전과 관리가 아직도 완벽하지 않으며, 리스크의 분산과 해소 능력이 세계 각국 은행들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중국내외 자체적인 평가에 따르면, 미국 은행의 불량자산 비율은 0.67%에 불과하나 중국 국유 은행들의 자산 전성성은 하락하고 있고, 자산 회수율도 서방 은행들보다 평균적으로 2% 정도 낮다. 따라서 각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금융 리스크 분산 및 해소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넷째, 금융업무의 규범화 작업의 강화이다. 과거 중국 은행들의 모든 업무중에서 국제관계 표준에 부합하는 비율은 겨우 30%에 불과하며, 이는 글로벌 경영 및 국제 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각 업무와 경영관리제도의 규범화를 조속히 달성하고 국제관계의 요구에 맞추어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금융업무의 규범화 작업은 중국의 금융 이론계와 실무 업계의 공통적인 목표였다.

이처럼 중국 금융기관들은 5년이란 짧은 기간내에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WTO일정보다 앞당겨 의자

은행에 위엔화 영업을 허용하고 영업허용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의 세계적인 금융기구들도 중국내 지점을 확충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정책 방향에 따라 중국은 관련법의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관련 대외적 수락내용 및 은행감독에 관한 국제관례, 선진국의 국가감독정책과 감독경험 그리고 중국의 中資은행에 대한 감독정책과 그 경험을 토대로 하여 국무원은 《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를 개정하여 2002년 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WTO가입관련 대외적 수락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외자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22일 국무원은 《外商投資保險公司管理條例》를 제정하여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¹⁶⁾ 동 조례는 외상투자보험공사의 설립과登記, 업무의 범위, 영업중지와 청산, 감독관리, 법률책임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례는 향후의 보험시장개방을 촉진하고 외자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외국보험회사의 보험활동을 규율하고 보험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 《保險法》은 외자주식참여의 보험회사의 설립, 외국보험회사의 중국내 지점설치에 대해서는 동 법을 적용하되 그 밖의 사항에 대해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경우 그러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WTO 가입이후 단계적으로 보험과 금융업을 개방하여야 하므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험법》과 《증권법》도 정비하여 시장경제요구에 적합한 보험제도와 증권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보험법은 그러한 방향으로 이미 개정되었으며 증권법에 대해서도 그 2003년 11월 현재 그 개정안이 심의중에 있다. 2002년 2월 5일 열린 중앙 국무원 주최의 “전국 금융업무회의”에서는 10.5 계획 기간 동안의 주요금융업무로 ①현대금융, 시장, 감독, 조절 시스템을 전일보 구축하고 ②금융감독관리

16) 이에 대해서는 沙銀華, “中國WTO의加盟後外資保險公司に對する新しい法規則-「外資保險会社の管理條例」の構造解明問題點(上)”, 『國際商事法務』, Vol.30, No.2(2002), pp.197-199 참조.

및 능률적인 강력한 구조 조정 ③금융기업 금융 매커니즘의 전전화와 자산의 질 향상 ④금융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금융계 인재 확보 등으로 선정하여 WTO가입 후 금융업계의 전반적인 경쟁력 증강과 “금융이 현대 경제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갖고 금융업무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방향에 따라 WTO가입에 따른 대외적인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중국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첫째, WTO가입후 외자계 금융기업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처하게 될 중국금융기업의 구조개혁과 체질강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유상업은행의 주식회사로의 전환 가속화, 비국유자본의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하여 국유상업은행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금융업의 통합재편·업무 제휴·리스크 관리 등을 통하여 금융시스템 전체가 전전화게 움직이도록 하고, 주식·채권 등에서부터 생산관리·재무투자·가정은행·소비자금융·자산증권화에 이르는 금융방식의 다각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다.¹⁷⁾

둘째, 무자가와 소비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외자에 대한 금융 감독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외자계 금융기업에 대한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예저축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⁸⁾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중심이 되는 감독기능을 현행 시스템은 여전히 변함이 없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한다는 금융정책의 기초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그러한 감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자체가 안정기준을 설정하고 정부가 설정하는 외자진출기준과 조건을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¹⁹⁾ 실제문제로서 WTO 가입의정서와 가입실무단 보고서상의 금융 분야에 관한 개방 스케줄에 따라 중국은 외자은행에 관한 소유권, 경영과 설립방식, 지점 및 허가증 제도 등과 관련된 제한을 폐지할 것이지만,

17) 이에 관해서는 'Financial Reform in China,' http://www.chinaonline.com/commentary_analysis/instreform/currentnews/secure/c00. 참조.

18) 陳俊, "WTO所要的我國金融立法創新", 『法學雜誌』, 2001年 4期(總 127期), p.43.

19) 張忠軍, *op.cit.*, p.16.

외국금융기업의 중국 금융시장에의 진입(entry)에 대한 심사기준·조건은 여전히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²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향후 외자계 금융기업에 관한 관리조례를 기초로 하여 외자가 참여하는 금융기업의 자본구조·수량·관리자 상황·업무범위·경영능력 등을 심사하는 기준·조건이 법제화가 필요하며 외자계 은행의 인민폐 취급업무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지역을 초월하여 인민폐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심사허가를 요구하고 그 경영방식의 합법성·자산리스크·자본충실도·유동자금과 준비금 등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위법한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금융관련법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²¹⁾

셋째, 외자계 금융기업들은 발달된 정보기술을 통해 금융서비스 산업을 변모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금융기관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전자이체·전자화폐 등의 중개시스템은 금융서비스의 이용자(user)와 자금의 제공자가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종래 보다 낮은 가격에 간편하게 자금의 흐름을 가능하게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은 수년전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금리의 변동, 금융·이체시장의 유동성과 리스크 등이 결합된 무기적이면서 복잡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외국의 금융기업과 그룹이 국제적인 금융상황을 신속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금융수단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한편, 정부의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수단의 공급자와 구조를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안도²²⁾ 제기되고 있다.

넷째, 보험분야의 경우에는 외국보험회사로 하여금 충분한 상환능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보험금을 일정비율로 억제하면서 가입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총량규제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다.

20)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劉洋海, "入世對中國金融業的影響及其法律對策",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400.

21) 史樹林, "入世"影響我國外資制度的幾個問題, 法學研究, 2001년 第21期(總第125期), p.4

22) 張忠軍, *op.cit.*, p.18.

중국이 WTO 가입과 더불어 중국의 금융시장은 차츰 전지구적 금융시장 일체화의 행렬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외국금융기업들이 차츰 중국금융시장에 진입하여 여러 가지 금융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현재, 외국은행·외국보험회사의 중국자본회사와의 합자를 통한 일부 유통시장에의 진입, 중외합작투자기금의 설치 형식에 대한 허용, 중외합작기업과 외자기업의 중국국내증권시장에의 상장, 요건을 구비한 외국투자자에 대한 일정한 한도내에서의 중국국내주식시장 개방 허용 등에 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²³⁾ 금융시장의 개방은 중국금융기업들로 하여금 종전에 경험하지 못한 경쟁과 도전에 직면하게 할 것이다.²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은 가능한 빨리 경제체제개혁의 행보를 서두르고 현대기업제도를 확립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금융시장의 개방은 국제관례에 따라 진행되고 운용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으며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분야의 법률은 내용면에서 시장경제운용법제에 부합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GATS협정과도 연계되어야 한다.²⁵⁾

중국이 현재 구상중인 단계적인 금융시장개방조치의 실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한 금융분야의 법률이 GATS협정에 한 걸음 다가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현행 《상업은행법》, 《보험법》 및 《증권법》 등 관련법률이 국제관례와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투자기업법》과 《先物法》 등의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중국금융분야의 법률이 전진해지고 완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전자상거래, 稅收 및 사회보장 등의 관련 시장경제분야의 법률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중국자본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 이에 대해서는 劉文華(主編), 『WTO與中國企業法律制度的衝突與規避』, (北京: 中國城市出版社, 2001), 참조.

24) WTO 가입직전까지 중국은행(BOC)은 중국의 WTO(WTO) 가입에 대비하기 위해 1천개 이상의 사무소를 폐쇄하였다. 국내의 정보기술(IT) 센터 숫자를 1천40개에서 110개로 감축했으며 2002년 5월까지 추가로 106개 사무소의 문을 닫았다. BOC는 기술적 기반과 응용 소프트웨어의 불일치로 인한 낮은 정보 공유를 때문에 애를 먹어왔으며 IT센터 중앙집중화 프로그램은 중국의 WTO 가입에 대비해 취해진 전략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5) 張忠軍, *op.cit.*, p.18.

WTO 가입후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서비스무역 분야에서는 단계적으로 은행, 보험, 전신, 무역, 여행, 광고, 건축공정, 대외노무합작, 변호사 업무 등의 개방을 추진하여야 하며 외상투자에 대하여 내국인대우를 하고 서비스무역에 관한 법률·법규를 정비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²⁶⁾ 한편 중국으로서도 WTO 규칙이 허용하는 보호성 조치와 과도기를 어떻게 충분히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 바, 중점 사업에 대한 경쟁력의 제고 및 국내서비스무역 분야에 대한 충격의 완화에도 고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미 이상의 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대비하여 일련의 행정법규와 部門 規章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으며 WTO 규칙과 중국 대외적 수락내용에 근거하여 현행의 전문서비스 분야의 외국인투자진입 금지규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함으로 향후 대규모의 독자, 합자 또는 합작의 외상전문서비스기업이 설립될 것이다.

26) WTO 규범에서 투명성을 요구하는 규정들은 대단히 많다. 예컨대, GATT 제10조, GATS 제3조, TRIPs 제63조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方法·楊國華, "WTO對成員貿易法制度的透明度要求", 法學研究, 2001年 第2期(總第125期), pp.28-29 참조.

제 3 장 중국의 WTO 가입과 금융부문 법제개혁

제 1 절 은행업부문의 법제개혁

I. 중국의 은행제도의 발전

1. 의 의

등소평의 개혁개방으로 시작된 중국의 경제발전은 지난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금융제도 역시 많은 변화를 보여왔다. 사실 중국의 금융부문은 지난 기간 동안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러한 위상으로 인하여 선진적인 구조를 갖지 못하였다. 오히려 경제발전에서 오는 부정적인 부산물을 모두 떠 안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WTO가입 이전까지 중국정부는 금융에 대하여 자유경쟁원리 추구가 아닌 경제의 통제수단으로 인식하여 왔으며 금융부문에 있어서 비교우위에 기초한 국제적인 분업에 반대하여 왔다. 다시 말해서, 금융을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고 통제가 가능한 국유기관을 기반으로 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추구하여 왔던 것이다. 상업은행법 41조에 의거, 은행의 정책자금 지원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국유은행의 부실자산 양산 전체여신의 약 50%에 이룰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²⁷⁾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재정지출로 상당수 국유기업들의 경영적자를 보전해왔으나 정부의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국유기업의 점진적인 개혁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경제 자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금융잉여(金融剩餘)'를 통해 국유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국정부는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뿐만 아니라 대출총액의 75%를 차지하는 4개의 가장 주요한 상업은행과 3개의 정책성 은행²⁸⁾을 직접 관할하고 있

27) 劉文華(主編), *op.cit.*, pp.86-87.

28) 張長利, "政策性銀行法律地位研究", http://www.law-lib.com/lwlv_view.asp?no=1104.

기 때문에 국유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정책 의도를 가장 신속하고 간단하게 관찰시킬 수 있었다. 국유은행이 주도하는 금융 시스템은 중앙정부가 금융잉여라는 중요한 경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금융잉여는 화폐발행 잉여와 마찬가지로 모두 중앙정부가 금융 시스템을 통해 장악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경제 자원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화폐발행 잉여는 국민들이 중앙은행을 통해 중앙정부에 상납한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의 화폐화가 낮은 경우에만 정부가 만들어 낼 수 있다. 그에 비해 금융잉여는 국민들이 정부 소유의 은행에 예금하게 되고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 금리수준을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서 결정되는 수준보다 낮게 유지할 경우 그 차액의 형태로 나타난다.

정부는 국유은행이 주도하는 금융 시스템을 통해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예금자들의 자금을 사용하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잉여를 국유기업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표 실현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금융시스템을 통해 얻는 금융잉여는 정부의 공식 금리 수준에 반비례하며 국유은행의 대출액 규모에 정비례한다. 특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경우 금융잉여는 화폐발행 잉여와 마찬가지로 예금자들이 국유은행을 통해 정부에 제공하는 일종의 조세라고 할 수 있다.

2. 시기별 금융제도 추진상황

(1) 개혁개방이전의 계획경제시기(1949년부터 1978년까지)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상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저조한 상황이며 개혁개방의 속도가 느린 편이다. 중국 금융체제의 발전은 몇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첫째가 개혁개방이전의 계획경제시기로서 1949년 공산화 이후 78년까지이다. 이 시기의 금융시스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의 도구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은행의 역할은 실물부문의 경제계획의 목표들 달성하기 위해 국유기업에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출납창구와 같은 단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인식하에 이 시기에는 중국인민은행이 모든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단일은행체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중국인민은행은 1948년 12월 설립된 이후, 상업금융을 겸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상업은행의 기능까지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인민은행의 기본적인 역할은 실물부문의 경제계획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유기업을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것이었으므로 재정부와 국가계획위원회 등 국가의 출납계 및 금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당시 인민은행은 제반 국가계획경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자금의 지급창구 기능을 담당하였고, 국유기업에 대한 무상자금의 배분과 결제, 운영자금의 관리, 가계예금의 수납 등 자금의 배분과 회계출납창구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금융중개기능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은행대출은 예산에 의해 할당된 재정자금을 초과하는 일시적이고 예측치 못한 자금수요(재고축적이나 원료구매 등)를 충당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도 일부 특수은행이 설립되었으나 이는 재정부나 중국인민은행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교통은행과 그 후신인 중국건설은행은 재정부 산하기관이었으며 중국은행은 실질적으로 중국인민은행의 외환담당부서였다.

(2) 금융기초확립기(1979년부터 1988년까지)

이 시기에는 금융체제의 기초확립과 다양화가 추진되었던 시기이다. 단일은행체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금융기관의 설립이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의 前期에 해당하는 1979-1983년의 기간동안 일어난 금융체제상의 중요한 변화로는 중앙은행의 창설과 전업은행 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먼저 인민은행을 중앙은행으로 재창설하여 중앙은행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인민은행은 산하 부서인 인민건설은행(1978년)과 중국은행(1979년)을 독립채산제로 분리 독립시켰으나, 도시상업은행 업무는 여전히 인민은행이 수행하였다. 그리고 인민건설은행과 중국은행은 전문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국책은행성격으로 專業銀行化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전업은행인 中國農業銀行(1979년)을 신설하여 인민은행의 농촌 금융업무를 이관하였다.

이 기간중에는 여러 비은행 금융기관도 설립하였는데, 먼저 농촌에 대한 은행업무 수행을 위해 6만여개의 농촌신용합작사를 농업은행 산하에 설립하였다. 1979년에는 해외자금 조달을 위해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CITIC)를 창설하는 한편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각 성 단위의 국제신탁투자공사(ITIC)를 설립하여 외자차입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1981년에는 인민건설은행 산하에 중국투자은행(1981년)을 설립하여, IBRD와 세계금융기구에서 차입된 대형 프로젝트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83년 9월에는 중국인민보험공사가 복원되었다. 그런데 80년대 중반까지도 은행체제의 상업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은행업무의 중점은 경제계획의 성공적 목표달성을 위한 자금지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인민은행 역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後期라고 할 수 있는 1984년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더욱 복잡·다양하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동안 각종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신설하여 전업은행의 독점현상을 해결하고 은행간의 업무를 적당히 중복시켜 경쟁체제를 확립하는데 중점이 주어졌다. 1984년 1월에는 네 번째 專業은행인 中國工商은행이 설립되어 인민은행으로부터 상업금융기능을 분리, 인민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기능만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단일은행체제에서 벗어나 이중은행체제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中國工商銀行이 그 동안 인민은행에서 담당하여 온 도시 상업은행 업무를 인수함에 따라 4대 국유전업은행 체제가 정착되었다. 중국공상은행은 산하에 1,200여개의 도시신용합작사(城市信用合作社)를 설립하여 개인기업이나 집체기업을 대상으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비록 소유권은 국가에 있지만 경영권은 개별은행이 보유하는 형태를 띤 이들 전업은행이 독립채산제로 경쟁하게 된다.

또한, 1984년 10월 제12기 3중 전인대에서 “경제체제개혁연구”를 본격적으로 거론하였으며 1986년 1월 국무원은 인민은행, 상업금융, 신탁 등 비은행업무를 종합한 “은행관리잠정조례”를 발표함으로써 법규적 성격의 규정이 성립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모든 형태의 금융업무 취급이

가능한 종합은행을 신설하여 전업은행과 경쟁체제를 형성했다. 중국교통은행을 1987년 4월에 종합은행으로 확대 개편하였고, CITIC이 전역출자한 中信실업은행을 1987년 제2의 종합은행으로 탄생시키는 등 전국적 은행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도시 신용합작사 및 지역은행 신규설립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즉, 연안 개방도시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深圳발전은행(1987년), 招商銀行(1987년), 광동발전은행(1988년) 등 지방상업은행들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신탁투자공사, 증권회사, 리스회사, 보험회사 등을 대거 신설하여 제2금융권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외국은행에 대해 대외무역거래 등 제한된 범위의 영업을 허가하는 동시에 1986년부터 모든 국내은행에 대해 대외거래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경쟁체제를 대외적으로 확대하였다.

한편으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4개의 전업은행인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인민건설은행의 업무상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경제특구에서는 제한된 수의 외국은행 지점 개설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중국인민은행 지점은 다른 전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각급 행정기관이 통제하고 있었다.

(3) 긴축정책을 위한 금융개혁 속도완화기(1983년부터 1991년까지)

이 시기는 治理整頓期로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금융개혁 속도가 완화되던 때이다. 1988년 9월 공산당 13기 3중전회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금융개혁 속도가 완화되고 긴축선회를 결정하면서 금융자금의 직접적 배분으로 복귀하였으며 상당수의 신탁투자회사의 분폐합과 전업은행과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 후 1991년 11월 공산당 13기 8중전회에서 긴축정책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4) 발전기(1992년부터 2001년까지)

92년초 등소평의 남순강화를 계기로 금융체제의 다양화·상업화와 개혁이 본격화되었다. 93년 12월 제14기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확립을 위한 금융개혁 원칙이 결정되어 중앙은행의 독립, 정책금융과 상업은행의 독립, 전업은행의 상업은행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94년

국가개발은행, 중국농업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등 3개의 정책은행이 설립되었는바 국가개발은행은 국가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대출업무, 중국농업개발은행은 농산품 수매와 농촌장기개발자금 공여를, 중국수출입은행은 무역금융을 담당하였다. 1994년과 1995년은 '금융 입법의 해'로 불리우는 바, 1995년 3월에는 중앙은행법인 《중국인민은행법》을 비롯하여, 《상업은행법》, 《어음법》, 《보험법》 등 금융4법과 《담보법》, 금융질서교란처벌 규정이 정식 공포됨으로써 금융 관련 규정의 법제화가 확립되었다.

먼저 95년 3월에 공포한 《중국인민은행법》은 중앙은행으로서 인민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거시정책 조절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강조하였다. 또한 同法은 통화가치 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민은행이 지방정부, 기업, 개인의 간섭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전업은행 지점의 한도초과 대출을 인민은행 지점이 거부하지 못하여 신용팽창이 초래되었고, 그 결과 효율적인 통화정책을 집행할 수가 없었다.

결국, 인민은행 지점이 보유하던 대출한도를 조정권(연간 대출율을 실제 자금수요에 따라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상해, 심천 2개지점을 제외하고 폐지하는 대신 인민은행 본점과 국유상업은행 본점간의 합의에 의해 대출한도율을 조정하도록 하여 인민은행의 독립적 자금운영권을 보장하게 된다.

또한 정부에 대한 인민은행의 대출을 규제하고 인민은행에 독립적인 예산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시켰으며, 재정적자를 중앙은행 차입으로 보전하던 방식을 제한하는 동시에 단기차입금 한도제를 실시하였다. 인민은행은 '97년 4월 통화신용정책 조정업무를 담당할 「화폐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집행하기 시작한다.

다음으로 《상업은행법》 제정을 통해 상업금융과 정책금융을 분리한 점이 이 시기에 두번째로 중요한 개혁조치이다. 전업은행은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의 병존, 내부 관리체계의 미확립이라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이중 정책금융 문제는 은행의 전전경영을 저해하고 부실채

권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전업은행이 담당해 오던 정책금융업무와 상업은행업무를 따로 분리하여 각각 '정책성은행'과 '국유상업은행'으로 이관시켰다.²⁹⁾

즉 1994년에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中國進出口銀行), 중국농업발전은행 등 3대 정책성은행을 설립하여 중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대출과 장기신용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기존 4대 전업은행은 국유상업은행으로 전환하여 일반 상업은행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인민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의 제정에 의하여 종래의 전업은행을 일반 상업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는바, 이들은 국유상업은행으로 지칭한다. 이로써 중국은 현대적 금융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용역과 법률적 기초를 정비하게 된다.

이에 따라 97년말부터는 더욱 그 개혁이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 전업은행에서 전환한 4개의 「국유독자상업은행」, 정책금융을 취급하는 국책은행인 3개의 「정책성은행」, 전국적 지점망을 가진 「전국종합은행」인 4개의 전국적 상업은행, 특정지역에서만 은행업을 영위하는 「지방상업은행」 그리고 외국계은행인 「外資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나뉘게 된다.

이중 지방은행은 87년 이후 지역경제발전을 목표로 시작된 것들이다. 한편 외자계 은행은 82년에 최초로 외자은행의 영업을 허용하여 이미 97년 당시에 134개의 외국은행지점, 7개의 중외합자은행, 5개의 외자독자은행이 영업하고 있었다. 또한 외국금융기관의 대표사무소는 540여개가 설치되어 170여개의 외국계 금융기관이 영업하고 있었다. 또한 기타 비은행 금융기관으로서 농촌 및 도시신용합작사, 신탁투자공사, 증권회사, 재무공사, 리스회사, 보험회사들도 이미 설립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5) 개방기(2002년이후)

2001년 12월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금융부문의 개방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외자계기업의 중국진출과 더불어 이미 80년대 초반부

29) 繆劍文·羅培新, *op.cit.*, p.72.

터 은행산업의 개방이 시작되었는 바, 80년에는 외국기업의 사무소 진출을 허용하였으며 85년에는 경제특구내에 외국은행 지점, 합자은행 및 외자은행의 설립이 인정되고 90년 경제특구 이외의 지역으로 상해에 최초로 외국은행 진출이 허용되었다.

92년까지는 상해와 경제특구에 한하여 외국은행 지점 또는 합자은행의 설립이 허용되었지만 WTO가입직전에는 중국 주요 24개 도시에서 지점 또는 현지 법인 형태로 진출하였으며 외국은행의 무역금융에서의 비중은 25%에 달하였다. 그러나, 외국은행의 취급업무영역은 제한되었는 바, 특히 인민폐취급업무는 96년 12월부터 일부 은행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II. 금융기관의 조직체계

1. 은행중심의 금융구조

중국금융제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문은 은행부문이다. 중국 금융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는 개혁·개방 이전부터 구축된 은행중심 금융제도(bank-based financial system)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의 기업자금 조달은 아직까지 은행을 통한 간접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개방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구축된 은행중심의 금융체제는 급속하게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유효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이 은행중심의 금융체제를 가지게 된 데는 사회주의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은행을 통한 신용배분이 경제발전이 직접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반부터 사금융 성격의 주식 발행시장이 형성되고 1990년대 초반 증권거래소의 개선과 함께 중국의 주식시장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지만, 중국 기업의 외부자금조달은 여전히 은행차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기업의 고정자산 형성에서 은행대출 의존도는 1993~99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43.5%에 이르는 반면에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같은 기

간 동안 2%도 채 되지 않는다. 1996년부터 기업의 은행대출 의존도가 감소하고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2000년 말 기준으로 주식시장 자금조달액은 은행대출 증가분의 11%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의 회사채시장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대략적으로 직접금융/간접금융 비율을 의미한다. 요즘 국유대기업의 경우 해외 증권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지명도를 갖춘 제한적인 숫자의 대기업에게만 해당되고 있다.³⁰⁾ 중국에서는 국유상업은행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용배분이 정부주도로 국유기업에 이루어지다 보니 사금융제도가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도 서서히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금융제도의 일부를 차지하는데 지나지 않았고 은행이 기업 자금지원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였다.

중국이 어느 개발도상국가와 마찬가지로 은행중심 금융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금융억압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금리규제 및 차별적 신용배분으로 특징지워지는 후발산업국가들의 금융억압정책은 상당 부분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개발초기에 직면하는 장기신용의 필요성, 제도적 열악성, 경제개발에 대한 사회적 긴급성, 모방단계의 기술수준 때문에 제도적 반응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그리고 은행중심 금융제도는 금융억압 또는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금융구조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금융체계는 사실상 은행중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국유상업은행, 정책은행, 외국계은행, 신탁투자회사, 농촌 및 도시 신용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예금금융기관이 중국의 금융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특히 국유상업은행이 예금·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³¹⁾ 이러한 금융체계는 1990년대초에 개설된 증권거래소와 더불어 증권시

30) 1998~2000 기간 동안 해외증시를 통한 자금조달 총액은 인민폐 약 687억元이다 (中國金融年鑑 2001, p.383).

31) "Chinese Economist Argue For State-Owned Bank Market Listings", China On Line, <http://www.chinaonline.com/industry/financial/NewsArch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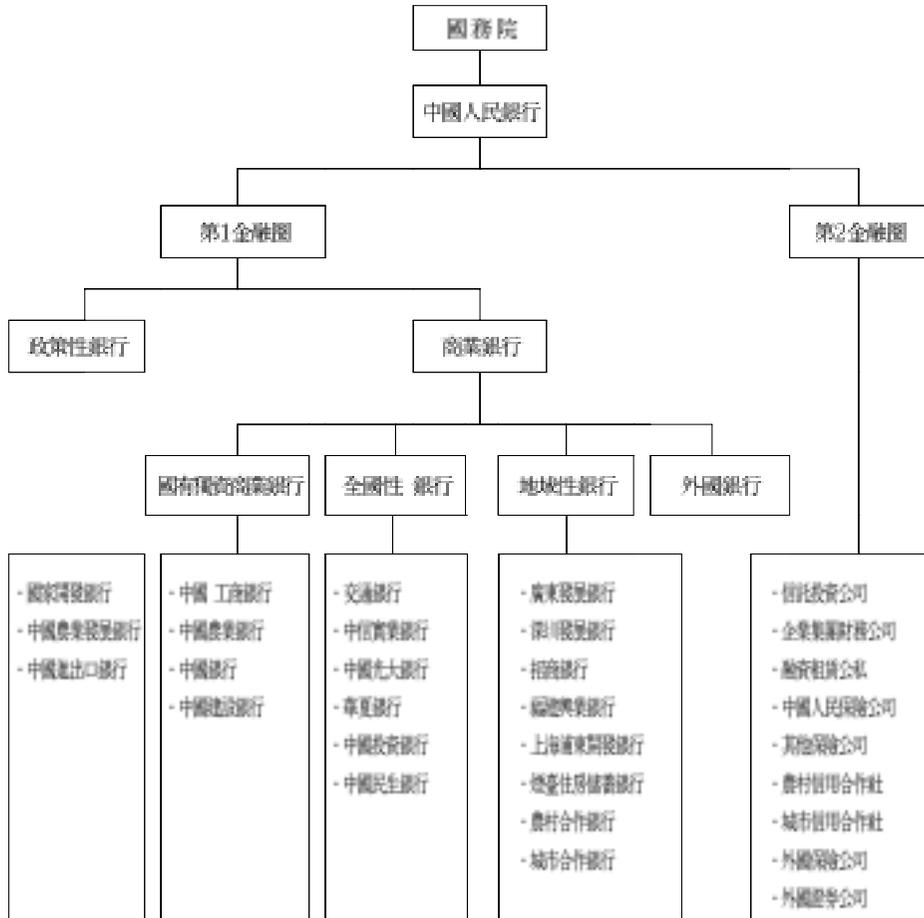
장이 급성장하면서 더욱 복잡·정교해지는 과정에 있다. 보험시장은 금융시장중 가장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체제를 거치는 동안 국유기업 등 소속기관이 사회보장적 기능을 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금융기관의 구분

(1) 의 의

중국의 금융기관은 크게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으로 구분되며 제1금융권은 정책성은행, 국유상업은행/전국성상업은행, 지역성 상업은행, 외국은행으로 세분될 수 있으며 제2금융권은 증권회사, 보험회사, 신탁투자회사, 재무회사, 리스회사, 신용조합등으로 세분될 수 있다. 금융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은행의 설립목적 및 소유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질 수 있다.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 1개, 정책성은행(국책은행)으로서 농업발전은행,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中國進出口은행) 등 1개, 국유상업은행으로는 중국국민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등 4개, 비국유은행으로는 교푹은행, 중국광태은행, 중신실업은행, 초상은행, 화하은행, 중국민생은행, 광둥발전은행, 상해포동발전은행, 심천발전은행 등 10개의 전국규모 상업은행과 99개 지역 상업은행이 있으며, 3,200개 도시신용회사, 44,000여개 농촌신용회사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 35개, 증권회사 102개, 신탁투자공사 240여개 등 비은행 금융기관 550여개, 외자금융기관 720여개(이중 영업점포 210여개)등이 있다. 이로서 중국에는 현재 총 5만여개의 금융기관들이 설립되어 있다(2002.6말 현재). 한편, 2003년 6월말 현재 한국제 7개 은행(상해 2, 천진 4, 대련 1)이 인민폐영업허가를 취득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중국의 금융조직체계도



(2) 은행

1) 중국인민은행

주요부서가 분리되어 나가 국유상업은행이 되기 이전에 중국인민은행은 재정자금지원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1995년부터 시행되는 중국인민은행법에 의하여 중앙은행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며 통화가치의 안정과 경제성장 촉진 등 국가 통화정책 수립과 금융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현 29개 정부부처중의 1개부서로서 통화신용정

책을 종합적으로 수립·관리하고 있으며, 통화정책의 수립 및 조정, 화폐 공급 등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해 1997년 4월 “화폐정책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위원장은 인민은행장, 부위원장은 인민은행 부행장(2), 경제발전기획위 부주임(차관급), 재정부 부부장(차관급:1인), 외환관리국장, 증권감독위주석, 보험감독위주석, 국유상업은행장(2인), 금융전문가 1인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위엔화 통화가치의 안정과 함께 경제성장의 촉진을 목표로 설립된 것이다. 또한 중국인민은행내의 은행관리국은 국유상업은행 등의 은행들과 신탁투자회사 및 신용조합등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인민은행의 기능은 1995년 “중국인민은행법”에 의거 중앙은행으로서 업무가 확정되었는 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화폐, 신용정책 수립
-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공개시장조작등을 통한 화폐조절수단도입
- 예, 대 금리의 결정
- 환율운용 및 관리
-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의 감독
- 인민폐 발행 및 관리
- 예, 대 금리의 결정
- 환율운용 및 관리
-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의 감독
- 인민폐 발행 및 관리

중국인민은행은 본점과 9개 대구역에 따른 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①天津→天津/河北/山西/內蒙古, ②沈陽→遼寧/吉林/黑龍江, ③上海→上海/浙江/福建, ④齊南→山東/河南, ⑤武漢→江西/湖北/湖南, ⑥廣州→廣東/海南/廣西, ⑦成都→四川/貴州/雲南/西藏, ⑧西安→陝西/甘肅/青海/寧夏/新疆 등이다.

2) 국유독자상업은행(State Commercial Bank)

국유독자상업은행(이하 “국유상업은행”이라 한다)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존 4대 전업은행이 정책대출업무를 '94년 설립된 정책성

은행에 이관한 후, 전환한 은행이다. 이들중 특히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등의 4대 국유상업은행이 대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국유상업은행이 비록 상업은행이기는 하지만 국가소유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차별적인 신용배분은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³²⁾ 4대 국유상업은행은 예금잔고가 점차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95년말 현재 전체 금융기관 예금의 68.8%를 차지하는 등 시장지배력이 높은 상태이다. 반면 국유상업은행은 높은 시장점유율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 증가 등의 문제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책금융업무가 정책성은행으로 이전 되었으나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하고 거액의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국유상업은행이 여전히 장기 저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³³⁾

또한 정부는 국유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국유상업은행에 특정 국유기업에 대한 저리의 대출을 증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4대 국유상업은행은 '96년말 현재 대출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정도이나 70% 이상이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이어서 국유기업의 경영부실화로 인한 부실채권 증가가 은행경영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이다.³⁴⁾

국유상업은행은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부서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국유상업은행은 자기자본 비율 8%이상, 대출비율 75%이하, 유동비율 25%이상 및 동일인 대출한도 10%이내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 독립채산제 실시한다. 그 업무는 여수신, 주택대부, 송금 및 결제(국내 및 국외), 외환(대입, 대도), 리스, 은행간 거래 수출신용업무, 유가증권(발행, 거래), 채권(발행, 거래)에 관한 것이다. 그 종류와 역할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⁵⁾

32) 繆劍文·羅培新, *op.cit.*, pp.75-78.

33) 李純貴, 趙玉寶, "商業銀行論中的貸款風險及防范",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948.

34) 참고로 '97년에 발표한 세계 100대 은행 자산순위를 보면 중국공상은행이 9위, 중국은행이 26위, 중국건설은행이 31위, 중국농업은행이 49위를 차지하고 있다.

35) "Chinese Economist Argue For State-Owned Bank Market Listings", China On line, <http://www.chinaonline.com/industry/financial/NewsArchive/Secure/1999/november/B>.

국유상업은행은 주로 국가 중점사업의 대출업무를 실시한다. 농업대출 부서가 독립한 중국농업은행, 해외무역부서가 독립한 중국은행, 프로젝트 금융 및 건설자금 대출 부서가 독립한 중국건설은행, 시중은행업무를 담당하는 중국공상은행 등 4개의 국유상업은행이 있다. 비록 국유상업은행이 상업금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소유의 은행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간섭에 의한 차별적 신용할당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중국 금융위기의 잠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³⁶⁾ 전국성 상업은행은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하고 종합적인 금융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성 상업은행은 1987년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상해, 심천지역에서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해당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하고 타지역은 사무소의 형태로 진출이 가능하다.

3) 전국성 종합은행

중국의 상업은행은 크게 국유상업은행(4개), 전국에 지점망을 가지고 종합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전국종합은행(6개), 일정한 지역 내에서만 영업이 허용되는 지방상업은행(80여개)으로 분류된다. 국유상업은행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대부분의 은행업무가 4대 국유상업은행에 집중되어 있고 전국종합은행이나 지방상업은행의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기존의 국유상업은행 이외의 상업은행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 지역에 집중적인 영업망을 갖춘 상업은행외에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상업은행이 등장한다. 국유상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은 국유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중소기업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에 대한 자금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신설상업은행의 등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교통은행, 중국민생은행 등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은행은 2000년말 10개사가 있으며 심천발전은행, 상해푸둥은행 등 지역기반 상업은행은 90개사가 있다.

36) 李純貴, 趙玉寶, “商業銀行論中的貸款風險及防范”,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948.

이들은 최근에는 지점망을 확대하면서 지역적 특성을 탄피하고 있다. 1995년 7월에 공포된 <상업은행법>이 명시하고 있는 상업은행의 주요 업무 및 특성을 보면, 예금수납, 장단기 대출, 국내외 결제, 어음할인, 금융채 발행, 국제매매, 은행간 콜거래, 신용장 발부, 외화매매, 보험업무 대행, 대출금 납부대행, 금고보관 서비스, 그밖에 중국인민은행이 허가한 업무인 국제외 발행, 상환, 위탁판매 등이 있다. 반면 상업은행은 신탁투자와 주식업무를 하지 못하며 비은행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투자도 금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全國性銀行이라 불리는 이들 전국종합은행((Comprehensive or Universal Bank))은 중국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교통은행을 부활시키고 이어서 증신실업은행의 설립을 허가하면서 종합은행을 육성시키기 시작하여 현재 총 6개의 종합은행이 있다. 국유상업은행이 전액 정부출자인데 반해 종합은행은 모두 주식회사로서 국유기업, 집제기업, 사영(私營)기업, 개인투자자 등이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華夏銀行은 首鋼集團이라는 철강회사가 대주주로 있으며, 1996년에 설립된 중국 최초의 민영은행인 民生銀行은 59개 민영기업이 대주주이다. 국유상업은행이 행정구역마다 지점을 설치하여 업무가 중첩되는 등 효율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전국종합은행은 경제특구나 경제가 발전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점을 설치하여 경영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4) 지방상업은행

지방상업은행은 지역별로 그 업무범위가 한정된 상업은행이라는 의미에서 區域性銀行으로 불리는데, 이들 은행은 해당지역에만 지점을 개설할 수 있고 기타 지역에는 비영리기구인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 지방은행은 주로 경제특구 등 경제가 발달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은행업을 영위하고, 전국종합은행과 마찬가지로 해당지역의 지방정부, 국유기업, 집제기업, 개인투자자 등으로 지분이 분산되어 있다. 일례로 광둥성 심천시에 본점을 둔 심천발전은행의 경우 중국 유일의 상장은행이며 전체 주식 중 국가소유는 48%인데 반해 민간소유가 52%를 기록하고 있다.

신용합작사의 지방상업은행으로의 전환이 14기 3중전회(93년 11월)에서 결정된 이후 도시신용합작사는 95년부터, 농촌신용합작사는 96년부터 지방상업은행 전환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95년 북경, 상해, 천진, 심천, 석가장 등 5개 도시에서 도시신용합작사를 주식제 지방상업은행으로 전환하려는 시험작업이 시작된 이래 96년 7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60개의 도시합작은행이 설립된 상태이며 중국 정부는 향후 99년말까지 100개 도시에 도시합작은행을 설립할 계획이다.

도시합작은행 역시 주식회사로 지방정부가 대주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민사책임을 지는 독립법인체로서 독립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1도시 1은행 설립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도시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같은 省, 市에 속한 하부 행정단위라 하더라도 縣, 區에는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5) 정책성은행(Policy-related Bank)

1994년 전액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政策性銀行은 그 설립 목적이 이전의 전업은행이 담당해 온 정책대출업무를 대신하는데 있는 만큼 중앙부서인 국가계획위원회가 결정한 국책 사업부문에 대한 장기자금 공급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3개의 정책성은행이 있는데 국가개발은행(94년 3월 설립), 중국수출입은행(94년 7월 설립), 중국농업발전은행(94년 11월 설립)이 이들이다. 정책성은행은 금융채 발행을 통해 필요자금의 약 90%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재정자금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실제 대출업무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4대 국유상업은행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政策性銀行의 업무는 금융부문의 거시경제관리능력을 강화하며 국가중점사업에 대한 정부의 대출 및 장기신용업무등 과거 專業銀行에서 이관된 정책금융업무를 수행한다. 즉, 상업은행이 상업금융을 담당하는 반면에 정책성은행은 공공사업과 관련된 정책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³⁷⁾ 흔히 專業銀行이라고 불리던 은행은 특정분야의 금융업무를 전문

37) 張長利, 『政策性銀行法律地位研究』,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1104.

적으로 취급하던 은행으로 정책성 업무와 상업성 업무를 병행하였다. 그러나 정책성 업무는 政策性銀行으로, 상업성 업무는 國有獨資商業銀行으로 각각 이관되었다. 정책성은행의 종류와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개발은행은 국가의 지주산업 및 기초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중국농업발전은행은 농업부문에 대한 용자지원으로 농촌 및 농민 생활수준 제고에 주력하고, 中國進出口銀行은 기계·전자제품 및 설비의 수출증대를 통한 수출상품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들 정책성은행은 사회간접자본 및 국가전략산업에의 투자를 위해 장기 금융채의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6) 외자은행

지금까지 중국정부는 해외자금 조달, 선진금융기법 및 관리방법 도입하여 자국의 취약한 금융부문을 개혁·발전시키기 위해 외자은행의 진출을 허용하였으나 상당히 제한적인 개방방침을 견지하여 왔다. 외자은행은 아직까지 중국내에서 차지하는 입지가 그다지 크지 않다. 중국의 국내은행들이 위엔화 업무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단지 무역금융관련 외화업무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WTO가입으로 외국계은행은 2년내에 중국기업에 대하여, 5년내에 중국개인에 대해 위엔화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들의 입지의 차츰 커질 전망이다. 이들은 주로 상해, 심천, 북경을 중심으로 23개 도시에서 영업중이며, 대부분 외국은행의 지점 형태로 운영된다.

(3) 비은행 여·수신금융기관

비은행 금융기관(제2금융권)으로는 신용조합, 신탁투자회사, 재무공사, 리스사 등의 비은행 여·수신 금융기관과 증권회사/보험회사로 구분될 수 있다.

1) 신용조합

비은행금융기관인 신용조합은 농촌 및 도시 지역에서 그 지역 특성에 맞추어 여·수신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농촌신용조합은 농촌소재 개인

과 기업을 상대로 농업관련 영업을 하며, 도시신용조합은 도시지역 중심으로 정부기관 및 국유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 이들은 일반개인을 상대로 여·수신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상업은행들과 경쟁관계를 가진다. 또한 1990년대 중반이후 중국정부는 구조조정차원에서 동일한 지역의 도시신용조합을 병합하여 도시상업은행으로 변모시켰다.

2) 신탁투자회사(信託投資公司)

1979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지방정부는 증가하는 잉여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은행은 대출자금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신탁투자공사는 종합적인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 신탁업무, 신탁대출, 재산신탁 3가지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³⁸⁾ 경제건설에 필요한 외자도입 및 해외화교로부터 신탁자금유치와 리스·해외투자 및 외국투자자에 대한 자문서비스 등 은행, 증권, 투자은행 업무를 모두 취급하는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등 200여개의 신탁투자회사 설립되었으며³⁹⁾ 정책성 은행이 설립되고 상업은행 및 증권회사의 발전으로 종전에 수행하여오던 주요 업무가 은행 및 증권사로 이관되어 기존 업무영역이 위협받게 되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BOT(build operation transfer) 등을 통한 자금조달 업무, 직접투자 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제조업·무역업·서비스업에의 진출 등 새로운 경영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38) 신탁투자회사는 은행들이 대출한도를 우회할 목적으로 자회사로 설립하였다. 이들은 정부의 신용계획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에 비해 더욱 느슨한 법적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 이와 같이 관련법규의 미비로 일부 소수 회사를 제외하고는 경영이 방만하고 신뢰성도 낮은 편이어서 향후 정부는 제도정비를 통해 이들 회사의 전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 및 기업의 잉여자금을 예치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 등 계획에 없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신용공여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의 법정기준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유치하는 등 부작용이 상당히 나타났다. 그러나, 홍콩증시에 상장되기도 하며 홍콩자본의 대중국진출 통로로 활용되는 등 외국자본유입에 일조하기도 하였다.

39) 중국정부는 아시아 외환위기에 금융위기 예방차원에서 신탁투자회사에 집중적인 회계감사를 실시, 영업정지처분을 내려 현재 그 규모는 상당히 축소된 상태이다. 당시 파산하였던 광둥국제신탁투자회사(GIYIC)는 신탁투자회사중 두 번째로 큰 회사였으며 남부지방의 부동산 개발 등에 주로 투자하였다. 沙銀華, “中國投資·金融債權に關聯する紛争の解決策課題-CITIC系列ノンバンクの倒産·債務不履行等事件を中心に”, 國際商事法務, Vol.29.No.7(2001), pp.839-840 참조.

3) 재무회사

재무회사는 1997년에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주로 은행간 거래, 상업어음 할인, 증권거래, 금융컨설팅 등에 치중한다. 일반 기업의 자회사로 설립된 경우에는 계열회사의 잉여자금 동원 및 대출에 참여하기도 한다. 재무회사는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내에 존재하는 일종의 금융회사로서 기업이 전액 출자한 법인체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그룹내 회사들에 대한 임대·대출·투자 등의 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외영업은 하지 않으며 행정관리상으로는 소속 그룹사인 企業集團에 속해 있으나 업무상 인민은행의 지휘·관리·협조·감독·검사를 받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인민은행이 1996년 9월 공포한 《企業集團財務公司장정관법》에 의하면 재무공사는 기업집단의 인원으로 그룹내 기술혁신, 신제품개발, 제품판매 등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기구로 규정하며, 특히 3개월이하의 단기에금 적립을 금하여 중장기 금융업무를 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공사는 중국내에서 주식의 매매나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부동산 및 다른 회사의 주식·회사채 등에도 투자할 수 없다.

(4) 증권회사

중국의 증권시장은 1949년 공산화로 폐쇄되었으나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에 의하여 실업적으로 운영된 후, 상해 및 심천에 증권거래소가 개설되면서 본격적인 성장기에 돌입한다. 1990년 상해거래소 개설후 1991년 심천거래소가 개설되었다. 이들 거래소에서 활동하는 증권회사는 지방정부, 은행, 신탁투자회사 등에 의하여 설립되며, 국내주식과 채권의 발행, 인수, 중개에 참여한다. 20여개의 대형 증권회사가 국내주식의 인수 및 거래의 80%를 차지하며 재정부에 의하여 설립된 일부 증권회사는 국제발행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 海通, 銀河, 南方, 中信등이 주요 증권회사이다.

(5) 보험회사

중국의 보험시장은 1995년 보험법이 정식으로 통과되어 상업보험의 성격 및 업무영역,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의 분업경영원칙, 계약의 형식 등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체제정비가 이루어진다. 이에 의거하여 최대 국유보험회사이던 중국인민보험공사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전국단위 및 지역 단위 보험회사가 신설되었다. 중국인민보험공사의 명맥이 이어진 중국인壽보험외에, 중국평안보험, 중국태평양보험, 신화인수 등이 주요 보험회사이다.

3. 법제도적 특징

중국의 금융관련 법적 제도는 1차 개혁·개방시기(1979~93)가 끝나고 1993년 말에 마련된 개혁청사건에 의거하여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한다. 1995년에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및 보험법이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1998년 12월에 통과된 증권법은 1999년 7월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중국의 법적 제도는 개혁·개방이 시작된 지 15~20년만에 구축된 것으로 실물경제의 성장과 병행하여 발전하였다기 보다는 급속한 실물경제의 성장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정비되어 왔다.

중국의 금융관련 법체계에서 또 다른 주목할만한 특징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도기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중앙은행법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와 '국가의 발전목표'간에 일종의 타협점을 찾고 있다. 중앙은행법의 제정으로 한편으로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법적 지위, 통화정책 집행의 독립성, 금융기관 감독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강화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국무원이 중앙은행의 행장 및 부행장을 임명하고 화폐정책위원회의 운영, 통화정책의 수립, 국가발전전략의 수행과 같은 주요 안전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은 여전히 국무원의 지시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⁴⁰⁾

40) 중국인민은행법 제38조는 당국의 정책집행에 의한 중앙은행의 손실이 재정자금으

이러한 과도기적 요소는 상업은행법에서도 나타난다.⁴¹⁾ 상업은행법〈제 41조〉에 의하면, 국유상업은행은 국무원의 지시를 받거나 필요한 경우 국무원의 승인 아래 국가의 정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에 대한 국유상업은행의 손실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국유은행 지점에 대한 지방정부의 간섭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국유은행의 자금에 대한 당국의 정책적 활용과 지시적 대출의 손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지속적인 정책금융의 길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국유상업은행의 실질적 상업은행화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금융관련 법안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의 과도기적 타협점이며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는 법적 제도의 발전 과정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Ⅲ. 금융기관간의 겸업금지과 엄격한 분업감독체제

1. 겸업금지원칙과 전망

1996년이래 중국의 자본시장과 화폐시장은 엄격한 분업경영(分業經營)⁴²⁾을 실시하고 있어 시장이 분리되어 있는 바, 중국금융제도는 은행, 증권, 보험 등 3대 핵심 금융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지금 까지 이들 금융기관간에는 다른 업종 진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로 보전된다고 언급한다. 이것은 양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통화정책과 당국의 지시에 따른 準 재정정책의 격리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당국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반영한다.

41) 금융법체계는 금융조정통제법분야와 금융거래법분야로 나눌수 있다.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중양은행법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인민은행법 이외에도 정책성은행법, 通貨法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상업은행법은 본질적으로 특수기업법인 뿐이며 전통적인 민상법의 범주에 속한다는 지적"(郭志雲, 鄭普英, "芻議金融調控法體系", 法學雜誌, 2002年 第6期(總第134期), p.32.)이 있으나, 중국의 현행 상업은행법상의 지나친 국가의 통제적 규정들을 감안해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WTO가입이후의 상업은행법 개정과 그에 따른 상업은행 향후 올바른 발전방향을 적시한 것으로는 가치 있는 지적이라 할 수 있다.

42) 현재 중국은 상업은행이 증권, 보험, 무자, 신탁 등 자본시장에 진출하여 영업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 '분업경영'이라는 용어는 중국금융시장의 특성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당시의 특수한 금융환경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인 종합경영(混業經營 또는 綜合經營)⁴³⁾과 배치된다.

이러한 엄격한 분업주의 내지는 겸업금지주의는 관례적으로 이득된 것이 아니라 상호겸업을 금지하는 상업은행법, 증권법, 보험법 등 법률의 명시적 근거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분업체제는 1999년 Gramm-Leach-Bliley 법이 시행되기 전의 미국식 분업체제를 따르고 있다.⁴⁴⁾ 중국 당국은 현재 <상업은행법 제43조>, <증권업법 제6조> 및 <보험법 제104조>에 의거하여 은행, 증권 및 보험분야의 상호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금융기관의 분업경영을 바탕으로 1998년 말 엄격한 분업감독체제를 수립하였다. <상업은행법 제43조>, <보험법 제104조>, <증권법 제6조>에 의거 은행, 증권, 보험분야를 중국인민은행,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 중국 보험관리감독위원회에서 각각 관리감독 하도록 하며 상호겸업을 금지하여 왔던 것이다. 감독권한이 가장 강한 중국인민은행은 1995년에 통과된 중앙은행법으로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이 부여되었다.⁴⁵⁾ 중국인민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상업은행, 합작사 금융기관, 신탁투자공사 및 재무공사에 대한 인가나 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각각 증권업과 보험업을 책임지고 있다.⁴⁶⁾

그러나 중국인민은행은 금융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두 감독관리위원회와 비교하여 상대적 상급기관으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은행관리국을 통하여 비은행금융기관인 신탁투자회사, 재무회사, 신용조합 등에 대한 감독도 함께 하는 바 이들이 예금금융기관이기 때문이다. 감독대상 금융기관의 범위가 넓은 만큼 중국인민은행은

43) 종합경영은 분업경영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상업은행이 자본시장의 업무까지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劉定華, 鄭遠民, "金融監督的立法原則與模式", 法學研究, 第24卷 第5期(總第142卷)(2002), p.118 참조.

44) 1999년 11월 12일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한 Gramm-Leach-Bliley 법은 은행의 증권업 겸업을 금지한 1933년의 Glass-Steagall 법을 무효로 하였다.

45) 劉定華, 鄭遠民, *op.cit.*, p.109.

46) 郭志雲, 鄭善英, "獨立金融調控法體系", 法學雜誌, 2002年 第6期(總第134期), p.31.

금융정책 결정과정에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다 강한 권한을 가진다.

한편, 광동국제신탁투자회사 등의 파산으로 야기된 금융불안은 전통적인 지방보호주의의 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지방정부와 현지금융기관 간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들 지방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지시로 동시에 받는 이중적인 구조였다. 지방정부의 영향력으로 현지 금융기관의 편법 및 탈법 대출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수많은 지방금융기관이 부실화하였다.⁴⁷⁾ 금융불안을 진정시키고 지방정부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체제정비가 이루어졌다. 1998년 11월 각 성마다 지점을 둔 중국인민은행체제가 9개의 대구역으로 통합되고 각 구역마다 지역본부가 설립되었다. 각 구역단위 행장의 타지역 전보와 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체제를 중앙정부의 직접관리체제로 개편하여 독립성을 강화하였다.⁴⁸⁾

분업감독체제는 감독책임의 명확화와 분야별 효율성 제고에는 도움이 되나 감독의 중복성을 초래하고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하락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결업화 추세의 국제금융환경에서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⁴⁹⁾ 전세계적으로 금융업의 종합경영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금융시장 자체의 발전에 따라 국내·국제금융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경쟁에서 생존하는 것은 주로 종합적인 서비스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 종합경영은 정보수집비용과 금융거래비용을 낮추고 이윤을 증강시킨다.

셋째, 과학기술의 발전과 금융혁신으로 인해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간의 업무가 교차하게 되어 화폐시장과 자본시장의 한계들 모호하게 만들었다. 넷째,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간 합병이 분업경영을 고수하는 국가로

47) 沙銀華, “中國投資・金融債權に關する紛争の解決策課題-CITIC系列ノンバンクの倒産・債務不履行等事件を中心に”, op.cit., pp.840-841.

48) 戚宝, “金融創新餘金融監督”,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1391.

49) 李金澤, “我國銀行監管法制存在的問題及其對策”,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4.

하여금 혼합경영을 실시하게 하였다. 현재 중국은 대내적으로는 분업경영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혼합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점차 대내적으로도 종합경영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법제환경의 미비, 관리감독능력의 부재(不在), 금융위기에 대한 대비책 미진 등의 이유로 분업경영을 실시하고 있다.⁵⁰⁾

그러나, 그러나, 비록 겸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우회 진출 및 금융지주회사 형태의 겸업화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법규상으로는 3대 금융업종간 상호 엄격한 분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은행-증권, 증권-보험, 은행-보험간 업무제휴 증대 및 해외자회사를 통한 합작회사 설립 등을 통하여 우회진출이 활발하였던 것이다. 예컨대, 은행과 증권회사간에는 Citibank-銀河증권 업무제휴, BNP Paribas-長江증권 합작증권사 설립 등의 사례, 증권회사와 보험회사간에는 Goldman Sachs 및 Morgan Stanley-平安보험간의 업무제휴 사례, 은행과 보험회사간에는 光大은행과 新華생명보험간의 업무제휴 사례가 있으며, 해외자회사를 통한 본국의 금지업종 진출사례로서는 중국은행은 홍콩에 Bank of China International 이라는 자회사를 세워 중국본토의 증권업무에 진출하도록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光大집단은 은행, 신탁, 증권 및 일반기업 등 29개 회사의 소유권을 통제하고 있다. 세계적인 겸업주의 추세와 중국의 WTO가입으로 중국 금융기관의 겸업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⁵¹⁾

한편 중국에서 2000년 9월부터 도입된 監督聯席會議制度는 분업감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된다. 이 회의는 중국인민은행,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직한 모임으로 3개 감독기관장 뿐만 아니라 국무원 산하 경제관련 부처의 장이 모두 참가한다. 이 회의는 금융산업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부서간의 정보교환과 정책협조를 주요 의제로 삼는다. 또한 금융제개혁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은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全國中央金融工

50) WTO 가입후 중국 금융감독 모델의 선택에 대해서는 劉定華, 鄒遠民, *op.cit.*, pp.115-119 참조.

51) 李金深, "我國銀行監管法制存在的問題及其對策",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4.

作會議에서 결정된다. 이외에도 전국중앙금융공작회의가 개최되어 금융정책 관련 주요 사안들이 논의된다. 3대 감독기관장 및 국무원 산하 경제관련 부서장이 참석한다.⁵²⁾

2. 은행업과 증권업의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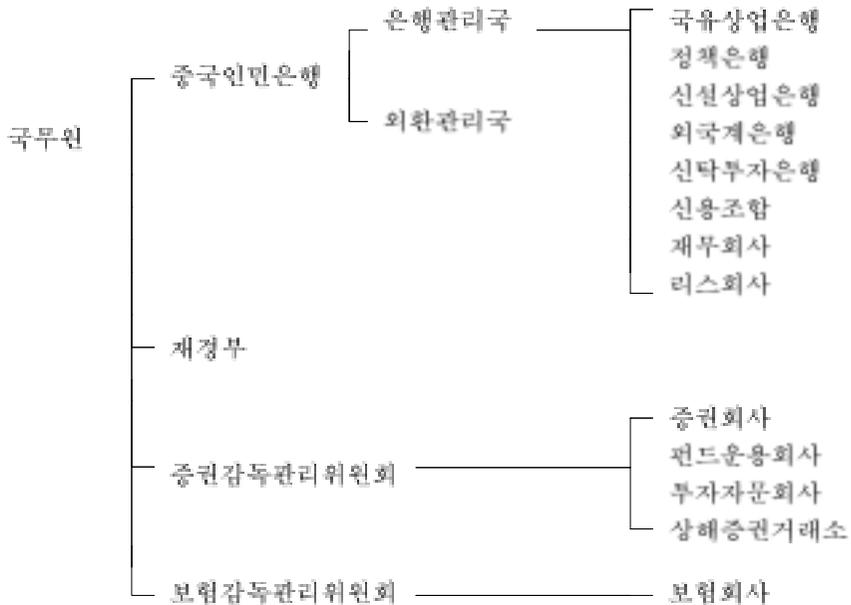
중국에서 은행부문과 증권부문은 은행과 증권경영기관간의 상호투자를 통한 주식을 보유하는 방식과 은행과 다른 투자은행이 직접 연합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1998년 12월 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중국투자은행이 국가개발은행에 병합되고, 증권감독위원회에 자본시장업무를 신청하여 투자은행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편 《증권투자기금관리장정방법》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증권투자기금과 기금관리회사의 주요 발기인이고 상업은행은 기금의 법정위탁인이다. 기금위탁의 과정에서 상업은행은 기금의 전체를 보관해야 하고 기금명의회에 자금양해를 처리하며, 또한 감독관리인의 투자운영, 기금자산순가치 및 기금가격을 심사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상업은행법》과 《증권법》은 은행과 증권기관간의 재무고문업무에 대해 금지성의 규정을 두지 않아, 현실속에서 두 기관은 모두 이 업무를 할 수 있다.

주식시장의 위험이 신용체제로 유입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증권법》과 상업은행법은 모두 은행자금이 위법으로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은행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 없다는 것은 은행자금이 증권회사로 유입될 수 없다는 것과 다르다. 1999년 하반기에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중국은행과 잇따라 증권회사가 은행간 단기자금시장 및 국채환매시장에 진입하여 단기융자를 하고 종합증권기관이 상업은행에 주식담보융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였다.

52) 戚宝, “金融創新餘金融監管”,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1391.

〈표〉 중국의 금융감독 체계



IV. 중국은행업의 현황과 문제점

1. 국유상업은행으로의 예금 편중현상

중국의 금융체계가 현재, 은행, 특히 국유상업은행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중국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동안 금융부문이 상대적으로 억압되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중국도 개발도상국의 초기 발전단계에서처럼 정부의 발전전략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이라는 창구를 통하여 엄격하게 통제하는 금융억압정책을 시행하여왔다. 이는 주식시장이나 보험시장 등의 다른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국유상업은행의 대부분이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가계 및 기업 예금을 통하여 조성된 국유상업은행의 자금은 대부분 국유기업으로 향하고 있다. 예금에 있어서도 전국적인 망을 소유한 국유상업은행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기타 신설은행과 도시신용조합, 신탁투자회사 등의 비은행금융기관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4대 국유상업은행이 중국 전체 예금 잔액의 68%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 이러한 비중은 국유상업은행의 전국적인 지점망, 정부의 암묵적인 예금보장 등에 기인한다.⁵³⁾

결국 금융기관의 국가소유, 금리규제, 차별적 신용할당 등이 그러한 금융억압정책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금융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통제 는 WTO 가입이전까지 크게 변화들 보이지 않았으며 그 중심에 독점적인 국유상업은행이 자리잡고 있었다. 독점적 지위는 결국 기업 자금조달 창구의 정부 지배를 의미한다. 2000년 통계에 의하면 예금 금융기관의 여수신 업무에서 국유상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출 74.7%, 예금의 68.4%이다. 신설상업은행을 포함한 기타 상업은행이 대출의 8.3%, 예금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 및 도시 신용조합을 포함한 기타 예금 금융기관은 대출의 17%, 예금의 21.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수치에서 보듯이 국유상업은 기타 상업 은행 및 기타 예금금융기관을 여수신업무에서 압도하고 있다. 한편, 은행업은 4대 국유상업은행의 과점현상과 부실채권은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⁵⁴⁾ 간접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과다한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기업과 개인들의 자금조달 수요의 약 80%를 은행에 의존하고 있어서 향후 약 10년간 은행위주의 자금조달 관행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대부분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출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 민간부문의 자금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2.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문제

국유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져 2001년말 국유상업은행의 총대출중 약 70%가 국유기업에 대출되었다. 4대 국유상업은행은 부실채권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정부의 공식 집계 발표에 따르면 4대 국유은행 모두 약 25-30%의 부

53) 劉文華(主編), *op.cit.*, pp.88-89.

54) 李純貴, 趙玉寶, 『商業銀行論中的貸款風險及防範』,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948.

실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제기준 적용시 부실자산이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상업은행법 제 41조〉에 따라 상업은행이 정책성 대출을 하도록 강요받았고, 이것이 부실로 이어진 주요 원인이 되었다.⁵⁵⁾ 그리하여 4대 국유 상업은행중, 상장기준에 부합하는 은행은 단 1개도 없다. 현재까지 중소형 은행 4개 (포동발전은행, 민생은행, 심천발전은행, 招商은행)만 상장된 상태이며 4대 국유 상업은행은 2005년까지 상장추진중이나 실현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⁵⁶⁾

중국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경영효율이 낮은 국유기업에 대한 정책성 대출과 1990년대의 부동산 대출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전통적으로 國有企業은 비효율적 경영으로 경쟁력과 수익성이 낮고 부채상환능력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증가 억제 등 국가정책목표에 따라 거의 자동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⁵⁷⁾ 2000년말 기준 銀行信用의 50%가 국유기업에 편중되었으며 특히 4개 국유상업은행의 경우 은행계정 자산의 86%가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이다. 또한 1990년대초 부동산 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나 부동산가격이 1993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면서 대출금중 상당부분이 부실화되어졌다. 그 결과 중국의 부실채권 규모는 4개 국유상업은행만 놓고 보더라도 2001년말 현재 1조 7,656億元(2,130억달러)으로 총대출금의 25.4%, GDP의 18.4%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⁵⁸⁾

55) 〈상업은행법 제 41조〉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특정 대출항목에 대하여 국유상업은행은 대출을 집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국무원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經國務院批准的特定貸款項目, 國有商業銀行應當發放貸款, 因貸款造成的損失, 由國務院採取相應補救措施, 具體辦法由國務院規定)”라고 규정하고 있다.

56) 張長利, 『從金融不良資產處置看中國法治建設』,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1251.

57) 국유상업은행 부실채권에 대한 중국인민은행의 감사(2002년 5월) 결과 不實債權의 發生原因은 대출기업의 부실화(43%), 부동산 가격하락 등 경제여건의 변화(35%) 및 은행의 관리미흡(22%) 순으로 나타났다. 沙銀華, 『中國投資·金融債權に關聯する紛争の解決策課題-CITIC系列ノンバンクの倒産·債務不履行等事件を中心に』, op.cit., p.848.

58) 그러나 BIS는: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은 총대출금의 47%로 추정하고 있고 S&P社は 5,400억달러(2001년말)로서 GDP의 50%로 추정하였고 대진지社は GDP의 44~55%로 추정(2001년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개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1997년말	2000년말	2001년말
부 실 채 권 (億元)	14,829	19,098	17,656
(총대출금중 비중, %)	(25.0)	(25.0)	(25.4)
(대명목GDP 비율, %)	(19.9)	(21.4)	(18.4)

중국정부는 1998년부터 재정자금 투입, 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부실채권 정리를 추진해왔으나 성과는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1998년 320억달러의 자금을 투입하여 국유상업은행의 자기자본을 확충한데 이어 1999년에는 4개의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상업은행법 시행(1995년) 이전의 정책대출에서 발생한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1.4兆元을 액면가로 인수하였으나 2002년 9월 현재 부실채권 정리(대출채권의 주식 전환 및 매각) 실적은 총인수액의 16.7%인 2,323億元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정리 현황

(2002년 9월말 현재)

(억 원)

자산관리공사	華融資產 管理公司	信達資產 管理公司	東方資產 管理公司	長城資產 管理公司	합 계
(부실채권 인수대상 은행)	중국공상 은행	중국건설 은행	중국은행	중국농업 은행	
대입 부실채권총액 (A)	4,077	3,730	2,674	3,458	13,939
부실채권정리액 (B)	443	702	340	838	2,323
현금 회수분 (C)	146	216	86	77	525
정리 진도율 (B/A, %)	10.9	18.8	12.7	24.2	16.7
현금 회수율 (C/B, %)	33.0	30.8	25.3	9.2	22.6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부실채권이 계속해서 발생함으로써 부실채권의 규모가 오히려 증가하는 악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다. 2001년말 현재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8兆元으로 1997년말의 1.5兆元에 비해 20% 증가하였고 1999년 자산관리공사의 인수분 1.4兆元을 승할 경우 실질적인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3.2兆元에 달하여 불과 4년 사이에 배이상 증가한 셈이다. 결국 이런 부실채권의 악순환은 국유기업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실채권 문제는 국유기업의 태생적 한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국유기업의 성공적인 개혁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국유기업에 부실이 발생한다면 국유상업은행도 필연적으로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 중국정부는 최근 부실채권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4월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총대출액 대비 부실채권 비율을 연간 2-3%씩 개선하여 2005년까지 15%대로 낮출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며, 11월 초 재무장관은 정부가 은행권의 부실채권을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의지는 2002년 11월 더욱 강화되어 국유기업 해외 매각허용과 내국인 전용의 A주식 시장에 대한 개방조치로 이어졌다. 구조조정의 촉진과 더불어 부실채권 처리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⁵⁹⁾

또한 중국정부는 2002년 말 결산부터 대출채권 분류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는 조치이외에 최근 중국인민은행내의 은행감독부서를 독립·확대시킨 은행감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은행 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은행들의 부실채권 처리를 가속화하고 재무건전성을 개선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해 냄으로써 중국인민은행으로 하여금 통화정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내포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중국은 이미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함께 완전히 독립적인 금융감독체제를 갖추게 되었다.⁶⁰⁾

59) 崔勤之, “保障商業銀行信貸安全的幾項措施”, 法學雜誌, 2003年 第4期(總第139期), p.14.

60) *Ibid.*

WTO가입으로 2007년까지 은행업무를 완전히 개방하기로 한 중국은 자국 은행들의 대외경쟁력 제고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결국, 부실채권 처리가 급선무 과제이다. 실업자 수 증가에 따른 사회불안 우려, 범물개정에 필요한 시간, 자산인플레이의 지속 등으로 부실채권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금리규제

또 다른 금융억압의 내용인 금리규제에 대해 살펴보자. 개발도상국에서 경제발전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직면하는 높은 시장금리이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투입이 요구되는 중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극심한 자본부족과 높은 시장금리가 형성되었다. 금리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다보니 물가 상승률이 높은 해에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발생하였다. 또한 예금 금리와 대출금리에 차별적인 규제를 가하였다.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금리의 상황조정이 있을 때에도 예금금리에 대한 조정 폭보다는 대출금리에 대한 조정 폭을 상대적으로 훨씬 작게 하여, 자금수요자인 기업의 부담을 적게 하였다.

금리규제는 필연적으로 정책당국에 의한 신용할당을 수반하게 된다. 은행의 상업적 의사결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가전략산업의 육성이라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추진하기 위하여 차별적으로 신용을 할당한다. 상당부분이 중소기업들이 중국의 민간부문은 생산액에 있어서 2000년말 총 GDP의 50%를 넘어섰으나 이들 민간기업은 과거의 국유기업에 집중된 신용할당 정책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러한 금융억압은 먼저 사금융시장의 출현을 가져왔다. 금리규제는 자금의 초과수요를 유발하였으며 신용을 할당받지 못한 기업은 제도권밖에서 자금을 조달하여야 했다. 자금의 초과수요는 자연히 가족, 친지등의 사적 관계에 의하여 형성된 사금융시장에서 해결되었으며 이러한 사금융시장의 확대로 정부로부터 인가받지 아니한 민간금융기관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비인가 금융기관은 규제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시하며 국유상업은행으로부터 소외된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였으며 결

국 제고 금융권에 대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국유상업은행으로 하여금 시장여건에 더욱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자회사의 설립유인을 갖게 하였으며 정부의 각종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비은행금융기관의 등장을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신용조합, 신탁투자회사, 재무회사 등이다. 이들은 예금 수취기능을 가졌으나 정부와 중앙은행의 신용계획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도 은행에 비해 더 적은 규제를 받았다. 국유상업은행과 지방정부는 정부의 신용계획을 우회할 목적으로 신탁투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왔다. 또한 국유상업은행의 경직성에 대응하여 등장한 대표적인 비은행금융기관이 도시신용조합이다. 모든 도시지역에 중국공상은행의 지점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신용조합은 질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유상업은행의 신용배분으로부터 소외된 민간 기업을 성공적으로 공략하였다.

4. 국제경쟁력의 낙후성

중국은행업은 제도, 자금, 서비스 기술, 인원, 경험등의 면에서 국제경쟁력이 낙후되어 있다. 제도분야에서는 은행주체가 되는 국유은행의 기구가 방대하고 운용의 효율성이 낮다. 은행의 경영활동은 여전히 국가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으며 자율성의 정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정책성 업무와 상업성업무도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진정한 현대적 기업제도도 확립하고 있지 못하고 기구가 지나치게 방만하고 업무효율성도 없다.

자금방면에서는 각각의 대규모 은행의 자본금충족율이 높지 않으며 금은 부족하며 중국경제전설의 대규모자금의 수요에도 적용할 수 없다. 게다가 중국의 외환자금은 제한되어 있고 엄격한 외환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민폐는 자유태환이 불가능하며 국외 자금의 유입도 곤란하여 중국금융업의 국제시장에서의 업무활동과 경쟁력을 제한하였다.

서비스분야에서, 서비스 품종이 단일하고 서비스 품질도 높지 못하다. 현재 국내은행의 업무는 여전히 신용대여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 품종

도 다양하지 못하여 사회의 여러 가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기술분야에서, 비록 최근 몇 년동안 중국은행업의 기술장비가 비교적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말한다면 금융전자화의 정도는 여전히 낮고 일상업무조작도 여전히 수작업을 위주로 하고 있어 효율성이 낮고 속도도 느려서 대단히 큰 불편을 주고 있다.⁶¹⁾

인원분야에서, 중국은행업인원은 약250만명으로 전국취업인구의 2%에 해당하고 있어서 서방 선진국 은행업종사인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그 비율이 낮다. 종업원 문화소양도 낮고 대학문화정도를 갖는 직원은 전체 직원의 10%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 은행업의 경영과 서비스 수준이 국제 동업계에 비해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다.

국제경험분야에서 중국은행을 제외하고는 국내은행은 오랫동안 국내경영에만 한정되어 왔기 때문에 국제시장과의 긴밀한 관계가 결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금융업무에 정통한 인원도 부족하다. 국회평가기관의 중국은행업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자산부채관리 시스템은 충분히 완비되어 있지 못하다. 2)정보관리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3)내구기구의 설치와 운용절차가 비과학적이며 효율성이 낮다. 4)인사제도와 인재훈련이 부족하다. 5)금융개혁이 지체되어 있다.⁶²⁾

5. 대출비중의 과대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일부 시중은행들의 대출 대 예금 비율이 적정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경고하였다. 일부 시중은행들의 지점에서 대출 대 예금비율이 적정 수준인 75%를 이미 넘어섰고 심지어 100%를 상회한 경우도 있다. 중국 시중은행법 39조는 대출 대 예금의 비율이 75%를 상회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이 있다. 인민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상업은행의 낭보지점에서 대출 대 예금비율이 100.81%를 기록해 100%를 상회한 것을 비롯해 상당수 시중은행 지점에서 그 비율이 경고

61) 劉文華(主編), *op.cit.*, p.91

62) 張忠軍, "論金融法的安全觀", 中國法學 2003 第4期(總第114期), pp.116-117.

수준을 넘어섰다.⁶³⁾ 이와 같이 은행들의 대출/예금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자본적점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은행대출이 자금의 유동성을 손상시킬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V. WTO가입에 따른 은행업 개방과 전망

1. 은행업 개방 수준

1980년에 심천에 외국은행의 지점이 설치되는 등 1980년대 초부터 부분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한 중국은 은행산업은 외자계기업의 중국진출과 더불어 개방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은행산업의 개방과 관련된 특징으로는 개방지역이 점차 확대, 외국계 은행의 수가 점차 증대, 외국계은행의 영업규모가 급속하게 확대, 외국계은행의 업무영역의 협소, 외국계은행(외국은행지점, 합자은행, 외자은행을 총칭)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등이 있다. 1990년대 들어와 상해, 대련, 광주, 천진 등 연해 주요 도시와 북경시에서의 지점설립이 허용되었다.

1992년까지는 상해와 경제특구에서만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합자은행의 설립이 허용되었으나 WTO가입직전까지는 이미 중국은 주요 24개 도시에 지점 또는 현지 법인의 형태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다. 1997년 6월 이미 외국은행지점은 134개이고 7개의 증의합자은행이 영업하고 있었으며 5개의 외국자본 단독출자은행도 있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6년 제일은행이 한국의 은행중 최초로 산둥에 중국공상은행과 합자은행을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은행 산업은 외국인 투자제한업종으로 분류되어 시장진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는 바, 은행설립 규제, 자산규모에 따른 제한, 최저자본금 또는 운영자금과 관련된 제한, 출자유형제한, 이중허가제 채택 등이 시행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다.⁶⁴⁾

첫째, 은행설립의 규제이다. 외국은행 지점이나 100% 외국인 소유인 외자은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중국내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하고 2년이

63) China Daily, 2003. 11. 9.

64) 繆劍文·羅培新, *op.cit.*, pp.151-156.

경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작은행의 경우에는 국내은행으로 취급되어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자산규모에 따른 제한이다. 외자은행과 합작은행의 경우 총자산이 100억달러 이상인 기관으로 제한하고 지점의 경우 신청기관의 총자산이 200억 달러이상일 경우에 허용한다.

셋째, 최저자본금 또는 운영자본금과 관련된 제한이다. 외자은행과 합작은행의 경우 최저 수권자본금으로 3억위엔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태환가능 국제통화를 요구한다. 국내일반상업은행의 최저자본금은 10억위엔, 납입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50%이상이어야 하며, 은행 지점의 경우 운영자본금으로 1억 위액에 해당하는 국제통화를 요구하고 있다.

넷째, 출자 유형의 제한이다. 출자는 금전출자에 한하며 현물출자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은행 설립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섯째, 이중허가제의 채택이다. 중앙은행이 예비심사후 본심사를 별도로 시행한다. 외자계은행은 외화예금, 외화대출, 외화어음의 할인, 외화투자, 외화송금, 수출입결제, 외화 매매, 외화어음교환, 신용카드 지급대행 보관 및 대여금고, 신용조사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된 제한은 외화예금업무 제한, 국내기업에 대한 수입결제업무 금지, 위엔화 영업제한, 기타 업무 제한 등이 있다.

- 외화예금 업무제한

중국 국내외의 동업자 예금, 국내외 비동업자 예금, 국내외 외국인예금, 외자계 기업의 예금, 외자계 금융기관의 외자계 기업에 대한 대출금에 의한 예금 등에 국한되고 있다.

- 국내기업에 대한 수입결제업무 금지

외자계기업의 수출입결제 및 허가받은 비외자계기업의 수출결제 및 대출조건부 결제는 허용되지만 국내기업 상대 수입결제업무는 금지된다

- 위엔화 영업제한

일부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만 위엔화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위엔화 영업은 1998년 10월 8개 외국계 은행에 위엔화 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총

17개로 늘어났는데 1999년 3월 현재 19개의 외국계 은행이 추가로 상해와 심천에서 위안화 영업허가를 받았다.

- 기타 업무제한

금융채권의 발행, 정부 채권 대리발행, 대리상환 및 위탁판매, 금융기관 상호간의 용자 및 대금수령 대행 등과 같은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중국정부는 외국계 은행에 대한 업무 영역제한이외에도 자산운용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외국금융기관의 제도를 부단히 받아들이어왔다. 은행업의 대외개방은 단계적으로 개방의 과정을 거쳐왔다. 그 기구도 초기의 대표기구는 점차 영업성 기구로 발전하여왔으며 지역도 연해지역에서 점차 내지로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여러 분야에서 외자금융기관에 대한 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WTO의 요구와 중국의 대외적 수락내용에 따라 중국의 외자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종류 면에서 현재 외자은행간 및 외자은행과 중국은행간의 합자은행의 설립을 허용하고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외자은행의 분지기구 설치지역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외자은행은 중국의 어떠한 지방에서도 분지기구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현재 인민폐 업무 등 허용되고 있지 아니한 분야에 대해서도 폐지되고 외자은행이 모든 국외고객의 외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단계적으로 중국 고객의 외자업무, 인민폐 송금업무 및 주민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다. 1999년 1월, 중국인민은행장은 중국이 장래 외자은행이 영업성 분지기구 설치의 지역적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중국 자본 은행은 외자은행의 전면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외국금융기관의 신규 진출이 늘어나고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향후 중국의 향후 은행시장은 중국계 은행과 외자계

은행의 치열한 경쟁으로 재편될 것이다.⁶⁵⁾

현재, 대부분 외국계은행은 외국기업과 외국인대상 외환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만 일부 외국계은행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외국기업과 외국인대상 위엔화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외국계은행의 중국기업과 중국인대상 영업을 금지하여 왔다. 다만, 외국계 독자 및 합자은행 설립은 허용하고, 모든 주요 도시에 외국계은행 지점 각 1개의 설치를 허용(자산 US\$ 200억 이상)하고 있다. 또한, 외국계은행의 자회사 설치도 허용(자산 US\$ 100억 이상)하였다.

위엔화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상하이 및 선전 소재) 32개 외국계 은행이 위엔화 영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하이(上海), 선전(深圳)지역 외국 기업/외국인 상대의 제한적인 위엔화 영업을 수행하고 있다. 선전소재 외국계은행은 廣東·廣西·湖南 지역 고객을 상대로 영업할 수 있으며, 중국내 3년이상 영업기록과 최근 2개년이상 흑자경영을 한 경우에만 위엔화 영업 허가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중국은 WTO가입이후 은행분야에서의 개방 방향은 인민폐 업무 취급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외자계 은행의 고객제한 완화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첫째, 외자계 은행의 업무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엄격한 심사관리기준을 적용하되, 그러한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모든 외국계은행에 대해 위엔화 업무 수행을 허용한다. WTO 가입 5년 후 이러한 심사기준을 충족시킨 외국계은행은 외화와 인민폐 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게 되며 중국기업과 중국인 개인을 대상으로 인민폐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종래 외자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도매 금융업무로 국한되었던 업무제한이 폐지됨으로써 소매 금융업무가 가능하게 되며, 인민폐 업무에 있어서는 정부 채권을 취급할 수 있게 되며 인민폐와 외화를 결합한 금융과생상품의 취급도 가능

65) 중국은 WTO 가입후 외국은행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중국 국영은행의 공개와 정부소유 지분매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회사들이 영세하여 중국의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을 꺼리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공백을 외국은행들이 메꾸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inese Economist Argue For State-Owned Bank Market Listings", China On Line, <http://www.chinaonline.com/industry/financial/NewsArchive/Secure/1999/november/B>.

하게 된다. 2005년 1월까지 외국계은행의 소유권, 경영 및 법정형태 등에 관한 제한규정을 폐지한다. 그리고, 중국계은행과 동시에 외국계은행에 대해서도 금융리스업무를 허용하고 비은행 금융회사의 자동차 할부금융 업무도 허용할 것이다.

둘째, 외국계 은행의 지점에 대한 숫자 및 지역제한이 폐지된다. 중국은 지금까지 진출지역을 경제상황과 상대국과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개별적으로 외자계은행의 영업지점 수와 지역을 제한하여 왔으나 WTO 가입 이후에는 수량제한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정하는 일정한 수준을 만족하는 외자계 은행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중국 각지에 영업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진출가능지역과 관련하여 외화업무에 대해서는 1993년 2월 이미 진출지역 제한을 폐지하였으나 인민폐 업무에 대해서는 WTO 가입 후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2003년까지 23개 도시까지 개방하고, WTO 가입 5년이내 모든 지역 및 고객 제한규정을 폐지한다. 먼저, WTO 가입 5년이내 위엔화업무 지역 제한규정 단계적 폐지할 것인 바, [上海深圳大連天津], [廣州青島南京武漢], [濟南福州成島重京], [昆明珠海北京廈門], [汕頭寧波瀋陽西安] 순으로 폐지한다. WTO 가입 2년내 중국기업, 5년내 일반 가계대상 위엔화영업을 허용하며, 한 지역에서 위엔화영업이 허용된 외국계은행은 다른 개방지역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중국 금융당국의 금융시장 개발과 관련된 기본방향은 우선 개방지역과 업무 형태 및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1996년 12월 부분적으로 시작된 외국계 은행에 대한 위엔화 업무의 허용은 점차 외국은행들의 중국의 일반예금자 및 기업과 위엔화 표시 금융거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WTO가입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은 빠른 속도로 확대될 전망이다.⁶⁶⁾

외환지급과 관련하여 외국계 은행은 외국인을 상대로 모든 외환 취급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내국인에 대해서는 가입 후 1년후 지역 제한없이 모든 외환 취급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위엔화 취급과 관련하여 외국계 은행의 중국기업에 대한 위엔화 영업을 2년후에 허

66) 繆劍文·羅培新, *op.cit.*, pp.193-204.

용하고 내국인 계좌는 5년후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제한은 5년내에 철폐한다. 무자와 관련하여 지점과 합작무자를 허용하고 5년후 100% 외국인 지분을 허용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때로부터 2년후 외자은행은 중국기업에 인민폐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5년후에는 국내개인에 대하여도 인민폐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경영지역내에서 내국민대우를 향유하고 은행금융기관은 자동차용자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먼저 은행업 분야에 관련하여 중국은 WTO가입과 동시에 외화취급 은행업에 대한 외국인무자가 허용되어 이스트 아시아은행, 시티뱅크, 합성은행, HSBC, 스탠더드 차터드은행, 샤먼 인터내셔널 은행 등이 영업허가를 받았다. 외국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인민폐 대출영업허가는 광둥과 상해에서만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지만, 대련, 천진으로 지역이 확대되어 일본은행들과 한국의 신한·외환·조흥·기업은행 등이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청중에 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02년 7월 외국계은행들에 대해 중국은행들로부터의 元貨차입 제한조치를 통보함으로써 외국계은행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민은행은 외국계은행들이 중국진출 다국적기업들을 대상으로 元貨영업을 확대하자 자국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조치로 인해 외국계은행들은 元貨영업을 위한 주요 元貨조달원을 잃게 되었음을 이유로 중국에 WTO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02년 1월말 발표된 중국인민은행 규정은 외자금융기관의 연간 지점개설숫자를 1개로 제한할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지점개설 허가료를 요구함으로써 금융시장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WTO가입으로 인하여 중국 은행부문이 받은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 은행업에 미칠 영향

(1) 개요

중국정부는 1997년 11월 금융공작회를 개최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맞도록 금융기관 체제정비, 금융시장시스템 구축, 금융시장 관리감

독채제 구축을 결의한 바 있다. 즉 정부들 중심으로 WTO가입 협상 타결이전부터 이미 금융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며 외국은행과 경쟁함에 따라 관리수준과 체제, 서비스 면에서 국제표준에 따르는 등 개혁이 지속될 것이며 다양한 상품소개와 회계의 투명성 확립을 위하여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것이다.⁶⁷⁾

중국의 국유상업은행은 아직까지도 계획경제체제의 구습이 남아있고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여신을 결정하는 등 정부 색채가 농후한데, 많은 외국계 은행들이 진출하게 되면 국유기업들이 외국계은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확대함에 따라 중국 국유상업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내 은행들이 외국계은행을 통하여 선진금융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종류별로 WTO가입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⁸⁾

(2) 상업은행

중국은행들은 WTO가입으로 국내금융산업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은행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중국은행들은 해외네트워크가 부족하여 국제거래 경험과 환위험리스크등 리스크 관리 능력이 외국은행에 비하여 뒤떨어진다. 따라서 개방후 중국은행들은 국제무역거래 결제, 외환거래와 파생상품 등의 분야에서 영업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한편 중국은행들은 인민폐 소매금융부문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대출 등 소매금융부문에서는 인민폐 자금확보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광범위한 지점망이 필요하지만 이는 자본집약적인 것으로 외국은행이 중국내에 광범위한 지점망을 구축하기 위하여는 거액의 자본을 투입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소매금융을 취급하려는 외국은행은 초기 수년간 자본에 대한 낮은 수익률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⁶⁹⁾

67) 張忠軍, "論金融法的安全觀", *op.cit.*.

68) 劉文華(主編), *op.cit.*, pp.91-97.

69) 崔勤之, *op.cit.*, pp.14-15.

다만 일부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외국은행들은 주요 거점 도시들 중심으로 지점망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중국 은행들은 국유은행으로서 자본투자에 따른 수익률에 대한 제약이 외국은행보다 약하며 이미 광범위한 지점망을 구축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자금투입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행들은 특히 외국금융기관들의 우수 인력 스카우트로부터 국제화된 인력을 빼앗기지 않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국유은행들은 국가소유로 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보수체제가 비탄력적이어서 시장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⁷⁰⁾

(3) 투자금융

WTO 가입직전까지 외국투자금융기관들은 중국내에서 투자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며 중미간 WTO 가입협상에서도 투자금융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투자금융시장이 개방된다면 외국금융기관들은 IPO(Initial Public Offering), Underwriting, M&A, Asset Management 등의 분야에서 업무영역을 급속히 확대해 갈 것이다. 특히 IPO 업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유기업의 해외시장업무는 주로 외국투자금융기관과 중국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앞으로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등 특수성을 감안하고 중국 금융기관의 영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국금융기관을 지휘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투자금융기관들이 국제투자금융 업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동 시장을 적극 개척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⁷¹⁾

(4) 복합금융(Universal Banking)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의 Glass-Steagal 법의 개정으로 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바뀌어 금융기관들은 금융지주회사를 통하여 자유롭게 새로운 분양 진출하거나 다른 업종의 금융기관을 매수, 합병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업무를 취급하고 새로운

70) 張忠軍, "論金融法的安全觀", *op.cit.*

71) 繆劍文·羅培新, *op.cit.*, p.204.

형태의 복합금융상품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다.⁷²⁾

그러나 현재 중국은 금융산업부문에 분업주의를 실시하고 있어 상업은행들은 투자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중국 금융당국은 아직 중국 금융기관의 내부 위험 통제시스템이 겸업경영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도 경험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당분간 분업주의 경영원칙을 바꾸지 아니하기로 하였다.⁷³⁾ 이에 따라 1998년 중국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중국인민은행에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 이관하였다. 그러나 WTO가입에 따라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의 겸업금융기관들은 세계적인 겸업화 추세에 따라 중국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겸업화 및 Universal Banking을 향한 움직임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⁷⁴⁾

〈표〉 중국의 WTO가입 5년 및 10년후 은행들의 시장점유율 전망⁷⁵⁾

구 분		현 재		5년후		10년후	
		외국계	중국계	외국계	중국계	외국계	중국계
외 화	예 금	5%	95%	15-20%	80-85%	20-30%	70-80%
	대 출	23%	77%	35-40%	60-65%	50-60%	40-50%
인민폐	예 금	0.5%	99.5%	8-10%	90-92%	20-25%	75-80%
	대 출	0.4%	99.6%	10-15%	85-90%	25-30%	70-75%
국제결제 업무		30%	70%	40-45%	55-60%	50-60%	40-50%
신용카드 업무		-	-	10-15%	85-90%	20-30%	70-80%

72) 鄭坤山, "混業經營模式與我國銀行業的發展",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1476.

73) 張忠軍, "論金融法的安全觀", *op.cit.*

74) *Ibid.*

75) 唐文琳: "中國金融業與WTO", *op.cit.*, pp.201.

3. 중국은행업의 과제

중국의 은행업은 WTO가입과 그에 따른 개방이 진행된다면 차츰 다음과 같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중앙은행의 거시적 통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중국에 진입하는 대량의 외자금융기관은 향후 중앙은행의 통제능력을 크게 축소시키게 되므로 중앙은행의 화폐정책의 집행에 방해할 수도 있다. 동시에 외자금융기관은 그가 가지고 있는 외화자금을 국외송금할 수 있어서 자본유출을 초래하여 중국외환상황과 국제수지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⁷⁶⁾

다음으로 금융감독의 복잡성이 가중될 것이다. WTO가입이후 중국은 외자금융기구의 설립과 업무범위의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될 것이며 대량의 대규모거대 다국적 금융기구의 중국시장 진입이 있을 것이며 이들은 세계적인 국제금융망을 이용하여 이윤을 이전시키고 세수를 피하고 자산채무부담비율을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중국금융감독의 복잡성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 또한, 중국내 금융업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WTO에 가입한 후 중국금융기구는 다수의 강력한 경쟁자들을 맞이하게 되어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외자금융기구는 그 선진적인 정보관리 시스템과 고도의 기술적 기초 및 이용하여 중국의 금융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가 생겨날 것이다. 이를 보다 세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금업무경쟁이다. 현재 중국에서 외자은행의 외화 예금시장 점유율은 5%정도이며 인민폐 예금 시장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 예금은 은행의 기본업무이며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중외자은행의 예금업무에 관한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게 될 것이다. 대규모로 예금을 유치하는 몇 가지 요소의 제약- 예컨대 많은 지점과 인력의 필요 및 예금자의 신용 획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외자은행들은 중국에서 대규모로 지점망을 구축하지 아니하고는 일반주민들의 예금규모를 확대하기 어렵다. 외자은행이 고도의 과학적인 기법(예컨대, ATM기 설치 확대 등의 방식)을 통하

76) 劉文革(主編), *op.cit.*, p.88..

여 일반주민의 예금을 유치함으로써 중국자본 은행에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중외자은행이 예금분야에서의 경쟁은 당분간은 송금업무분야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⁷⁷⁾

둘째, 대출업무의 경쟁이다. 대출분야에서 중외은행의 경쟁은 그 중점이 소매 대출업무에 있지 아니라 대출금 송금업무에 있으며 심지어 우량의 송금고객의 경쟁전이 될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의 외자은행이 고객을 선택하는 때에는 통상적으로 우량 고객이 당해 은행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고려하며 그밖에 경영효율성이 떨어지는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다. 소매 대출 분야에서는 기회비용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비교적 신중하다. 그러나 외자은행이 각종 주민의 소비신용대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점차 소매 대출분야에서 중국자본은행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⁷⁸⁾

셋째, 중간업무의 경쟁이다. 중간업무는 리스크가 낮고, 원가가 낮으면서도 이윤이 높은 은행업무이며 필연적으로 외자은행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외자은행의 기술장비가 선진적이고 서비스의 품질이 높고, 효율성이 높아서 중간업무분야에서의 경쟁력이 대단히 높다. 현재 외자은행이 전개하고 있을 일부 중간업무분야에서도 이미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국제결산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결산업무의 시장점유율이 이미 40%에 도달하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과 더불어 외자기업의 중간업무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⁷⁹⁾

넷째, 금융파생상품거래에서의 경쟁이다. 금융파생상품거래는 중국에서는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외자은행은 이 분야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이후 금융파생상품거래업무의 제한도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이며 외자은행의 이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절대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77) *Ibid.*, p.89.

78) *Ibid.*

79) *Ibid.*

다섯째, 무자은행업무에서의 경쟁이다. 중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분업경영, 분업관리의 분리은행체도로 인해 중국 상업은행의 업무활동은 대단히 제한된 범위로 국한되어 있으며 중국의 상업은행은 무자은행업무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 예컨대, 융자, 고객을 대리한 증권발행업무 등이다. 대출, 융자와 금융파생수단이 상호결합된 신상품개발능력도 부족하다.

중자은행은 외자은행을 비교해보면 관련업무의 長短기한, 화폐의 종류, 특수조건 등의 분야에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중자은행이 이러한 이윤의 풍부한 업무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WTO가입과 더불어 외자은행과의 경쟁에서 낙후될 가능성이 크다. 외자은행과의 업무에 관한 직접경쟁이외에도 국유상업은행의 자주경영은 상대적으로 외국 은행에 비해 취약하다.⁸⁰⁾

제 2 절 증권업 부문의 법제개혁

I. 중국의 증권업 발전단계

1. 사회주의 초기

1949년 정권 수립이후 전후 경제재건 비용 마련을 위해 중국정부는 증권거래소를 일정기간 운영한 적이 있다. 당시 증권거래 성격은 무기적 경향을 띠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불완전한 관리 시스템 등으로 인한 불법 거래의 만연에 기인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사회적 유희자금을 흡수하여 생산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증권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1949년 여름부터 1950년 초까지 증권 거래소를 설립, 운영하였으나, 사영기업과 합영기업의 주식거래는 1952년부터 정식 금지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수립이후 증권거래소는 점진적인 사회주의 개조 과정에서 1949년부터 1952년까지 잠시 존재하였던 것이다. 그후 중국은 점차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면서 기업의 예금과 대출 모두 중국인민

80) *Ibid.*, p.90.

은행에 위임하였으며 중국인민은행만이 국유기업을 지원하고 사영기업간의 신용거래 및 주식발행을 금지하였다. 1955년 중국은 자본주의 잔재인 상공업, 사유농장 및 수공업을 모두 사회주의로 개조하면서 증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존재 의미가 감소하였다. 1958년에는 일부 남아 있던 사적인 증권시장도 완전히 소멸되었다. 전국 초기에 일시적으로 발행되던 국제시장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2. 1979년 개혁개방이후 증권시장 성립이전까지

개혁개방 직후인 1980년대 초까지도 자금 흐름은 국유은행 부문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고 90% 이상의 총여신은 국유기업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제도금융권의 차별적이고 경직된 신용배분은 자금조달의 방법이나 절차에서 거의 사금융시장 성격의 초보적 주식제도의 출현에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주식제도는 자본주의적 요소'라는 이념적 제약을 받기도 했지만 1980년대 초반 농민과 농촌지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자발적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1982년 심천 경제특구 寶安縣 개발을 위한 주식제 기업 설립이 추진되어 1983년 7월 중국 최초의 주식제 기업인 심천 寶安연합투자공사가 공모 방식으로 탄생하였다. 이와 같이 심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주식제 기업 설립, 채권형태의 주식 발행 등 초기 형태의 증권시장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후 중국의 주식제도는 1980년대 중반이후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더욱 확장되었다.

1984년에는 중국에서 최초의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1980년대 주식제도의 모습과 발전과정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만하다. 첫째, 주식제도의 발전과정은 중국 사금융시장의 형성과정과 마찬가지로 당시 경제여건의 내생적 반응이었다. 한편으로는 농업부문의 개혁, 국유기업의 경영 자율권 확대, 점진적 대외개방이 이루어지면서 농민과 도시민의 소득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소득상승은 제도금융권의 예금자산보다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새로운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⁸¹⁾

81) 何雁明, "國際政務市場法律規範方式的創新對深化中國證券市場改革的啓示", 『金融與保險』.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규모 기업들의 은행차입을 사실상 차단하는 제도 금융권의 금융억압은 농민들이 집체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대안적 자금조달방법인 사금융 성격의 주식제도를 채택하는 데에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⁸²⁾ 농민과 도시민들의 주식수요를 촉진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형태의 주식이 고안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의 향진기업이나 소규모 집체기업은 고용의 대가로 농민에게 발행주식을 매각하여 설립자본이나 투자자금을 동원하였다.⁸³⁾

둘째, 주식은 사금융시장의 대출이나 채권과 거의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소유는 회사에 대한 소유권과 회사경영에 대한 투표권을 의미한다. 그러나 1980년대 당시 증권소유에 대한 법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은 대개의 경우 기업경영에 대한 참여권을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 외에도 은행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고정이자를 보장하였다.⁸⁴⁾ 예를 들어, 1985~86기간 동안 집체기업에 의해 발행된 주식의 수익률은 20-40%에 이르렀고 1988년에는 기업에 따라 수익률이 50-100%까지 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주식의 만기가 설정되거나 주식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원금상환이 가능하였다.

셋째, 주식제도의 발전은 투자자보호법이나 기업의 주식발행 요건 등에 관한 관련법규의 제정 없이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한 발행주식 매각

第7期(2000), (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 p.95.

82) 중국에서의 주식제도 출현도 사금융시장의 형성과 궤를 같이 한다. 제도금융권의 차별적이고 경직적인 신용할당은 기업들로 하여금 대안적인 자금조달방법으로 초보적인 주식제도를 요구하게 되었다. 가령, 농촌지역의 향진기업이나 소규모집체기업은 발행주식을 매각하여 필요한 자본이나 투자자금을 조달하였다.

83) 당시 농민(특히, 젊은 사람)이 기업에 취직한다는 것은 신분의 상승을 의미하였다.

84)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농민과 도시민은 소득향상을 누리게 되었으며 제도금융권 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새로운 금융자산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되었다. 초보적인 단계의 주식은 은행대출이나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졌다. 자본주의 주식이 기업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에 대한 투표권을 의미한다면 중국의 초보주식은 1980년대 당시 증권소유에 대한 법적 개념이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은행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고정금리를 보장하는 금융자산이었다. 1985년부터 1986년까지의 집체기업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수익률은 20-40%에 달하였다. 또한 주식의 만기가 설정되어 있거나 주식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원금상환이 가능하였다.

에 수반되는 높은 고정이자 그리고 만기설정과 더불어 투자자보호 관련 법규가 없었다는 사실은 왜 당시 주식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사금융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설명한다.⁸⁵⁾ 또한 국유기업으로의 주식제도의 확대는 이념적 문제로 인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중앙정부의 분명한 지침 없이 진행되었다. 국유기업 최초의 공모발행은 1984년 7월 북경에 소재한 천교백화점(天橋百貨股份有限公司)에 의해 시도되었다. 공모발행대상은 국가, 법인 및 개인을 포괄하였지만 정부가 24%의 지분을 확보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 발행주식은 배당금 외에 연 15%의 고정금리를 보장하였지만 경영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⁸⁶⁾

국유기업인 천교백화점의 주식발행은 비록 명시적인 관련법규의 제정 없이 실행되었지만 다른 국유기업의 주식발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결국 중앙정부의 주식제도에 대한 입장을 전향적으로 유도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1984년 10월에 정책당국은 국유기업의 경영자출권을 확대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1986년 12월에는 지역별로 국유기업의 주식제도 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정부가 참여하는 '국가주'는 전체 발행주식의 15.4%인 200만 위엔, '법인주'는 12.3%인 160만 위엔, 일반 '개인주'는 72.3%인 940만 위엔, 총 1,300만 위엔을 모집하는 등 중국식 주식제 기업의 시초였다. 이후 북경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주식제 국유기업이 등장하였는데, 북경시가 전체 지분의 50.9%를 보유하고 49.1%의 지분을 국유상업은행, 관련 국유기업, 종업원이 각각 25.9%, 19.7%, 3.5% 보유하고 있다. 선전과 북경이외의 상해와 심양 등 지역에도 소수이지만 기존 국유기업이 공모를 통해 주식제 국유기업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 주식제 기업 개편은 개발 자금 조달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지 국유자산의 사유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1987년 5월 주식 공모를 실시했던 선전발전은행이 1989년 초 고율 배당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주식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85) 원금상환은 주로 지방정부의 관계부처 또는 발행주식 대가에 관여한 금융기관에 의해 보장되었다. 투자자들은 흔히 이것을 중앙정부의 보증으로 간주하였다.

86) 1984년 7월 당시 1년 정기예금금리는 4.68%에 불과하였다.

되었다. 당시 개설 초기의 유가증권 중심의 유통시장에서 선전발전은행의 주가는 40위엔에서 120위엔으로 급등하는 등 주식 투자 과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87년에 인가된 실전특구증권공사 등 4개의 증권회사를 통해 실전발전은행, 금전실업, 만과기업, 원야실업 등 기업의 주식이 거래되었다. 동 기업들의 고수익 배당으로 인해 주식 매입 열기가 고조되는 등 선전지역의 유가증권 유통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하였다. 선전지역에서는 증권거래소 정식 개설 이전에 이미 유가증권 거래시장이 존재하였던 것이다.⁸⁷⁾

마지막으로 중국의 주식제도는 유통하부구조의 구축 없이 발전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1980년대 중국의 주식시장은 발행시장 위주였다. 증권시장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증권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유통시장의 육성이다. 유통시장은 소유권 이전을 통해 투자자의 유동성 위험을 제거해 줌으로써 개인의 여유자금이 기업의 생산적 활동에 유입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1984~88기간 동안 3,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하고 1988년 말 기준으로 국유주, 법인주 및 개인주를 포함하는 주식발행 총누적액이 인민폐 214억 원 규모에 달하였지만 1980년대 중국의 주식거래는 결코 안전하고 유동적이지 못했다.

비록 1986년부터 沈陽을 시작으로 上海에서 장외거래가 이루어지고 1988년에 이르러 이러한 거래방식은 중국의 거의 모든 대도시로 퍼져나갔지만 관련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주식거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와 같이 주식제도의 발전은 주식발행요건과 투자자 보호 등의 제반법규의 제정없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식발행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은 사금융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87) 한편, 개혁개방 이후 1981년 처음으로 국채를 발행한 중국정부는 1994년 6개월 단기의 단기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과 1995년에는 국채 매매와 선물 거래 상품이 다양화되면서 거래량이 급증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 최초로 기업채권이 경제계획에 편성된 것은 1990년부터였다. 당시 75억 위엔의 기업채권 발행을 계획하였으며, 1992년에는 기업채권 발행액이 350억으로 증가하였고, 채권 종류도 7개 가지로 확대되었다. 1993년에 기업 채권 발행이 잠시 축소되었지만, 중국정부는 《기업채권관리조례》를 수정 공포, 기업의 채권 발행 대상을 확대하여 1994년 45억 위엔의 기업 채권을 발행하였다. 1995년부터 중국 기업들은 채권 발행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3. 1990년대초의 증권시장 성립이후 WTO가입이전까지

80년대이후 개혁개방의 심화와 경제발전에 따라 중국증권시장은 단계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1981년 중국이 國庫券발행을 재개한 때부터 1990년 두 개의 증권거래소를 개설할 때까지 그리고 현재 증권시장의 초보적인 규모에 이르기까지 중국증권업은 규모도 커지고 분산에서 집중으로 그리고 지역성에서 전국성, 수작업에서 현대기술채용으로 그리고 시험적인 단계에서 발전의 초급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을 겪었다.

중국의 주식시장이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는 하부구조가 구축된 1990년대이다. 1990년 12월, 上海에서 그리고 1991년 7월, 深圳에서 증권거래소가 개설되고 감독기관인 국무원 증권위원회와 그 집행기관인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1992년 10월에 설립되면서 중국의 증시는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1991년부터 국유기업의 상장과 함께 발행된 내국인을 위한 A주식은 국유주, 법인주 및 개인주로 구분되고 국유주와 법인주의 경우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었다.

1992년부터 외국인을 위한 B주식이 발행되기 시작하며 상해에서는 미국달러로 심천에서는 홍콩달러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졌다. 동일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라도 투자자의 국적에 따라 거래대상주식을 A주식과 B주식으로 구분한 것은 자본자유화 및 외환자유화가 안된 상태에서 국내 주식시장으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환거래에 접근 가능한 내국인도 B주식 거래에 참가하였다. 1991년 말 선전의 증권거래소는 주식 거래량이 전년대비 2배 증가, 시가총액이 80.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런 주식투자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중국정부는 주식발행 한도를 액면가 5억 위안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은 1986년부터 콜시장, 어음할인시장 등 채권 유통시장이 존재하였으며, 1990년 이전 상해 증권시장은 주식 거래보다는 국채 등 정부 발행 채권 거래에 치중하였다. 1992년 말 真空電子는 상해 증권거래소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전용 B주 주식을 발행하였으며, 1993년 청도맥주는 중국기업 최초로

홍콩 증권시장에서 H주를, 미국에서 ADR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1998년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이 제정과 더불어 중국 증시는 눈에 띄게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국제적으로 성숙한 증권시장과 비교해 보았을 중국의 증권시장은 대단히 낙후되어 있다. 통계적으로 1994년 1월 말 기준으로 뉴욕증권거래소의 3105개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총액은 이미 10.5만억 달러에 도달하였으며 NASDAQ의 시가총액은 3만억달러, 동경증권거래소는 2.5만억달러, 런던 거래소는 2.3만억달러 달러였다. 1999년 12월 중국의 양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수는 1023개사, 발행총주식은 2345.36억달러, 시가총액은 19505.64달러였다. 국민경제의 증권화비율을 살펴보면 1998년 중국증권시장 시가총액은 GDP의 24.4%에 불과하여 유통되는 주식 시가총액은 GDP의 7.26%에 불과하였다. 동기간에 미국의 증권화 비율은 135.5%, 영국은 154.3%였다. 중국은 일부 개도국의 증권화비율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주식시장이외에 국제, 회사채 및 기금시장규모도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⁸⁸⁾

그러나, 2001년 5월의 통계에 의하면 1,185개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으며 시가총액은 국민경제의 59.5%수준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의 중국 상장기업 주식구조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주식중 약 66%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주, 국유기업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법민주, 우리 사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⁸⁹⁾ 이들 주식은 국유자산의 유출 및 정부 지배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거래가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주식만이 실제거래가 가능한 주식이며 A

88) 劉文華(主編), *op.cit.*, p.221.

89) 상장된 주식이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에서 유통가능한 주식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주식은 소유주에 따라 국유주, 법민주, 외국법민주, 사내중업원주(職工股), 사회개인주(社會個人股) 등으로 구분된다. 국유주는 국가의 지분으로 대개 국가자산관리공사에 의해 보유하고 있다. 법민주는 국유기업의 지분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소유의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 외국법민주는 해외기업에 의해 소유된 지분이며 사내중업원주는 회사의 임직원에 의해 소유된 주식이다. 사회개인주는 유통가능한 주식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주식시장을 통해 취득한 주식이다. 이 형태의 주식은 A주, B주 또는 H주로 구분되어 거래될 수 있다. 그러나 국유주, 법민주 및 사회개인주가 상장된 총발행주식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주식의 종류로 이 세 가지가 거론된다.

주90)와 B주91)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우선 중국의 증권시장은 A주식시장과 B주식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A주식시장은 내국인에게만 개방하는 시장으로 인민폐로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서 모두 거래되고 있으며 2000년말 현재 599종의 A주가 상장되어 있었다. B주식시장은 외국인에게만 개방되는 시장이었으며 상하이 증시에서는 미 달러로 거래되고, 선전 증시에서는 홍콩달러로 거래되고 있으며 2000년 말 기준으로 55종이 상장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B주는 원래 외국인에 대해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이었으나 2001년 2월부터 내국인도 기존의 외화저축 범위내에서 매입가능하도록 되었다.⁹²⁾

이러한 A주와 B주이외에도 해외상장금융시장 상장주(외국인투자 전용주식)로서 H주(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국유기업이 발행한 주식, red-chips주식은 중국정부 또는 기업과 긴밀한 유착관계에 있는 홍콩기업의 주식, 홍콩증시 H주의 동향이 중국경제에 대한 국제투자자의 전망을 반영), N주(뉴욕 증권거래소에 직접 상장 또는 ADR 형식으로 상장된 주식), T주(동경 증시에 상장된 주식), L주(런던증시에 상장된 주식), S주(싱가포르증시에 상장된 주식)등이 있다.

B주식의 비율은 인민은행의 허가를 통하여 결정되며 의결권 없는 주식이다. 또한 B주나 H주는 A주로 전환될 수 없다. 한편 2000년도 이후 이렇게 주식시장이 성장한 주요 요인은 B주에 대한 내국인투자개방이었는데 B주를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이 오히려 주가 상승시에 주식을 처분하여 수익을 얻었다. 주식시장의 참여자로는 주식보유액 기준으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90.6%이지만 기관투자자도 개인투자자로 위장하여 거

90) A주식에 대한 투자자격은 중국국적을 소유한 자연인과 법인으로 제한된다. 소유주체에 따라서 국가주, 법인주, 사회개인주, 기업직공개인주(사주)로 구분된다. 사회개인주와 기업직공개인주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하지만 국가주와 법인주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91) B주식은 상해와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인 투자 전용주식으로 액면가를 인민폐로 표시하며 외화(상해-미국달러, 심천-홍콩달러)로 호가거래 한다. 동일주식의 B주식 소유자와 A주식 소유자는 회사법에 근거하여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발행사와 상장후 B주식이 A주식 대비 Discount거래되고 있다.

92) 徐冬根, "小議國民待遇原則在B股市場中的實施", 法學雜誌, 2003年 第5期(總第140期), p.18.

래들 하고 있으므로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실제로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관투자자의 주식투자 가능여부는 아래와 같다.

- 기 업: 2000년에 국유기업에도 주식시장 참여를 허용하였다.
- 투자기금: 폐쇄형 mutual fund를 허용하고 있으나 개방형은 아직 허용하고 있지 않다.
- 신탁회사: 신탁회사는 신탁업무보다는 증권업무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
- 투자공사, 투자관리공사: 사모자금을 운영하며, 자금출처는 정부, 기업, 사업단위, 개인, 학교 등으로 다양하다.
-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주식을 직접 매입할 수 없다.
- 은행: 은행은 주식을 직접 매입할 수 없지만 Call시장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다. 즉 은행이 증권투자가 가능한 주식투자자에게 대여하고 기관투자자가 대신 투자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식적인 증권거래소 및 B주식시장의 설립을 통하여 정책당국은 국내 및 해외의 여유자금을 국유기업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 생산적 활동으로 유입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당시 미흡한 제도적 여건은 원래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했다. 당시 외국인투자자들 사이에 거론된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유동성 부족, 극심한 가격 변화 및 불충분한 투자자 보호 등으로 집약되었고 이들은 아직까지 중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결함으로 지적되고 있다.

A주식시장과 B주식시장의 비대칭적 발전은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1993년에 A주식시장과 B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비율은 16:1이었으나 2000년에 이르러 그 비율은 75:1로 5배 가까이 증가한다. 두 시장에서 발행된 총발행주식수에서도 1993년의 11:1에서 2000에는 20:1로 그 격차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A주식시장의 시가총액과 발행주식수는 2000년 말 기준으로 각각 총시가총액의 98.7%, 총발행주식수의 95.2%를 점유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 본토 주식시장이 아직 외국인투자자에게 폐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매우 작은 규모의 B주식시장에만 접근 가능하기 때문이다.

B주식시장은 자본자유화 및 외환자유화가 안된 상태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증시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였다. 하지만 이 시장은 원래의 설립취지와는 반대로 외국인투자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내국인의 두 번째 주식시장으로 변모해 왔다. 이러한 결과의 첫 번째 요인은 해외 투자자들이 홍콩에서 H주식과 Red Chips(중국어명: 紅籌股)의 형태로 내재가치가 훨씬 더 우량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기업들의 주식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데서 찾아진다.⁹³⁾

실제로 중국 본토 주식시장의 특징으로 간주되는 부실한 기업공개, 높은 거래비용, 불충분한 유동성 및 시장하부구조의 미비 등은 B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무관심을 초래하였고 이것은 다시 이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된 원인이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B주식시장 설립에 대한 정책당국의 취지는 국유기업이 H주식을 발행하고 기타 역외 주식시장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어 버렸다.

내국인의 B주식시장 참여는 여러 통로들 통해 이루어져 왔다. 2001년에 내국인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철폐되기까지 법적으로는 유학생을 포함하여 해외거주자에 한하여 B주식시장에서의 거래가 허용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해외의 친척이나 친구의 이름을 차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B주식을 매매하였고 중국기업의 경우에는 해외 자회사들 통하여 B주식거래에 참가하였다. 내국인의 실질적인 참여비율이 거의 90%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궁극적으로 B시장을 A시장에 편입·합병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01년 3월 이 시장 참여에 대한 내국인의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기에 이른다.⁹⁴⁾ 물론 외국인투자자의 본격적인 본토 주식시장 참여는 외환자유화에 의한 인민폐 태환에 달려 있지만 A주식시장의 부분적 개방과 B시장의 A시장으로의 편입을 통한 두 시장의 합병은 곧 이루어질 전망이다.

93) H주식은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의미한다. 1993년 7월에 青島啤酒股份有限公司가 최초로 H주식을 발행한 바 있다. Red Chips는 중국기업이 지분 투자한 홍콩기업이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94) 徐冬根, *op.cit.*

2000년 이후 중국이 WTO가입이 눈앞에 다가오고 국내경제체제개혁이 부단히 심화되어 감에 따라, 중국증권업의 개혁도 크게 진전되었다. 증권시장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국에서의 증권시장 개설이후 10여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⁹⁵⁾ (1) 중국에서 증권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메커니즘을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유발하는 기능을 발휘하여 왔다. 발전방침은 “안정과 리스크 방지지상주의”에서 “안정과 효율성존중주의”로 전환하였다. (2)증권의 발행면에서 消額한도관리의 심사제도를 개시하고 核準制(기준에 따른 승인제도)를 변경하였으며 진정한 의미 시장경제의 요구에 따라 주식발행메커니즘을 확립하게 되었다. (3)실천과 상해의 두 증권거래소가 고도 신기술기업의 상장을 촉진하여왔다. (4)투자기금에서 규모화발전을 이룸과 동시에 국유기업, 국유주식회사가 투자자의 신분으로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새로운 주식시장에 전략투자자를 끌어들이고 보험기금이 증권투자기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⁹⁶⁾

증권업의 법제환경확립분야에서 보면 1990년에는 《증권공사잠정관리관법》, 《증권거래영업부잠정관리관법》 등이 제정되었으며 1992년에는 B주식의 발행이 허용되었다. 1993년에는 《기업채권관리조례》, 《주식발행 및 거래관리잠정조례》, 《기업내용공시실시세칙》, 1994년에는 《회사법》, 1995년에는 《담보법》, 1997년에는 《증권거래소관리규칙》, 《전환사채관리잠정관법》 등이 제정되었으며 1999년 7월 《증권법》이 실시되어 중국 증권시장이 법제도하에서 운용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법제 확립과정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⁹⁷⁾

첫째, 증권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 기업경영과 분류관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둘째, 증권회사 용자제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어 조건에 부합되는 증권회사는 증자주식확대를 하여 은행간 동업단기차입시장

95) 劉文章(主編), 『WTO與中國金融法律制度的衝突與規避』, (北京: 中國城市出版社, 2001), p.219.

96) 何耀明, *op.cit.*

97) 何耀明, *op.cit.*

에 진입하여 간접융자하는 것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증권회사주식담보대출관리관법》이 제정되어 증권회사가 주식과 基金券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는 것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증권회사의 규모확대를 제약하는 융자병목현상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되었다.

넷째, 장기적으로 중국증권시장규모확대를 제약하여온 국유주식 상장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가체개위가 증권관리부문과 국유자산관리부문이 개혁하여 국유주식과 법인주식 상장의 가장 바람직한 체널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국유주식 상장문제가 이미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국내 총주식의 70%이상을 점하고 있는 국유주식 및 법인주식의 상장 또는 다른 유통영역으로의 진입도 조만간 단계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⁹⁸⁾

종합적으로 말해서 중국증권업은 현재 시장화, 국제화, 규모화, 전문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WTO가입과 더불어 증권업은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으며 증권회사와 상장회사 모두 진입보한 조정과 개혁이 필요한 실정이다.

II. WTO가입이후 증권시장의 개방과 발전

1. WTO 가입이후 증권시장 개방

중국의 증권시장은 지난 10여년간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며,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모두 포함한다. 중국 금융당국은 1993년 8월 이후 외국증권사의 B주 거래를 허용하였는데, 외국증권사가 딜러나 거래 주관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 증권사와 대리계약을 체결,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하였다. 2001년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증권시장 개방을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WTO에 가입하는 즉시 외국 증권사가 B주 거래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 증권사의 중국사무소는 중국 증권거래소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기관은 합영회사를

98) 劉文華(主編), *op.cit.*, p.220.

설립, 증권투자기금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데, 외자 비율은 33%를 초과할 수 없으나, 3년후에는 그 비율을 49%까지 확대할 수 있다. WTO 가입 3년후 외국⁹⁹⁾증권사는 중국 국내 증권사와 공동으로 증권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 외자비율이 1/3을 초과할 수 없다. 합자 증권회사는 직접 A주 위탁 판매에 종사할 있으며, B주와 H주, 국제 및 기업채권의 위탁 판매 및 거래가 가능하다.¹⁰⁰⁾ 특히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따라 2002년 6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중외합자증권회사 설립규칙》 및 《중외합자 펀드관리회사 설립규칙》 등 구체적 법규를 발표하여 증권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¹⁰¹⁾ 특히 2001년 2월에는 국내 투자자들도 B주 시장을 개방하였으며, 2002년 12월 중국정부는 QFII

99) 中國統計年鑑, 各年版.

100) 新華網, 2001. 12. 11.

101) 2002년까지의 입법추이는 다음과 같다.

일 자	주 요 내 용
1993. 4	국무원, <주식발행 및 거래관리 잠정규정> 제정 - 중국의 주식관련 최초 통일법규
1994. 7	회사법 제정 - 중국의 기업관련 기본법으로, 기업의 주식·회사채의 발행 및 상장에 관한 기본적 내용 포함
1995. 9	국무원, <국가가 법규를 공포하기 이전 상장회사의 비유종주(국유주 및 법인주)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양도불허> 문건 시행
1998. 12	증권법 제정 - 회사법과 더불어 중국 증권시장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기본법규. 회사법과 증권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1999. 8	국가정부위, <외국인 국유기업 태입에 대한 잠정규정> 제정 - 외국인들의 국유기업에 대한 M&A를 허용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미반영
2001. 11	<외국인의 상장회사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의견> 공포 - 외국인투자 주식유한회사에 대해 A주 및 B주 발행 허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상장회사의 비유종주 취득 원칙적 허용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 및 분립 규정> 공포 -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 및 분리에 대해 원칙적 허용
2002. 4	<외상투자방향 지도규정> 및 <외국인투자합업 지도목록> 시행 - 이전과 비교할 때 △장래산업 증가 △은행, 보험, 상업 등 서비스산업의 개방화 대 △일반공업산업이 허용유여 포함 △서부지역의 외상투자기업의 주식지분 및 산업제한 완화가 특징
2002. 6	<외국인 지분참여 증권회사 설립규칙> 및 <외국인 지분참여기업관리회사 설립규칙> 공포
2002. 10	<상장회사 매입관리방법> 공포
	<상장회사 주주지분변동 정보공개 관리방법> 공포

(적격 외국기관투자자)제도를 통해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의 중국 국내 A 주 주식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동시에 QDII 제도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증시투자를 완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중국 QFII제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A주 주식, 국채, 전환사채, 회사채 등의 거래를 허가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폐쇄형 펀드의 매니저들은 최초 3년간 자금 인출이 금지된다. 둘째, 그 밖의 투자자들은 최초 1년간 자금 인출이 금지된다. 셋째, 외국인 1인당 투자 지분이 10%를 초과할 수 없다. 넷째, 외국인 총 투자 지분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QFII 자격 요건은 펀드 매니저의 경우, 5년 이상 경력과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관리 경험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험 및 증권사의 경우에는 영업기간이 30년 이상, 10억 달러 이상의 자본납입금 보유,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 관리 경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QFII 참여 기관들은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의 연례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를 거부하거나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국 증시 무자가 금지된다.¹⁰²⁾

또한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기업공개방식(IPO)을 기존의 쿼터제에서 보증제로 전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IPO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증권사들의 책임은 강화될 전망이다. IPO 업무 시행 규정에 따르면 2년간 위법행위가 없었고, 순자본이 2억 위엔 이상인 증권사가 주관사로 지정될 수 있으며, 중국 증권감독 당국은 신규 상장된 기업이 IPO를 실시한 첫 해에 50% 이상의 순이익 감소를 기록하거나 증자금의 50%이상을 당초 투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경한 경우 주관사를 처벌할 수 있다. IPO의 도입이 기업 공개 가속화 및 증권사 참여를 확대시킬 전망이다.¹⁰³⁾

이와 같이 중국이 증권과 신탁투자 등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지조치를 2002년 7월1일로 해제키로 공식 선언하였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2002년 6월 4일 공고를 통해 외국자본이 증권회사의 경우

102) 何耀明, *op.cit.*

103) *Ibid.*

전체 자본의 3분의 1까지, 신탁투자회사는 전체 자본의 33%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은 통신, 유통, 보험 등에 이어 증권 등 금융분야에서도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해 오랜 금기의 빗장을 풀면서 국경 없는 국제자본권에 공식 편입됐다.

중국이 증권 및 신탁투자회사들 대외에 개방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WTO 가입에 따른 개방 일정대로 약속을 지킨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외국 자본의 유입과 더불어 선진 노하우를 도입함으로써 초보단계의 중국 증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공고에 따르면 외국 자본은 중국 국내 증권회사나 신탁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외국 자본이 참가한 증권회사가 중국 기업의 주식 거래는 물론 국제 회사채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¹⁰⁴⁾

한편, 2002년 말까지도 금융파생상품 시장은 아직 정식 개설되지 않았다. 반면, 중국의 선물시장에서는 최근 개방되기 시작한 금융상품보다는 대두, 구리, 밀 등 1차상품이 주로 거래되고 있다. 2002년 중국 국내 증권시장 전체 유통성은 주식, 채권, 폐쇄형 펀드 등을 포함하여 10조 위엔에 달하였으며, 평균 1일 거래금액은 약 250억 위엔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2년 홍콩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1일 거래금액은 14.5억 HK\$에 달했으며, 뉴욕 증시의 중국 기업 주식의 1일 거래금액 또한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QFII 등 외국인에 대한 A주 시장 개방도 200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02년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이 선전 증권거래소의 3.5배에 달해 대부분의 기업 자금이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조달되었다. 중국의 주식구조(株券構造)는 A, B주 이외에도 H주, Red chips, 국유주, 법인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H주는 중국 국내기업으로서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기업의 주식이며, Red chips는 주로 홍콩에서 법인 영업 허가를 획득한 중국기업의 주식이다. 동 기업은 법적으로는 외국기업이지만 실제로 중국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국유주는 유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다른 일반 A주와 다르지 않다. 중국정부는 증권

104) 繆劍文·羅培新, *op.cit.*, p.206.

시장에서 국가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유주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법인주는 대부분 국유기업인 법인에 의해 발행된 주식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주와 유사하다. 법인주는 법인간에 장부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국유주와 법인주는 일반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주식인데, 전체 주식의 약 65.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표 〉 유통주식의 비중 추이(1993~200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총발행주식수 (억주)	A주	300.2	592.6	704.1	1,025.0	1,646.1	2,204.0	2,757.9	3,439.6
	B주	28.5	47.0	61.5	85.5	125.3	141.4	151.0	173.8
	합계(1)	328.7	639.6	765.6	1,110.5	1,771.4	2,345.4	2,908.9	3,613.4
유통주식수 (억주)	A주	57.1	144.4	179.0	267.1	443.2	607.0	810.5	1,078.2
	B주	24.5	46.0	46.0	78.4	117.6	133.9	141.9	151.6
	합계(2)	81.6	190.4	225.0	345.5	560.8	740.9	952.4	1,229.8
시가총액 (억원)	A주	3,319	3,516	3,311	9,449	17,154	19,299	26,168	47,456
	B주	212	75	163	393	375	207	303	635
	합계(3)	3,531	3,691	3,474	9,842	17,529	19,506	26,471	48,091
유통주식시가 (억원)	A주	683	814	791	2,514	4,856	5,550	7,937	15,524
	B주	179	155	147	353	348	196	277	564
	합계(4)	862	969	938	2,867	5,204	5,746	8,214	16,088
유통주식수 비율(2/1)		24.8	29.8	29.4	31.1	31.7	31.6	32.7	34.0
유통주식시가 비율(4/3)		24.4	26.3	27.0	29.1	29.7	29.5	31.0	33.5

2002년 12월말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의 A주 상장회사 수는 1,199개 사, 시가총액은 4,520억 달러 규모에 달하였다. 그중 유통주의 시가총액은 1,559억 달러, 2002년 총 거래 규모는 3,270억 달러에 달하였다. 한편, 2002년 말 중국 국제시장은 액면가 5,730억 위엔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社債시장 역시 액면가 약 860억 위엔, 특히 전환 사채시장은 액면가 88.5억 위엔에 달하였다. 중국의 채권시장은 국제 발행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03년 6월말 현재 2002년 12월보다 늘어 1,331개사로 증가하였으며 7월말 현재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이 242개로 그 중 광동성 기업이 23개로 가장 많다.¹⁰⁵⁾ 또한 최근에는 선물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바, 중국선물거래협회는 2003년 7월 한달 선물거래액이 6,634.06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81.20% 증가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¹⁰⁶⁾

2. 증권시장 개방 확대의 영향

증권회사 등에 대한 투자 금지가 해제되면서 외국기업의 중국 상륙이 가속화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증권회사인 모건 스탠리는 중국건설은행과 합작설립한 중국국제금융회사(CICC)를 통해 2002년 5월말부터 증권 위탁증거매입무를 시작했으며 프랑스 독일의 증권회사들도 중국과의 합작을 가속화하고 있다. 프랑스의 리앙증권은 상차이(湘財)증권과 합작의향서를 교환했으며 파리의 한 증권사는 장청(長城), 독일의 한 증권사는 인허(銀河)증권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외국증권사들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증시가 선진화된 기법 아래 빠르게 성장 발전할 것이며, 중국 증소 증권업체들의 도태도 가속화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의 QFII 규제 완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 주가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주식시장별로 차별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외국인 투자 개방이 A주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B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금년 6월 이후 QFII제도 시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 투자 증가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에서 QFII 자격을 처음 획득한 UBS와 노무라 증권은 2003년 6월부턴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UBS는 3억 달러, 노무라 증권은 5천만 달러의 투자 한도 승인을 획득하였다. 중국정

105) 金融時報, 2003.8.7.

106) 證券日報, 2003.8.7.

부는 사회보장기금 확보를 위해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유기업의 지분 매각을 추진, 외국계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투자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 A증시 상장기업 중에서 공공부문, 자동차, 소매업종 등이 투자 유망 업종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기업, 자원개발 기업 등이 높은 수익률과 성장 잠재력 등 투자 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도로, 항만, 공항, 리조트산업, 케이블 TV 업체 등 독점 국유기업이 우선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참고로 2003년 7월 초 UBS는 중국의 통신업체인 중싱텔레콤, 항공업체인 상하이 항공콘테이너, 운송업체인 시노프렌스, 철강업체인 바오산철강 등의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III. 증권시장의 특징과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점

(1) 공유제적 요소로 인한 주식구조의 복잡성

증권증권시장의 특징은 정부 정책에 의한 과도한 영향, 기업(대부분 국유기업)의 정확한 가치 평가의 어려움 및 투명성이 결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주식은 사유제를 전제조건으로 하며 증권시장은 고도의 시장경제발달의 산물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증권시장은 시장경제가 완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출현한 것이며 공유제를 기념이념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이에 따라 국가의 통제요소가 지나치게 강하다.

또한, 주식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이 대단히 복잡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식시장의 대외개방과 관련하여 말한다면 중국주식시장은 제한적이어서 WTO의 요구와는 큰 격차가 있다. 현재 중국주식시장은 A주와 B주로 구분되어 있는 바, 이러한 주식구분이 중국의 현단계 경제발전상황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경제체제 전환에 도움이 되며 국제자본이 중국국내자본시장에 주는 충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90년대 중반이후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통하여 중국의 그러한 주식 구분의 존재가치를 더욱 믿고 있으며 따라서 단계적으로 국내자본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이러한 주식구분의 부정적인 효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¹⁰⁷⁾

계획경제의 쿼터제도는 B주 시장의 발전을 제약하게 된다. 정부는 B주 발행규모에 대하여 계획쿼터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계획경제의 쿼터제도를 채택하여 시장경제하의 B주 시장을 관리함으로써 여러 가지 왜단이 발생하고 있다. 원래 주식 발행은 기업이 경영발전의 필요에 근거하여 행하는 것이지만 쿼터제도는 객관적으로 기업이 자신의 발전을 위한 필요에 의거하여 최선의 발생시기를 결정할 수 없게 만들게 되며 동시에 쿼터심사업무도 불투명하고 쿼터가 개시된 때에 심천과 상해 두 지역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내지 기업과 B주는 관련성이 없다. 쿼터는 분배하는 과정에서 너무 세분하여 나눔으로써 각각의 주식 규모의 과도한 영세성과 각 주식간의 유통상의 차이점을 초래하게 되었다. 쿼터도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하달되어 신주의 발생이 연말에 집중되어 B주 발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B주의 발행 확대는 A, B 주식시장의 분리현상이 날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으며 중국밖의 투자자들의 우려도 그에 따라 심해지고 있다. B주와 A주는 모두 보통주에 속하지만 동일주식동일권리는 아니다. B주의 발행가는 일반적으로 A주 발행가보다 낮으며 비주 주주는 현금으로 이득과 배당금을 취득하지만 A주는 항상 送配주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B주의 주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B주의 낮은 주가는 A주의 하락을 초래하기도 하며 이것은 일종의 B주가 있는 A주는 시장에서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물론이고 실제에 있어서도 A주와 B주는 결국은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 문제는 B주의 발행확대가 진행될수록 A주와 B주의 통합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요컨대, 시장구조를 보면 상호 격리된 두 가지 종류의 시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중국내 투자자의 주식거래는 A시장에서만 할 수 있으며 중

107) 劉文華(主編), *op.cit.*, p.222.

국밖의 투자자들은 B시장을 통해서만 주식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資金源에 따른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株權구조를 보면, 유동가능한 사회공중 주식과 유동 불가능한 국가주식 및 법인주식으로 양분되어 있다. 증권의 자주적 운영능력과 기법 그리고 서비스 제공의 품질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증권기업들은 세계 선진국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¹⁰⁸⁾

또한 국유주와 법인주는 상장하여 유동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건전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2000년 7월 10일 중국주식시장 총 주식은 3738.68억주인데 그중 비유동주는 2494.42억주로서 총금액의 66.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유동주의 대부분은 국유주이다.¹⁰⁹⁾ 국유주와 법인주는 계획경제의 색채를 띤 “국가소유와 집체소유”이며 국가의 상장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이며 상장유동이 제한되어 있다. 이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 대주주가 회사경영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들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회사의 경영진이 시장발전추세에 따라 경영전략을 조정하고 관리혁신 조치를 취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또한 국가주, 법인주는 대중주와는 달리 “동일주식 동일권리, 동일주식 동일이익”이라는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가주와 법인주는 비교적 적은 수량만 확보하여도 회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되어 주소 투자자들의 이익이 손상될 수 있으며 가격조작을 통하여 회사의 대중주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유자본의 비유동성은 자본운용효율성 제고를 저해하고 자본이 수익성이 높은 항목으로 흐를 수가 없다.

현재 국가의 유관부문이 국유주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각종 경로를 통하여 상장유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중국 국유주의 엄청난 규모를 고려하여 볼 때 갑작스럽게 주식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엄청난 충격을 주식시장에 가져다 줄 것이다.¹¹⁰⁾

108) 陳青東, 村尾龍雄, “中國における外商投資企業の上場に関する法制度および最近の政策動向”, (上) 國際商事法務, Vol. 30, No. 3 (2002), pp. 330-331..

109) 劉文華(主編), *op.cit.*, p.222.

110) *Ibid.*

(2) 거래주식의 제한성

주식구조의 복잡성보다 주식시장의 제도적 제약으로 작용하는 더 큰 문제는 다양한 형태의 주식 중에서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데에 있다. 국유주, 법인주 및 해외법인주의 경우 증권거래소에서의 유통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내종업원주의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이 지나야 매매가능하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주식은 사회개인주이다. 2000년 당시 총발행주식수에서 유통되는 주식은 1/3수준인 34%에 지나지 않는다. 시가총액대비 유통주식시가 비율도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주식시장의 치명적 결함은 바로 이 유동성 부족이다.¹¹¹⁾

주식시장의 유동성은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유동성이 높은 주식시장은 생산적 활동으로의 자금 이전을 촉진한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기업의 생산활동은 기본적으로 비유동적 고정무자를 수반하며 이 고정무자는 흔히 장기성 투자재원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미래의 불확실성과 연계된 유동성 위험은 저축자의 장기무자를 가로막을 수 있다. 따라서 유동성이 높고 거래비용이 낮은 주식시장은 투자자의 유동성 위험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투자를 용이하게 한다. 둘째, 주식시장의 높은 유동성은 인수·합병시장을 활성화하여 불량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유리하다.¹¹²⁾

111) 繆劍文·羅培新, *op.cit.*, p.276.

112) 따라서 유동성이 낮은 중국의 주식시장은 정책당국의 증권거래소 설립 취지인 '국유기업의 생산선비 현대화' 및 '국유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걸림돌도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비유동성은 앞으로 주식시장의 개방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외국인투자자의 관심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주식시장이 직면한 유동성 부족이라는 제도적 제약은 정치적 제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국유주 및 국유주나 마찬가지로 법인주가 유통되지 않고 있지 아니한 것은 아직까지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는 국유기업의 소유구조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유기업 소유구조의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주식시장의 유동성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비록 단편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국유기업의 연성예산제약, 국유은행 상업화의 어려움 및 주식시장의 제도적 제약은 경제발전의 초기단계를 벗어나는 시점에서 중앙집권적 신용경제와 시장경제 또는 사회주의의 금융개념과 시장경제가 공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은행부문에 의한 증권시장의 규범적 발전의 제약요인

은행 부문의 발전의 지체로 인하여 증권시장의 규범화도 제약을 받고 있다. 먼저 중국금융시장의 발전과정 속에서 '선자본시장 후화폐시장'의 정책을 채택하여 화폐시장의 발전이 지체되었다. 현재 은행간 단기자금 시장을 주제로 하는 화폐시장 구조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지만, 독립된 시장체계를 형성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각 시장의 발전에 상호 연관성이 부족하고, 그 규모와 수량 거래품목이 증권시장의 대규모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화폐시장에서 증권시장으로 유입 또는 유출하는 자금이 제한을 받게 되었고, 어느 정도 증권시장기능을 제약하였다.

둘째, 화폐시장발전이 완만하여 시장의 내재적 조절 메카니즘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증권시장의 발전을 제약하였다. 게다가 화폐시장의 정책도구로 사용되는 품목이 단조롭고 상호대체성이 약하여 화폐시장의 원활성, 유동성 및 안전성을 약화시켰다. 그밖에 금융정책도구인 금리가 시장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탄력성이 작고 민감도가 낮아 시장자금의 수요공급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영할 수 없고, 또한 기준금리 및 이를 기초로 한 유기적으로 연결된 금리구조를 형성할 수 없고, 금융시장 투자수익률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했고, 주식시장의 무기성과 주식가격의 과동성을 심화시켰다.

또한, 전통적 용자방식도 증권시장의 규범적 운영을 제약하여 왔다. 국유상업은행은 간접용자에서 독점적인 지위에 있으며 방대한 은행계통의 자금이 유한한 주식회사규모와 서로 대치된다. 은행계통의 일부자금만 주식시장에 유입된다 할지라도 가격과 거래량에 심한 과동을 초래한다. 반대로 은행계통에서 합리적으로 증권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제한을 받거나 증권의 수요량이 억제된다면 증권가격의 하락, 증권수요량의 감소, 증권시장의 위축 등의 현상이 나타나거나 각종 위법자금이 증권시장에 들어와 증권시장의 무기풍조를 조장한다.

또한, 제도상의 결함이 증권시장의 규범화 발전을 제약하였다. 중국자금시장가격이나 금융정책수단인 금리가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고 증권시장제도 자체에 결함이 있다. 예를 들면 주식 一級시장의 상장에 대한 수

량통제, 정부의 주식 二級시장에 대한 직접통제, 상장회사의 퇴출 메커니즘의 부재 등이 그것이다.¹¹³⁾ 1994년 회사법 제157조는 상장회사가 일정한 상황에 처한 경우 국무원 증권관리부문을 주식상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8조는 주식상장의 終止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해 심천 두 거래소에서는 어느 회사도 양호하지 못한 경영성과를 이유로 퇴출된 적이 없으며 일반 투자자들은 중국증권시장에서 퇴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¹¹⁴⁾ 주식회사가 상장되기만 하면 하루 밤사이 자본이 7-8배 증가한다. 상장된 회사가 부실경영에도 불구하고 퇴출되지 않으면 주식시장 전체가 결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다.

퇴출은 이미 중국 증권감독중의 해결을 기대하고 있던 문제였으며 2001년 2월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손실상장회사잠정상장정지 및 상장중지실시판법》을 제정하였다. 시장퇴출제도의 확립은 공평, 공정, 공개라는 증권시장의 3대 원칙의 구현이다. 중국의 시장퇴출제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퇴출조건은 다음과 같다. 회사법 제157조 및 제15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장회사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관리부문을 주식거래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첫째, 회사의 자본총액, 주권분포 등에 변화가 발생하여 상장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둘째, 회사가 규정에 따라 그 재무상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재무회계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셋째 회사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넷째 회사가 최근 3년동안 연속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다섯째 상장회사가 제157조 제2항, 제3항의 상황중의 1에 처하여 그 결과가 엄중하거나 前 제1조 또는 제4종의 상황중의 하나가 기한내에 해소되지 못하여 상장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무원 증권관리부문이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회사가 해산을 결정하고 행정주관부문으로부터 법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국무원 증권관리부문을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113) 閻秀華, “健全退市制度, 加強證券監督”, 法學雜誌, 2002年 第5期(總第134期), pp.27-29.

114) *Ibid.*

《손실상장회사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관법》의 규정에 의하면 상장회사에 연속하여 3년 동안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이 공포된 제3차년도 보고일부터 증권거래소는 그 주식에 대하여 전광판 게시정지를 실시하고 게시정지후 5 업무일내에 당해 공사주식에 대하여 거래정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식이 거래정지된 회사는 유예기간내의 어느 1 회계년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연차보고서 공포후 중국증감위원회에 재상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정지된 회사는 유예기간내 제1회계연도에도 계속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재무보고서에 대해 등록회계사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견표시를 거절한 경우 중국 증감회는 그 주식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다. 회사가 ①유예기간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②거래정지일부터 45일내에 유예기간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7조에 규정된 회사가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연차보고서를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④재상장 신청이 중국 증감회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경우 중국 증감회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아직도 주식의 시장퇴출과 관련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효과적인 운영 메카니즘이 결여되어 있고, 전전한 화폐시장과 순조로운 자금유통시장을 건립할 수 없고, 화폐시장의 조절신호에 신속하고 정확한 반응을 할 수 없다.

중국의 증권시장 퇴출제도중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출제도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 회사법 제 157조 및 제158조의 상장의 일시 중지 또는 终止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그 실시관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둘째, 시장퇴출처리권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상장은 상장회사와 증권거래소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하게 되므로 그러한 협정을 위반한 상장회사에 대한 퇴출권은 증권거래소가 결정하게 된다. 상장회사의 퇴출처리권한의 합리적인 배분과 이양도 필요한 바, 심사승인권한은 당연히 중국 증감회가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민사배상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¹¹⁵⁾

115) *Ibid.*

2. 증권정책상의 문제점

(1) 지나친 정부의 간섭

중국의 증권시장에서는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전체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의 과잉간섭은 중국증권시장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해 부족이나 집행상의 공정성 부족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다. 국유주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정부의 간섭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중국정부와 상장기업간의 특수한 상호의존관계에 기인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중국의 정책당국은 주식시장의 개방을 포함하는 자본자유화에 상당히 소극적이다. 자본자유화로 인한 단기성 투기자금(hot money)의 유입이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금리자유화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이 개선되지 않은 중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A주식시장을 포함하는 자본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은 2005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¹¹⁶⁾

(2) 정책의 불연속성

외국 투자자의 생각은 중국정부의 B주 발전전략에 대한 태도가 줄곧 불명확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B주 법규, 정책이 몇 가지 분야에서 장기성과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고 때로는 일시적인 구체적인 상황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으로 드러난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법규와 정책은 중국의 다른 분야의 법규, 정책과 상호 모순되고 충돌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자산평가에 대해 말한다면 자산평가는 시간, 비용, 회계처리와 조세납부 측면에서 해당 회사가 B주 발행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데, 국유자산관리국의 정책에 의하면 회사의 상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산 평가가 있어야 하지만 증권감독위원회의 정책에 의하면 항상 평가가 있어

116) 殷武, "目前我國《證券法》存在的主要問題及修改建議",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2030.

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왕왕 B주의 중국밖 투자자들은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¹¹⁷⁾

3. 증권회사, 상장회사 및 투자자와 관련된 문제점

(1) 증권회사의 문제점

1) 자본규모와 경영범위의 영세성

1988년 심천 경제특구 증권회사가 설립된 후 지금까지 중국 증권회사는 10년의 발전기간을 가졌지만 중국의 증권회사는 아직도 요람기에 있다. 1999년 7월까지 중국의 전업증권회사는 97개이며 겸업기관은 330개이고 종업원은 수는 20여만명이다. 그중 자본금이 20억을 초과하고 자산이 150억을 초과하는 대규모 증권회사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國泰와 君安이 합병하여 설립된 國泰君安증권은 37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으며 총자산은 200억원이다. 중국의 4대 국유상업은행 및 일부 신탁투자회사의 증권영업부가 합병하여 설립된 중국은하증권유한회사는 총자본금이 45억원으로 국내 증권회사의 새로운 선두주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국 증권회사는 여전히 규모가 작으며 다음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¹¹⁸⁾

첫째, 자본규모의 영세성이다. 증권시장의 발전의 두 개의 바퀴라고 할 수 있는 증권회사와 상장회사가 정상적이고 전전해야 증권시장이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다. 중국의 증권기관은 현재 주로 다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하나는 증권전업기관으로서 각지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증권회사이며 다른 하나는 증권겸업기관으로서 증권겸업자격을 가지고 있는 부설의 증권영업부이다. 이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 중국 증권기관은 숫자면에서는 비교적 적절한 수준에 도달하였지만(현재까지 증권전업회사는 약 100개사, 증권겸업기관은 300여개사) 아직도 경영능력이 평균적으로 낮다.

117) 劉文華(主編), *op.cit.*, p.227.

118) 殷武, "目前我國《證券法》存在的主要問題及修改建議",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2030.

중국 증권기관은 소규모경영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주로 두 가지 방면에서 표현된다. 먼저 빈약한 자체보유자본이다. 1997년까지 거의 100개 증권전업회사중 등록자본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것은 5개사에 불과하며 절대 다수가 10억원 미만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 현재 몇 개의 증권회사들이 증자와 합병을 하여 이러한 영세성은 크게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다음, 과소한 자산규모이다. 자산규모의 크기는 증권회사의 경영규모를 측량하는 주요 기준이다. 외국투자은행과 비교해보았을 때 중국증권기관의 자산규모는 현저한 격차가 있다. 규모가 지나치게 작으면 증권기관의 업무경영생산성면에서 불리한 영향을 준다. 업무상의 능률저하를 가져오고 업무계획능력과 이익획득능력을 심각하게 제약하게 된다. 이와 같은 소규모 보유자금으로는 외국증권회사의 시장진입후에는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 이러한 소규모 자체보유자금과 유효한 융자체널의 결여로 인하여 중국증권회사들은 큰 경영리스크를 안고 있다. 업무규모의 부당한 확대에 따라 자금부족은 일부 증권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위협이 되고 있다.

2) 자율성 결여

최근 시장환경의 변화와 증권감독기구의 감독업무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중국 증권회사들이 법에 의한 경영 의식도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아직도 그러한 의식은 약하며 경영행위도 여전히 규범 의식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¹¹⁹⁾

3) 협소한 업무영역

증권회사들이 승인받은 경영범위는 대단히 넓지만 현재 전개되고 있는 주요 업무는 3가지 항목에 불과하다. 첫째는 중개업무 둘째는 매각수탁 업무 셋째 증권자영업이다. 중대형 증권회사의 이윤수익은 5, 3, 2,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증권 2급시장 매각수탁과 매매수수료 수입이 총수입의 5할, 고객보급금리차 수입이 3할, 증권회사의 자체 경영 및 기업을 대리한 재산처리와 자산관리 등 새로운 유형의 업무 수입이 2할을 차

119) *Ibid.*, p.233.

지한다.¹²⁰⁾ 중소형 증권회사가 전개하는 것은 2급시장업무에 불과하며
종류가 하나에 불과하여 증권시장

4) 불량자산

현재까지 학자들과 국가의 정책결정기관들이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것은
오로지 국유상업은행의 불량자산이었다. 증권회사의 불량자산은 아직까
지 미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금융기구의 불
량자산 문제는 상업은행 못지 않다. 증권회사의 불량자산은 주로 지난
몇 년 동안 경영에 대한 규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때문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¹²¹⁾

① 불량 부동산

증권에 중국에는 증권사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90년대 초 부동산열풍이 불 때 일부 증권회사들이 대
규모 자산을 부동산에 투입하였다. 1997년 18개 증권전업기구들에 대한
조상에 의하면 부동산, 주권 등 유동성에 비교적 차이가 있는 비증권종
류에 투자한 자산이 총자산의 10%를 점하고 있었으며 어떤 기구는 심지어
40%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만약 경제거품이 터지는 경우 증권회사들
이 부동산에 투입한 자금은 회수하기 어렵게 되어 이로 인해 대량 불량
자산이 생기게 된다.

② 불량 채권

증권회사들의 불량채권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겨나게 된다 첫째,
대외적으로 법규를 위반하여 대출을 하여 형성된 불량채권이다. 과거 법
률과 법규가 완비되지 아니하여 일부 증권회사들이 자신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대외적으로 대출을 해준 경우가 있으며 그러한 대출금이 제때
에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대출금은 불량채권이 되는 것이다.

120) *Ibid.*, p.230.

121) 張長利, "從金融不良資產處置看中國法治建設",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1251.

둘째, 법령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대월하여 형성된 불량채권이다. 이러한 대월은 실제적으로 고객에 제공하는 신용대출이며 고객이 거래 실패로 상환할 능력이 없으며 불량채권이 된다. 9개 증권전업기구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와 같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은 유통자산의 비중은 25.33%에 달한다.

③ 불량주권이다. 과거에 규율되지 아니하였던 경영과정에서 일부 증권회사는 기업 주식참여를 통하여 또는 다른 법인과 설립한 공동출자기업을 통하여 이러한 기업들의 주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만약 이러한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좋지 아니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회사들이 보유한 이들 기업의 주권은 결국 불량주권이 되는 것이다.

④ 기타 불량자산

예컨대, 증권회사가 어느 기업에 대출을 하였으나 채무기업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인 증권회사는 법률 수단을 통하여 채무인의 기계, 설비 및 건물 기타 재산에 대하여 채권은 행사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재산을 쉽게 현금화되지 못하는 경우 증권회사의 불량자산이 된다.

5) 리스크 관리문제

리스크 관리분야에서 엄격하고 유효한 내부통제제도와 리스크 관리제도는 증권회사의 생존과 발전의 기본조건이다. 현재 중국 증권회사들은 아직까지 통일적인 내부통제제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증권회사 자체의 내부통제제도도 형성하기 이틀 데 없다.¹²²⁾ 중국의 증권회사들이 외국기업들과 경쟁하려면 필연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업무도 세분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확한 구매대상과 용자방식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증권회사의 업무처리구조상, 많은 증권회사들이 엄격한 내부인 통제제도가 없어서 고급관리인원의 행위는 주주의 효과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¹²³⁾

122) 劉文華(主編), *op.cit.*, p.234.

123) *Ibid.*, p.235.

(2) 상장회사의 문제점

정보공개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못하다. 많은 상장회사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중국 공인회계사가 서명한 경우에도 여전히 의문의 소지가 많다. 일부 상장회사의 허위정보 조작, 정보공개시기 조절, 주요정보의 미공개, 유언비어 살포 등 증권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 회사의 경우 정보의 진실성이 심하게 왜곡되어 공인회계사가 서명한 경우에도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정보공개제도의 불완전성은 중국 증권시장의 개방 이후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¹²⁴⁾

상장회사의 부실한 재무상태도 중국 증권시장의 문제이다. 상장되어 있는 국유기업의 약 1/3 정도가 적자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상장회사 전체(비국유기업, 예를 들어, 외자기업 포함)의 부실채권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실채권 규모는 2000년 말 기준으로 상장기업 은행차입 총액의 32%인 것으로 추산된다.¹²⁵⁾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는 국유기업의 상환능력은 단순히 금리혜택이나 출자전환과 같은 금융구조조정에 의해 개선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류의 기업들에 대한 국유상업은행의 대출은 구조적 부실채권이다.

특히 중국의 부실한 회계제도는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현재 중국의 기업들 대부분은 최소한 2개 이상의 장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에서 조작된 장부를 바탕으로 형식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가치의 판단에 필수적인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계제도의 후진성은 회계감사의 독립성 부족과 회계장부 조작에 대한 미약한 처벌에서 비롯되고 있다. 회사가치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객관적인 재무제표가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개인투자자로 구성된 중국 주식시장에서의 가격결정은 주로 추상적인 회사의 외형과 두머에 의한 투기적 매매에 의존한다.¹²⁶⁾

124) 藍壽榮, 任品惠, 吳洪芳, “論證券市場信息披露的法律監管與新聞輿論監督”, 法學雜誌, 2003年 第2期(總第137期), p.24.

125) 이들은 어느 회사의 세전이익/이자비용 비율이 100%가 되지 않으면 그 회사의 은행차입을 부실채권으로 간주하였다.

126) 藍壽榮, 任品惠, 吳洪芳, *op.cit.*, p24.

뿐만 아니라 상장회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유기업과 관련된 문제점도 중국 증권시장의 구조와 관련하여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상당수 지방의 국유기업인데, 지방정부의 재정세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 지방 국유기업 퇴출은 지방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어 지방정부로서는 당해 지방의 국유기업 퇴출을 억지로 막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둘째, 중국의 증권시장은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이 있다. 국유기업 개혁 부진은 4대 국유 상업은행의 개혁을 제한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금융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다. 경영실적이 양호하지 못한 많은 국유기업들은 퇴출위기에 처해 있으나, 각종 정치사회적 이유로 인해 쉽게 퇴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투자자 구성상의 문제점

투자주체 구성면에서 기관투자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 1999년 말 당시 거래소에 등록된 5,200만 주식계좌 중에서 기관투자자가 소유한 계좌는 0.3%에 불과하며 기관투자자의 보유주식은 시가총액의 10.7%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정책당국은 최근에 들어 기관투자자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증권시장투자주체에 대해 말한다면, 중국주식시장은 여전히 초보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주식시장주체는 전체적으로 보아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로 구분된다. 기관투자자 즉 법인투자자는 증권회사, 기업, 투자기금, 신탁기금, 보험기금 등이다. 주식시장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주식시장의 자본주체는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가 중심이 되고 개인투자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 미국에서는 80%이상의 투자자가 투자기금을 통하여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직접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은 20%에 비치지 못한다. 그런데 1999년 7월말까지 중국시장투자자는 4221만명정도인데 그중 절대자수가 소규모 개인투자자이며 기관투자자는 16.73만호에 불과하여 0.5%에 불과하다.¹²⁷⁾

127) 劉文華(主編), *op.cit.*, p.222.

중국의 현재의 기관투자자의 규모를 살펴보면 주로 투자기금, 증권회사, 신탁투자공사, 재무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미국의 기관투자자들은 양로기금, 보험기금, 투자기금, 은행신탁부, 투자은행 및 각종기금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양로기금, 보험기금 및 공동기금 등 3대 기관투자자이다. 1996년 양로기금과 보험기금의 28.5%, 공동기금은 14.5%였다. 일본의 경우, 은행과 기업법인이 주식시장에서의 절대적인 주력 기관투자자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의 양로기금은 아예 시장진입에 금지되어 있으며 증권투자기금의 시장진입도 뒤늦게 허용되었으며 규모도 적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

현재, 중국에서 증권거래를 하는 기금은 총 42개사에 불과하며 그중 1999년 말 현재 불과 20개사에 불과하며 총규모도 350억달러로서 주식시장 유통총액의 4%에 불과하다. 비교적 최근에 보험기금이 증권투자기금을 통하여 시장진입이 허용되었지만 현재 그러한 기금규모도 적고 종류다. 증권법은 은행과 증권업의 분업경영을 명확히 하여 은행이 직접 증시에 개입할 수 없다. "은행자금이 규정을 위반하여 증시에 유입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유기업과 국유자산 지배주식보유기업은 상장거래 주식을 암거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회사는 자영업무를 진행하는 때에는 자신의 보유 자금과 법에 따라 모집한 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증권회사의 시장참여는 용자체널이 부족하여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1998년 3월에 최초로 두 개의 뮤추얼펀드가 설립되고 2000년에 이르러 33개의 펀드가 존재할 정도로 당국은 뮤추얼펀드 산업을 적극적으로 조성한다. 비록 모두 폐쇄형이지만 이 펀드들은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이들은 보험회사 주식간접투자자의 유일한 경로이며 은행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신규공모주(IPO)의 할당에서 우선적인 위치에 있다. 중국 당국은 2000년 1월에 보험회사의 주식간접투자를 허용하며 그 해 3월에는 4대 국유보험회사의 주식간접투자한도를 총자산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한다.

4. 주식시장 후진성에 기인하는 문제점

(1) 주가의 극심한 변동성

중국의 주식시장은 극심한 가격 변동성에서 볼 수 있듯이 무기적인 요소가 강하고 리스크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상해 거래소의 경우 1992-2000년까지 주가파동은 50여 차례에 달했다. 예를 들어, 1992년의 상해 증권거래소와 1996년의 심천 증권거래소에서는 주가지수 최고치가 최저치의 거의 5배에 육박한다. 비록 최근에 들어 주가 변동성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1992~2000기간에 두 거래소 주가지수의 최고치/최저치 비율이 평균적으로 각각 2.3(上海) 및 2.2(深圳)에 이른다.¹²⁸⁾

이러한 변동성은 주로 개인투자자로 구성된 시장구조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잦은 주가파동은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홍콩 등 주식시장의 시장 수익률은 대체로 15~25배 사이인데 반해, 중국의 주식시장 평균수익률은 30~40배에 달해 거품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안정적인 시장 접근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거품현상의 존재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 매매를 선호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주식이 폭등과 폭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인데 대표적인 것들로는 다음과 같이 지적도리 수 있을 것이다. (1)중국주식시장의 불성숙이다. 중국의 증권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는 있지만 불과 10여년의 역사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가의 과도한 파동을 피하기 어렵다. (2)정책의 비연속성이다. 중국은 경제체제의 모델전환과정에 있으며 이 시기에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주식시장발전 관련 정책은 시장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정책의 비연속성은 필히 주식시장에 큰 파동을 주게 된다.¹²⁹⁾

예컨대, 1996년 12월 인민일보 사설의 내용 그리고 1999년 5월 정부 정책의 변화로 주가의 엄청난 폭락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3)시장조종행

128) 殷武, "目前我國《證券法》存在的主要問題及修改建議",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2030.

129) *Ibid.*

위의 존재도 주가의 과도한 파동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중국의 증권법이 시장조종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시장조종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넷째 투자자의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에서 투자자의 구조는 개인주도형과 기관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주도형 구조는 주식시장에 파동을 가져다주기 쉬우며 중국이 바로 투자주체로서 개인투자자가 절대적인 비율을 점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 기관투자자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끌려 다니는 형국이며 이로 인해 중국 주식시장이 안정성이 저해받고 있다. 반면에 기관투자자가 강력한 자금력을 가지고 중국과 같은 소규모 주식시장에서 특정한 주식가격을 쉽게 조종하게 되면 개인투자자가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¹³⁰⁾

(2) 차명계좌

중국 증권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와 거액투자자들이 차명 계좌를 통해 장기적인 구매를 시도, 소액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서 점차 소외되는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기관투자자와 거액투자자는 소액 투자자와는 달리 신용대출, 국제환매 및 기타 신용거래상의 특권을 누리게 되므로 단기적으로 대량의 주식을 독점 매수할 수 있게 된다.

(3) 기 타

그 밖에도 현재 중국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외국증권회사는 B시장에서 단순 중개업무만 가능하며 분할된 증권시장은 주식시장 경제개혁과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주의 속성이 남은 증권발행심사제도, 기업경영자 선거, 경영방침, 이윤분배, 주주들의 회계장부 열람불가, 장외시장의 거래 성행 등이다. 다음, 증권회사 외에 증권업무를 겸하는 신탁투자공사 등의 위법경영과 자금불량의 문제를 안고 있는 등 증권경영기구의 업무활동이 규범화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아직 선물 시장이 개설되지 않아 헛지 수

130) *Ibid.*

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투자자 구성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맹목적인 투기성향이 강하고 증시 자체도 거품이 있다.

중국정부는 향후 선물이나 옵션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육성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 등의 증권사들은 이 분야에 다양한 금융상품과 노하우(know-how)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러나 선진적인 상품들이 모두 중국의 상황에 맞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선물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5. 법적 문제점

(1) 의 의

중국의 법적 제도는 아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의 법은 대륙법(Civil Law) 중에서도 독일법(German Law)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있어 독일법은 영미법에 비해 변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독일법을 택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중국의 증권법과 파산법에 의해 마련되는 투자자보호 관련 법조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실하거나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독립적이고 강력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에 '법에 의하여 국가들 통치한다'라는 조항이 헌법에 삽입되었지만 법집행의 질은 여전히 낮다. 이론적으로 법의 집행기관은 법원이지만 법원의 법집행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영향력 안에 있어 상당히 약한 독립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법이나 규정 외에도 습, 통지, 공고 및 임시규정 등 보완적 형식의 법률문건이 허다하여 법해석상 이들간에 상충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투자자보호 관련 법규의 미흡과 낮은 법집행의 질은 금융증권의 내재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1991년 1월 1일 중국은 상해와 심천에 증권시장을 설립한지 8년만에 최초의 증권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중앙은행으로부터 신규상장기업 수를 제한받지 않게 되었고 신규발행 주식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였다. 증권법은 상장회사, 증권거래소, 중개인, 증권회사 및 정부감독기관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법은 증권사가 은행,

투신사, 보험사 등 다른 금융기관을 겸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어떠한 투자가 무기적 성격을 갖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재 중국의 외국인증권중개회사는 B주거래 관련 중개업무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수수료 지불의 경우 외국증권회사는 증권거래소의 정식회원이 아닌 중개인이므로 정식회원인 중국증권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증권시장은 시장의 특성상 자금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시키기 때문에,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장기신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은행중심 금융제도에서는 한편으로는 국가소유의 금융기관이 국가의 암묵적 예금보장을 바탕으로 저축을 동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당국이 전략산업(특히, 중공업부문) 육성을 위해 차별적인 신용배분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중국 국유기업의 상당수는 정책성부담으로 인하여 적자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¹³¹⁾ 이에 따라 중국의 국유기업은 정부의 정책 지원을 필요로 하며, 직접적인 지원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금리규제 및 신용할당으로 나타나는 금융억압이다. 은행중심제도는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유일한 제도이다.

중국의 은행중심 금융제도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증권시장 구축에 필요한 고정비용이다. 증권시장의 발전은 원활한 유통시장과 더불어 투명한 회계표준 및 법적 집행과 같은 시장 하부구조를 요구한다. 낮은 거래비용으로 증권의 소유권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유통시장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유동성 위험을 제거하여 비유동적인 고수익 투자로의 자금이전을 촉진한다. 또한 법의 성격과 법집행의 질은 금융증권의 실제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¹³²⁾

만약 투자자보호에 관한 법조항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법의 집행이 강력하게 행사되면, 금융증권의 내재가치는 높아져 투자자의 금융증

131) 국유기업의 정책성부담은 기업 자체의 잘못이기보다는 국가의 발전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부담이다. 정책성부담은 과잉고용, 중언원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의 부담 및 생산품 가격의 왜곡 등을 포함한다.

132) www.homeway.com.cn 2003-6-26 周到 (證券日報).

권에 대한 수요가 증대된다. 이는 결국 기업의 외부금융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제도적 여건은 아직 열악하다. 유통 가능한 주식은 총발행주식의 1/3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법집행의 질은 매우 낮다. 기업의 회계제도 역시 부실하다. 이러한 제도적 여건의 부실이 주식시장 미발달의 또 다른 이유이다.¹³³⁾

(2) 1999년 증권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중국자본시장의 발전과 관련한 많은 제도와 법규가 시행되어 왔지만,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1994년의 회사법과 1999년의 증권법 시행이다. 회사법은 법인격을 가진 기업이라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 법규이다. 회사법에서는 기업을 유한회사, 국유독자회사 및 주식회사로 나누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의 공개발행 및 상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사채에 관한 규정도 있어 기업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있다.

중국의 증권법은 서구 선진국의 증권법에 비해 증권시장의 제도적 여건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증권법 제2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유가증권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주식, 회사채 및 국무원이 인정하는 기타 증권(예를 들어, 뮤추얼펀드 수익증권)만이 증권법의 적용대상이다. 국채는 별도로 제정된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금융채와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은 국무원이 지정한 증권에 속하지 않음에 따라 증권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999년 7월부터 시행된 증권법(1998년 12월 제정)은 1993년 제1차 초안이 나온 지 6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 탄생한 것으로 그만큼 중국 정부가 증권법 시행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유기업의 개혁이 마무리되지 아니하였고 공유제가 경제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법은 자본주의 시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법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증권법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의 증권관련 법규와 다소 차이가 있다. 중국 증권법의 규정에 따른

133) *Ibid.*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가증권의 범위가 다르다. 중국 증권법에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중국 내에서 발행, 유통되는 주식, 사채 및 국무원이 인정하는 기타 채권을 말한다¹³⁴⁾. 따라서 금융채, 상업어음(commercial paper), 국채, 해외에서 발행된 국채 및 기타 채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신용거래 및 선물거래의 금지이다. 현재 중국 증권법상 증권거래는 모두 현물거래이며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자금을 융자하거나 대주주를 통하여 증권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¹³⁵⁾. 이는 증권시장이 무기화되는 것을 막고 위협회피 및 시장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셋째, 증권회사의 분류기준이 다르다. 정부는 증권회사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증권회사를 종합증권회사와 중개증권회사로 분류하고 있다. 종합증권회사는 자본금은 4억 위원이상이며 중개증권회사는 5,000만위엔 이상이다. 이외에도 증권법에서는 주식 및 사채 발행시 기존의 허가제에서 심사인증제로¹³⁶⁾ 바꾸어 일정한 자격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개입의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증권법 제31조는 법률이 정한 제한된 기간 내에는 증권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주식거래의 경우 신규공모가로 구입된 법인주 및 해외법인주와 사내종업원주의 매각을 위한 유예기간에 적용된다.

증권거래는 현물거래에 국한되며(제35조), 증권회사는 고객을 상대로 용자 또는 증권융통방식의 증권거래에 종사하지 못한다(제36조). 따라서 공매도(short selling)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제79조는 소유주식의 증감 변화에 대한 보고 및 공시의무 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투자자가 증권거래소에서의 주식거래를 통하여 1개의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를 소유하게 되었을 경우 그 투자자는 발생일로부터 3일 내에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 서면보고를 제출하고 해당 상장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업은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소유비율

134) 증권법 제2조.

135) 증권법 제3조, 제36조.

136) 陳鈺, "析證券發行審核制度的二元結構", 法學雜誌, 2001年 第1期(總第124期), pp.37-38.

이 매 5% 증가 또는 감소할 때마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국의 증권법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두 부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종합 증권회사이며 다른 하나는 중개증권회사이다. 종합증권회사의 업무영역은 증권 중개업무, 증권 자사경영업무, 증권 수탁매출업무 및 국무원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타 증권업무로 되어 있다(제129조). 반면에 중개증권회사의 업무영역은 증권 중개업무에 국한된다(제130조). 설립요건으로서 종합증권회사의 등록자본은 최저 인민폐 5억 원이다(제121조). 중개증권회사의 최저 등록자본은 인민폐 5,000만 원이다(제122조).

(3) 증권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도의 미비

첫째, 증권시장 관련 법규의 미비를 지적할 수 있다. 건전한 법률 시스템이 증권시장 규범적인 운영의 기초이며, 선진국 증권시장은 증권 매매, 무자가 보호, 기업 상장 및 퇴출 관련 법규를 완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1998년 12월에 처음으로 《證券法》을 제정하였으며 《會計法》, 《公司法》 등 증권시장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국제 관례와 국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증권시장 관련 법규의 미비는 중국의 시장 개방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규간의 충돌, 중복 등은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제한하는 동시에 증권시장 감독 시스템 정착을 저해하고 있다.¹³⁷⁾

둘째,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재산권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중국에는 유봉이 불가능한 국유주 및 법인주가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중국에서 정부나 법인은 기업의 경영 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증권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의 “내부자 거래”를 심화시키고 투자자들의 단기적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셋째, 증권 감독 기능의 불완전성을 지적할 수 있다. WTO 규정에 따르면, 투명성 제고, 즉 정보 공개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는 상장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 모두에 해당된다. 이는 증권 감독 시스템 전진성과

137) 劉文華(主編), *op.cit.*, p.223.

관련이 있는 바,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등 불법적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¹³⁸⁾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경고, 벌금, 불법소득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위법행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¹³⁹⁾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증권법>에서는 내부자거래(동법 제183조), 주가조작(동법 제184조), 사기행위(동법 제185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위법소득의 몰수 및 그 소득의 1~5배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다.¹⁴⁰⁾

넷째, 중국 증권시장에서 투자가 권익 보호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법원은 증권 관련 분규, 주식 양도 분쟁, 주식 매매 사기 사건 등 관련 관례를 정리하고 있지만, 증권시장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어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일부 증권회사들이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심하게 훼손시키거나 신용 관계를 왜곡, 전체시장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¹⁴¹⁾

그러나 민사상 손해 배상 제도가 불완전하여 투자자들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¹⁴²⁾ 이는 시장 개방이후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중국 금융시장의 감독 메카니즘 불완전으로 인해 증권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배상제도의 보완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¹⁴³⁾ 다섯째, 감독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감독기관에는 증권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 중국은행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감독기관들의 규칙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각 성(省), 시, 자치구에 증권감독 기관이 있는데, 이들은 지방 정부의 간섭을

138) 楊林, "中國證券法反詐欺規則分析", 法學雜誌, 2001年 第5期(總第128期), p.34.

139) www.homeway.com.cn 2003-6-26 周到 《證券日報》.

140) 陳甦, *op.cit.*

141) 薛峰, "證券法中民事責任的設定方式研究",...中國法學 2003 第1期(總第111期), pp.98-99.

142) 鄭坤山, "試論證券民事賠償制度的建立與完善",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1569.

143) 薛峰, *op.cit.*

받고 있다. 각 금융 관리부문을 증권감독위원회의 부속기구로 하여 지방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¹⁴⁴⁾

(4) 국가법과 지방법간 및 지방법간의 충돌

모든 상장회사, 투자자 및 시장증개상의 관점에서 볼 때 A주 시장은 이미 전국적인 시장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B주시장은 여전히 지방성 시장일뿐이다. 이것은 상장회사가 오랫동안 심천과 심양 현지에서만 한정되어 있고 B주 발행과 거래가 지방정부와 지방인민정부와 지방인민은행 법규의 구속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996년초 증권위원회가 B주 관련 전국성 법규를 제정하였으나 B주의 발행과정에서는 여전히 지방성법규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거래소의 동일한 종류의 주식(모두 보통주)이 각기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중국밖 투자자들로 하여금 B주 투자는 국제투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전국성법규가 아니라 지방성법규가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혼란을 초래하게 한다. 만약 지방성법규와 전국성법규가 불일치하는 경우 어느 법규가 우선하는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¹⁴⁵⁾ 이는 주식시장의 규칙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해와 심천거래소의 규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은 고도로 발전된 시장이며 매우 민감한 시장이므로 규칙이 통일되어야 한다.

IV. 향후 증권시장의 전망과 과제

1. 증권시장 개방의 전망

증권과 관련하여서는 중국의 WTO가입협상 합의사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WTO가입이후 증권시장의 개방은 일단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외국계 증권사의 중국 진출에 대해 지리적 제한, 수적 제한, 지분제한 및 업무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 외국 증권사에 대해

144) 劉文華(主編), *op.cit.*, p.223.

145) *Ibid.*, p.227.

B주의 거래 및 발행, 해외시장에서의 채권과 주식 발행 업무만을 허용하고 자산관리 업무의 참여는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과 업체수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게 되고 중국 당국의 지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의한 합작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과의 WTO가입협상에 의하면 WTO가입 3년이내에 외국인이 33%까지의 소수지분이 허용되는 합작 증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합작현지 범인에 대해 A주(중국인 전용 주식)의 인수, B주(외국인 전용 주식)와 H주(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 주식)의 거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국 중개기구를 정유하지 않고 A株, B株, 국제, 사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WTO 가입즉시 펀드 매니지먼트(증권투자기금관리) 합자기업은 외자소수지분 33%이하로 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업무에 있어서는 중국내에서의 외화표시증권(주식, 채권)의 인수 및 매매업무를 허용하고 WTO 3년후에는 그러한 합자기업에서 외자지분 49%까지 허용한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2002년과 2003년 이미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¹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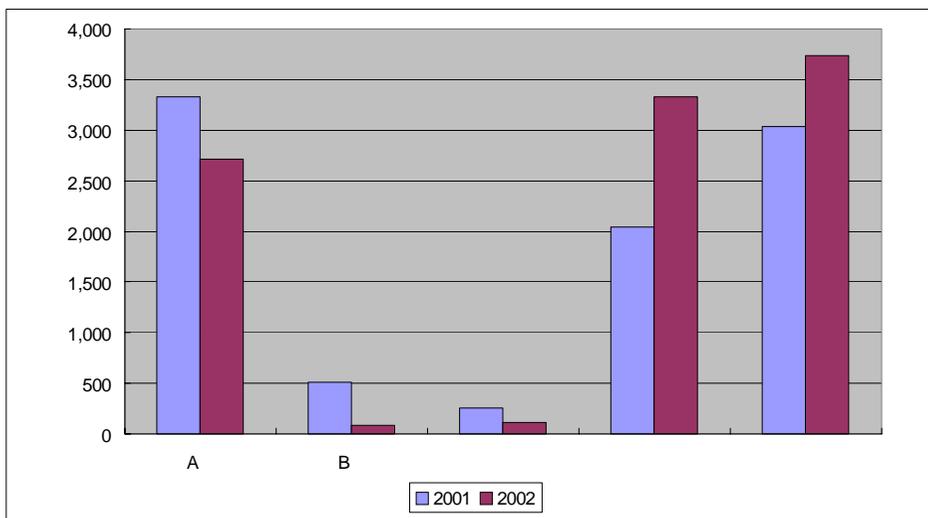
또한,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외국계증권회사들은 소매투자자의 자격으로 합작 증권회사와 합작 펀드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중국내 증권시장의 인수, 중개업무 및 기금 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국 전체 주식의 70%가 국유기업 주식으로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데 비거래 주식에 대한 제한이 해제될 경우 거래 대상이 3배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런 주식의 유동화 노력은 WTO 가입이후에도 가속화될 것이다.

특히 중국정부는 향후 5-10년내에 증권시장의 완전한 시장화를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증권시장의 국제화와 규범화 등 일련의 개혁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주식발행 제도의 개혁, 사이버 교역추진, 제2증시 설립, 기관투자가 육성, 금융기관의 상장 지원 등 5대 개혁조치를 확정하고, 1)증시의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2-3년내에 현재 내국인과 외국인 전용주식으로 구분되는 A주와 B주를 통합하며 2)미국의 나스닥과 같은 벤처기업

146) www.homeway.com.cn 2003-6-26 周到 (證券日報) .

및 첨단기술수 중심의 제2주식시장을 심천에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그 밖에도 중국증권시장의 신주발행은 심사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적 요인으로 큰 결함이 존재하고 있는 바, 일부 경영실적이 양호하지 아니한 국유기업이 포장되어 그럴 듯 하게 상장되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일부 전망 있는 기업들의 발전까지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중국증권거래체널은 단일한 것이므로 중국의 장외거래시장은 기본적으로 아직 공백상태이며 따라서 그 설립과 발전이 시급한 상태이다.¹⁴⁷⁾

〈그림〉 2001년 및 2002년 중국 자본시장의 거래 규모 추이



2. 시장구조의 변화

(1) 주식시장의 통합

1) A주식과 B주식의 통합

중국 주식시장의 통일은 주식 형태의 통합과 지역적 통합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다. 먼저 주식형태의 통합은 A주식과 B주식의 통합이다. 중

147) Ibid.

국의 주식 종류는 소유형태에 따라 1)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보유한 국가주, 2)국유기업이 보유한 법인주, 3)해당 기업의 종업원, 일반개인 및 투자펀드가 보유한 개인주, 4)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외자주의 4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중 국가주는 유통이 불가능하며 법인주는 법인간에만 유통이 가능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통되는 주식은 개인주와 외자주라고 할 수 있으며 전자들 A주, 후자들 B주라고 부른다. 그리고 중국기업이 해외주식시장에서 직상장하는 경우 발행장소에 따라 홍콩거래소에서 상장되면 H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 N주,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 L주,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 J주로 부르고 있다.¹⁴⁸⁾ B주와 N주 및 H주의 관계는 중국 증권시장 국제화와 관련된 전략적 문제이기도 하며 아직 중국의 증권관련 기관의 태도가 불명확하다. B주 시장은 규모가 작아서 외자의 흡입력이 부족하며 불과 얼마 전까지도 A주 시장은 외자의 진입마저도 허용되지 않아 때문에 국제자본의 유입 자체가 상당한 정도까지 배제되어 있었다.¹⁴⁹⁾ 1993년 국유기업이 계속하여 국외에서의 자금 조달을 개시한 이후부터 H주, N주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B주에 비교해 볼 때 H주와 N주가 훨씬 더 거래가 활발하며 투자자의 투자도 훨씬 편리하며 발전전망도 양호하고 시장규모도 대단히 크다. 중국밖에 상장된 후 감독관리방식도 완비되어 있다.¹⁵⁰⁾

중국정부는 주식제의 시행에 따른 외국기업의 중국기업에 대한 지분확대와 이를 통한 경영권 확보의 우려를 없애기 위하여 동일한 기업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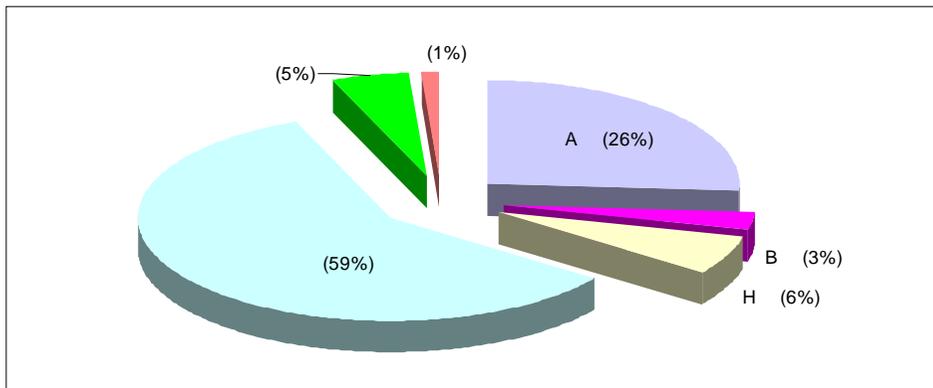
148) B주와 N주 및 H주의 관계는 중국 증권시장 국제화와 관련된 전략적 문제이기도 하며 아직 중국의 증권관련 기관의 태도가 불명확하다. B주 시장은 규모가 작아서 외자의 흡입력이 부족하며 불과 얼마전까지도 A주시장은 외자의 진입마저도 허용되지 않아 때문에 국제자본의 유입 자체가 상당한 정도까지 배제되어 있었다.

149) 殷武, "目前我國《證券法》存在的主要問題及修改建議",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2030.

150) 이제 막 활성화된 B주시장이 아직 많은 대형기업에 용자할 만한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유기업을 외국에서 상장하는 것은 중국경제전선을 위하여 시간과 금전을 얻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다. 중국밖의 상장은 중국증권국제화에 대해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 본질면에서 말한다면 중국밖 상장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제화는 아니며 B주 시장에 주는 충격도 대단히 커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B주 시장의 발전을 지연 또는 억제하는 작용도 한다.

식을 A주와 B주로 구분하여 유통시켰다. 그러나 당초 판단과는 달리 외국인투자자들은 중국기업에 대한 주식투자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 투자절차의 복잡함, 중국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공시제도의 미미 등 중국 주식시장이 갖는 문제점이 있다.¹⁵¹⁾

2002년 중국 주식 구성 비율



더욱이 하나의 회사에 대해 두 개의 주식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현재, 동일기업임에도 불구하고 A주에 보다 B주에 대한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중국은 그에 따라 B주 거래시의 인지세를 인하하고 비국유기업도 조건만 허용한다면 B주를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B주 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A주와 B주의 구분이 오히려 중국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A주와 B주의 통합방안이 검토되고 있다.¹⁵²⁾ 현재 상하이 A주식시장은 인민폐로, B주식시

151) 陳青東, 村尾龍雄, “中國における外商投資企業の上場に関する法制度および最近の政策動向”, (上), 國際商事法務, Vol. 30, No. 3(2002), pp. 328-329.

152) 이원적인 구조로 되어있는 중국의 주식시장은 국제적인 투기성 자본(Speculative Money)의 공격을 방지하고 주식시장의 안정을 확보하여 내국인 자금 조달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투자 제한은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A주식시장과 B주식시장을 통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은 달려로 거래되고 있으나, 두 시장이 통합될 경우 모두 인민폐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합시기는 WTO 가입이후 중국 위엔화의 자유로운 환전이 허용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¹⁵³⁾

2) 지역적 통합

지역적 통합이라 함은 현재 중국의 증권시장은 상해와 심천 증권거래소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바, 이들 증권거래소를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양 증권거래소가 어떤 특성에 따라 상장요건을 달리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지역별로 분리되어 있어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어느 한 곳에 신청을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주식시장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상해와 심천을 분리하여 별개로 조사하여야 한다. 두 시장이 별개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감독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자들도 서로 분산될 수밖에 없는 등 혼돈을 주기도 한다.

중국 정부가 상해를 중국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는 한편, 심천의 경우 홍콩과 인접해 있음을 이유로 홍콩 금융과 연계발전시키기 위하여 상해와 별도의 주식시장을 설립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금융의 전산화만 이루어진다면 증권거래소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상장기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전산망을 통하여 거래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2의 주식시장 개설

현재 중국 정부는 하이테크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상해 및 심천 증권거래소내에 별도의 주식시장을 창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즉 미국의 나스닥이나 우리 나라의 코스닥과 비슷한 차스닥(CHASDAQ)을 설립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상용화되지 못하는 벤처기업을 상대로 기존 거래소에 비해 상장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상장시킴으로써 직접 금융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로 상장 및 증자발행 조건완화, 신주인수권 발행허용, 하이테크 인증기업이 기존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 기

153) www.homeway.com.cn 2003-6-26 周到 (證券日報) .

준 상장기업의 업종전환 조건의 완화 등의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3) 국유주 거래의 단계적 허용

국유주는 중국이 소유권 구조에 관한 갈등을 해결하고 국유자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유주는 비중이 높은 대신, 유동을 제한하고 있어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고 있다. 현재 중국 주식유통시장의 커다란 문제점중의 하나는 발행주식수에 비해 유통주식 비율이 35%에 불과하다. 즉 국유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상장된다 하더라도 발행주식이 모두 유통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소유주와 법인소유주는 유통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중국이 국유주와 법인주에 대한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회주의 근간인 공유제 유지차원에서 국유기업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¹⁵⁴⁾

주식은 주가의 변동에 따라 자유로운 매매가 이루어져야 주식시장에서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소유권 구조가 불명확하여 재정부, 국유자산 관리공사, 국유지주회사 등이 모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처럼 주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지나치게 많아 현실적으로 국유주의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리고 높은 국유주 비중은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국유기업 축소 및 민영기업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국유주를 시장에 매각, 유통 비중을 제고할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간내에 달성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¹⁵⁵⁾

최근 중국정부는 늘어나는 정부 재정적자를 국제발행에만 의존하여 왔으나 이로 인하여 재정적자의 국제발행의존도가 크게 높아지자 그 대안으로 국유주 매각을 도모하여왔다. 국유주 매각을 통하여 국제의 재정의존도를 낮추고 국유기업의 경영에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국유주 매각의 전면 허용은 대량의 물량이 일시에 시장에 출현하여 수급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분 매각과 같은 점진적인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⁵⁶⁾

154) 劉文章(主編), op.cit., p.229.

155) 殷武, "目前我國《證券法》存在的主要問題及修改建議",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2030.

156) www.homeway.com.cn 2003-6-26 周到 《證券日報》.

(4) 증권사간의 협력강화

향후 국내 증권사와 외국 증권사와의 합자 내지 합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은행산업은 4대 국유상업은행 등 독과점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증권산업의 경우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한 증권사가 없다. 이는 외국 증권사와 중국 증권사간의 M&A를 진행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향후 국내외 증권사간의 M&A를 통해 증권사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의 대형화는 정보수집비용 절감, 금융서비스 다양화 등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증권사간의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생존하고 있는 지방의 증권사도 지역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타 지역 또는 외국 증권사와의 협력을 모색할 할 것으로 보인다.¹⁵⁷⁾

중국의 증권법에서는 상장기업을 매수하는 경우의 조건, 원칙 및 수속에 대하여 원칙적인 규정을 두었다. 상무부와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2001년 11월 공동으로 《외상투자에 관한 상장기업의 문제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공포했다.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의 A주와 B주의 발행을 인정하고, 외상투자기업이 상장기업의 비유봉주 양도에 대한 인정을 규정하였다. 2002년 4월 4일,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의 주주모집 설명서의 내용과 양식에 대한 특별규정》을 공포·실시하고 있다. 외자를 받기인으로 하는 상장기업의 모집설립은 이미 실제로 실행 가능한 단계에 들어갔다. 2002년 6월,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외자의 자본참가에 의한 기금관리회사 설립규칙》과 《외자의 자본참가에 의한 기금관리회사 설립규칙》을 공포했다. 이 두 가지 규칙의 공포와 실시는 이미 중국은 금융업계의 대외개방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⁵⁸⁾

2002년 11월 5일, 중국증권감독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은 공동으로 《합격한 국외 기관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관리 잠정규정》을 공포하여,

157) 駱武, 「目前我國《證券法》存在的主要問題及修改建議」,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2030.

158) 陳青東, 村尾龍雄, *op.cit.*, p.330.

증권거래시장의 증권거래를 통해 M&A를 하는 국외투자자의 조건과 투자수속에 대해 규정하였다. 2002년 11월 1일,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재정부, 국가상무위는 공동으로 《외상에 대한 상장기업주식 국유주와 법인주의 양도에 관한 문제에 대한 봉지》를 공포·시행하여, 중국의 상장회사를 매수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단지, 이러한 법령이 시행된 후, 외국투자자가 상장회사를 매수한 예는 아직 없다. 금후 실제 운용이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가 주목된다. 국유기업의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사영기업의 상장회사와 외상투자기업의 상장회사도 있는데 이 규정은 상장회사 전반에 대해 적용된다.

외국투자자가 실제로 상장회사를 매수하는 경우에 다음 세 가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매수된 상장회사는 외자비율에 관계없이 외상투자기업의 우대조치 예컨대, 소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두 번째로 국유주·법인주를 양수하는 외국투자자의 자격 판단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 심사·인가에서 투명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셋째로 외국투자자는 상장회사를 매수한 후, 12개월간은 양수한 국유주·법인주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제정과 개정을 통하여 M&A에 관한 법령들이 점차 개선되어 외국투자자가 M&A를 통해 자본시장 참여에 대한 법률체제도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 중국 자본시장은 보다 한층 대외개방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미 실행 가능한 단계에 돌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¹⁵⁹⁾

제 3 절 보험법 부문의 법제개혁

I. 보험업 분야의 발전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한 이후 1980년부터 〈중국人民保險公司〉를 설립하여 상업성 보험을 취급하여 왔으며, 1988년에는 심천에 〈중국平安保險公司〉가 최초의 주식회사 형태로 탄생하였다. 1992년에는 미국 AIG社가 외국보험회사 중 처음으로 상해에서 영업을 시작함으

159) www.homeway.com.cn 2003-6-26 周到 《證券日報》.

로써 외국보험공사의 진출이 시작되었다. 1995년 3월에는 〈보험법〉, 〈인민은행법〉, 〈상업은행법〉, 〈어음법〉 등의 금융 4법과 〈담보법〉, 〈금융질서교란 처벌규정〉을 발표하여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은행, 보험, 증권 등의 금융기관 감독권을 부여하였다.¹⁶⁰⁾

1998년 11월에는 WTO가입 이후 보험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감독기능을 인민은행에서 분리하여, 국무원 산하의 독립기관인 〈보험관리감독위원회〉로 독립하였다. 1999년에는 〈중국인민보험공사〉를 〈중국인민보험공사〉, 〈중국인壽보험공사〉, 〈중국재보험공사〉로 분리하였다.

중국의 보험회사들은 WTO가입으로 보험시장이 개방되고 중국내에서 경쟁격화에 대비하여 해외 또는 중국 증시에 자사의 주식을 상장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중국내 영업망을 확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수보험공사, 중국태평양보험공사, 대중보험공사등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중국 보험시장의 국제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첫째 미국 등 선진국의 보험회사가 중국 보험사의 지분확보를 통하여 중국 시장진출을 가속화 할 것이며 둘째 중국계 보험회사가 외국계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은행 및 증권회사들과 제휴관계를 강화하여 국외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 12월 11일 WTO에 가입한 후 2001년 12월 15일 〈금융기구 해산 조례〉 및 2002년 2월 1일 〈외자 보험공사 관리 조례〉를 공포하였다.

II. 중국 보험시장현황과 문제점

1. 1사 보험업 독점

은행업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중국보험업의 현상황은 문제점이 훨씬 더 많다. 먼저 보험시장의 독점이 커서 재산보험공사, 생명보험공사 및 재보험공사를 보유한 중국인민보험공사(집단)의 시장 점유율이 70%이상이며 그 밖의 8개 회사가 30%를 점하고 있다. 2, 3위에 있

160) 이외에도 인민은행에 ①화폐신용정책 수립, ②환율 운용 및 관리, ③예·대 금리의 결정, ④지급 준비율, 제한인율,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화폐 조절 수단 도입, ⑤인민에 발행 및 관리 권한도 부여하였다.

는 태평양보험공사와 평안보험공사의 시장점유율은 15%이며 국내보험시장의 경쟁메커니즘은 아직 발휘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1회사 독점 국면의 형성은 심각한 역사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대 시장경쟁의 원칙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보험업은 시장경쟁메커니즘의 완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다음, 보험업관리질서가 대단히 혼란스럽다. 관련 법규에서 중국인민은행이 중국보험업 관리기관임을 명확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여전히 많은 국가기관이 보험업에 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한 보험관리기관의 권위성 결여는 보험업 관리에 대한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보험업계의 법규위반 조치가 비교적 빈번하고 피보험인의 이익에 대한 보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관련 보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보험업계 직원들의 소양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보험업의 종사인원 - 관리인원은 업무인원이든 간에- 소양은 국제경쟁력을 구비하는데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보험대리인제도와 중개제도도 완전하게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¹⁶¹⁾

2. 지나친 규제주의

(1) 의 의

중국에서는 보험업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 선진국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나친 규제가 없으며 투자액 분야의 한도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중국의 보험회사는 투자방향의 약속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투자금액 제한을 받고 있다. 이것은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을 크게 속박하게 된다. 한편, 보험감독체계 및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감독체계

중국의 보험감독업무는 1998년 11월 18일 국무원 산하에 설치된 보험감독위원회가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종전에는 중국인민은행이 보

161) 餘文娟, "論中國保險市場監管的完善",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991.

험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국무원의 금융감독분리정책에 의하여 보험감독위원회가 보험감독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의 금융감독 기관으로는 보험감독위원회이외에 인민은행, 증권관리위원회가 있으며 인민은행은 은행·비은행(무선 포함)을, 증권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를 감독하고 있다.¹⁶²⁾

보험업 관련 법체제는 1995년 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정비되기 시작하였으며 보험감독위원회는 설치이후 본격적으로 관련법과 규정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보험법은 보험계약 및 보험업 감독 관련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2000년에 개정된 보험회사관리규정은 보험회사 경영전반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모집, 자산운용, 외국보험회사 등 각부분별 법률 또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¹⁶³⁾

보험업에 대해서는 보험법 이외에도 해상법, 계약법, 회사법, 민법등에도 관련 규정들이 있으며 그 밖의 관련 법규로는 보험회사관리규정, 보험기구임원자격관리규정, 보험감독관리보고관련규정, 보험회사정산규정, 보험대리점관리규정, 보험중개인관리규정, 보험회사사채투자규정, 보험회사주식4투자기금관리잠정조치, 보험기관자산관리조례, 보험회사지분투자관련규정, 외국보험기구주재대표관련규정, 상해외자보험기구조례등이 있다.

(3) 주요 규제내용

1) 회사설립 규제

보험업은 보험회사 형태를 원칙적으로 국유독자회사(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100%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및 유한책임회사(영어로는 joint stock limited companies로서 5인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말한다)로 제한하고 있다(보험법 제69조). 그러나 기타 성격의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법 제150조), 외국보험사업자의 지점 및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중국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재산보험(손해보험)과 인신보험(생명보험)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162) 杜穎, “中國保險業的監督與管理”, 法學雜誌, 2002年 第5期(總第134期), p.30.

163) 繆劍文·羅培新, *op.cit.*, p.167.

(법 제91조), 인신보험의 범주에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및 이의 재보험이 포함된다.

한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업금지원칙에 따라 1999년 중국인민보험공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이를 3개의 보험회사(중국재산보험, 중국인수보험, 중국재보험)로 분리하였으며 평안보험공사, 태평양보험공사 등 기존의 다른 겸업회사도 현재 분리추진중이다. 보험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 인적구성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보험감독위원회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저 자본금은 전국보험회사가 5억 위엔, 지역보험회사가 2억 위엔이다. 지점은 별도의 법인체로 간주되어 보험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지점(분공사, 지공사, 영업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점 설립시, 추가자본이 필요하다. 다만, 전국보험회사는 3개의 분공사를 지역보험회사는 2개의 분공사까지 추가자본금 없이 설치가능하다. 그리고 생명보험의 경우 전국보험회사는 제리인 3인이상, 지역보험회사는 1인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자본금 등의 요건이외에도 경제적 수요심사(ENT) 등이 추가되어 인가과정이 불투명한데, 보험회사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설립은 중국보험시장과 금융체계의 안정에 유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¹⁶⁴⁾

보험감독위원회는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 6개월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며, 기한내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인가불허로 간주된다. 인가후 6개월내에 설립을 완료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인가조치는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며(준비기간은 보험감독위원회 승인에 의하여 6개월 연장가능), 인가 거부시 1년내에는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불가능하다.

2) 상품과 요율의 규제

주요보험종목에 대해서는 보험감독위원회가 기본보험약관과 보험요율을 정하며(보험법 제106조, 보험회사 관리규정 제67조), 주요 보험종목의 범위도 보험감독위원회가 정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주요 보험종목이외의 보험종목의 약관 및 요율은 보험회사가 보험감독위

164) 杜穎, *op.cit.*, p.31.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보고후 30일 경과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보험감독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고한 보험약관 및 요율에 대하여 사용 정지 또는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법률 등을 위반하였거나 국가정책에의 위배
- 사회공공이익에의 위배
- 내용의 불공평 또는 가격독점,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보험인수자 권익의 침해
- 보험요율이 원가보다 낮아 공점경쟁을 침해
- 약관설계 또는 예정기초율 설정과정에서 보험사의 보상능력 위협
- 기타 보험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

3) 보험영업규제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보험업무허가증에 명시된 지역에서만 영업가능한다. 1) 2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대형프로젝트, 인공위성 등 특수 물건에 공동보험으로 참여하고 1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보험목적물 소재지에서 인가를 받은 경우, 2) 재산보험 보험금액 총액이 5억위안을 초과하거나 보험료 총액이 100만위안을 초과하는 대형민영회사,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3) 중점 프로젝트 건설의 경우에는 투자법인 소재지의 보험회사가 master policy(단체보험의 주증권) 방식(원래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보험가입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보험증권 또는 단체보험에서 고용주에 발행된 보험증권을 의미하며 여기에서는 본점 소재지에서 보험증권으로 타 지역의 재산까지 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으로 타 지역의 관련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4) 보험계약자 및 주요 보험목적물(보험금액의 50%이상) 소재지에 있는 보험회사가 master policy 방식으로 타 지역의 관련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보험회사는 보험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보험대리점 또는 중개인에 보험모집을 위탁할 수 없으며, 부당해지 권유, 부당이익 제공, 규

정을 초과하는 모집수수료의 지급, 판매홍보자료에 장래이익표시 등도 금지되어 있다.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인은 보험대리(중개)업무 허가증 취득 및 등기후 영업허가증을 수령하고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영업이 가능하다.

보험대리인은 보험회사에서 부여한 권한에 근거하여 보험업무 처리를 대행하며 그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 대리점은 전업대리점, 부업대리점, 개인대리점으로 구분되도 설립요건, 영업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전업대리점은 회사형태로 자본금 50만위엔 이상, 유자격 대리인 30인 이상 등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부업대리점은 본업과 관련된 보험종목에 대해서만 영업이 가능하고 개인대리점은 기업의 재산 관련 보험, 단체인보험의 영업을 금지되고 다른 직업 종사도 금지되어 있다.

또한 생명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중개인 자신의 과실로 보험계약자등에 손해를 미친 경우 중개인이 배상책임의무를 진다. 보험중개인은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영업만 가능하며 개인 자격으로 보험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보험중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납입자본금 1,000만위엔 이상, 피용인 30인 이상(50% 이상이 중개인 자격중 소지자)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외국 보험중개회사가 중국내에서 중개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4) 자산운용규제

보험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한 자본금, 법정적립금, 책임준비금은 반드시 중국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자산운용 대상은 은행예금, 국채, 금융채, 보험감독위원회가 정한 중앙 기업채권, 국무원이 정한 기타 운영자금방식으로 제한되며, 1999년 10월 29일부터 <보험회사의 주식투자기금을 통한 투자의 관리에 관한 잠정조치>가 발효되면서, 보험회사의 주식간접투자가 가능하게졌다. 현재 투자가능 자산 총액의 30% 이내에서 주식투자펀드를 통하여 투자할 수 있다.

5) 건전성 규제

보험회사는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 예치, 책임준비금 적립, 위험에 대한 노출제한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회사설립후 등록자본(납입자본금)의 20%를 보증금으로 보호 감독위원회가 지정한 은행에 예치하며 그 용도가 청산시 채무정산으로 제한된다. 생명보험회사는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을, 손해보험회사는 지급준비금, IBNR(당해년도 실제보상지출의 4%이내) 등을 적립하여야 하고 책임준비금외에 국가재무회계제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법정적립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법정적립금은 결손보전 또는 자본금 증액 등으로 사용가능하며, 자본금 증액에 사용될 경우 자본금 편입이후 적립금 잔액이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손해보험회사는 보유보험료가 실제자본금 및 법정 적립금의 4배 이내로 제한되며, 보험회사의 사고 1건당 책임한도가 실제자본금 및 법정 적립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반드시 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퇴출 규제

보험회사는 자체해산결정(보험감독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법규위반 등에 따른 보험감독위원회의 정리 결정, 인민법원의 파산결정으로 청산이 가능하며, 생명보험회사는 분립·합병이외의 사유로 해산 결정이 불가능하다. 생명보험회사가 청산될 경우에는 계약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전합의가 없을 경우 보험감독위원회가 이전받을 보험회사를 지정하며 생명보험 계약이전시 보호감독위원회는 예정이율을 조정할 수 있다. 파산재산은 파산비용을 우선 지출한 후 1)채불임금, 근로자보험비용, 2)보험금, 3)연체된 세금, 4)회사채무의 순으로 변제된다.¹⁶⁵⁾

7) 재보험 관련 규제

보험회사가 재보험 가입시 중국내 보험회사에 우선 출재하여야 하며, 보험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외국보험회사에 대한 출·수재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을 인수할 때마다 보험금액의

165) 시장퇴출제도를 통한 증권감독강화 주장에 대해서는 關秀華, "健全退市制度, 加強證券監管", 法學雜誌, 2002年 第5期(總第134期), p.36참조.

20%를 보호감독위원회가 지정한 보험회사에 출제하여야 한다.

3. 외국인 보험회사 관련규제와 시장 개방 현황

(1) 규제와 시장개방

중국의 보험산업은 은행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방수준이 낮으며 개방속도도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WTO 가입 전 외국 보험회사의 영업인가 전제조건은 '1국 1업종 1사' 원칙에 따라 외국보험사의 중국 진출을 상당부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왔고, 영업지역도 상해, 광주로 제한하였으며, 본사의 영업경력이 30년 이상이고, 자산규모가 US\$50억 이상인 보험회사에 한하여 영업인가를 하였으며, 또한 중국 내에서 주재 사무실(지역제한 없음)을 2년이상 운영한 회사에 국한하여 왔다.

중국이 보험시장 개방속도를 낮추고 있는 주된 이유는 아직까지 중국 보험회사들이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1992년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한 上海외자보험회사조례에 의거하여 1992년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시장을 외국기업에 개방하였으나 WTO가입직전까지도 보험 판매지역을 상해, 광주, 천진, 심권, 대련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¹⁶⁶⁾ 중국 보험시장은 1998년까지는 중앙은행에 의하여 관리 감독되고 있다가 이후 보험감독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¹⁶⁷⁾ WTO가입직전까지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¹⁶⁸⁾

첫째 외자계 기업에 대한 재산보험 및 관련 책임보험, 외국인 및 중국내 개인이 보험을 납부하는 생명보험, 그러한 업무와 관련된 재보험 업무로

166) 외국계 보험회사의 설립 주이를 보면 1992년 미국 AIG 산하의 보험회사 AIA가 최초로 상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생명보험시장에 진출하였다. 이후 일본, 캐나다 등의 보험회사가 진출하여 1996년말에는 4개의 외국계보험회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시장에서 영업을 하였으며 91개의 보험회사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2000년까지는 10여개 외국계 보험회사가 영업중이었으며 지역 및 업무영역에 엄격한 제한을 받아왔다. 1997년부터는 합자보험회사만 허용(외국인투자보험회사 설립은 극히 제한적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왔으며, 외국계 보험회사는 상하이와 광저우(廣州)에서만 영업 가능하며, 각 도시별로 지정 1개 사의 설립만을 허용하고 있었다.

167) 餘文娟, "論中國保險市場監管的完善",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991.

168) 繆劍文·羅培新, *op.cit.*, p.175.

제한하였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합작회사만 허용하였다. 단체생명보험, 중국 현지기업과 거주자 개인에 대한 재산보험의 취급은 금지되었다.

둘째, 지역제한으로 상해와 광둥에서만 개방을 허용하였다.

셋째, 최저지분율과 관련하여 합작회사 경우 은행과 동일하게 외국인 지분을 25%를 상회하여야 한다.

넷째, 보험업 진출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본사가 30년이상 보험업무를 수행하였고 중국내에서 3년이상 사무소 개설·유지를 하였으며 자산규모가 50억 달러이상이어야 한다.

보증기금의 예치와 관련하여 지점의 경우 생보나 손보 중 한가지 분야에만 영업을 할 경우 400만달러, 두 분야 모두인 경우에는 800만달러를 중앙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섯째, 순이익 적립의무와 관련하여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의 총액이 수권자본금의 2배가 될 때까지 세후 순이익의 25%를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여섯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손보의 경우 판매대상은 외국계기업으로 국한되며 계약·결제 통화로 외화만 허용된다. 또한 외국보험사는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수입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 수입은 중국은행에의 예금, 국제 구매, 금융채 구매, 외화 신탁대출, 주식투자 등에 문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중국 보험시장의 진입장벽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극소수의 외국계 보험사에 대해서만 개방하였으며 자산금액 기준 50억불 이상을 영업자적요건 신청기준으로 하여 중국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의 보험회사중에서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유일하게 진출하여 영업활동 중이며 기타 회사들은 모두 사무소 형태이다. 특히 삼성생명보험이 약 10여년간 중국영업을 위해 공을 들였으나 아직까지 인가 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수익성이 좋은 자동차 보험업무는 외국계의 진입을 앞으로도 불허할 예정이며 지역적으로는 현재 광주, 상해, 심천, 대련, 佛山만 개방상태 향후 3년내 전면개방 예정이다.

한편, WTO 가입직후 새로 제정된 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가 2001년 12월 12일 공포되어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외국보험회사 운용에 있어서 중외 합작회사에 관한 법률 및 규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는데, 합작회사 설립시 반드시 1개 이상이 중국계이어야 하고 외국인 지분의 최대한도는 51%이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 보험회사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설립요건 이외에 별도의 요건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데, 외국보험회사는 보험업 경력 30년 이상, 총자산 50억불 이상, 중국내에서 주재 사무소 2년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손해보험회사는 지점의 설립만 가능하며 생명보험회사는 외자지분 50%이상의 합작회사 설립도 가능하여 중국내 지점의 추가 설립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합작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이 2,4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이 납입자본금의 2배가 될 때까지 세후 수익의 25%를 자본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합작회사는 납입자본금의 20%를, 지점은 400만달러를 보증기금으로 보험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외국보험회사가 영업할 수 있는 지역, 고객 및 상품도 제한되어 있다. 영업가능지역은 상해외자보험회사조례에서는 상해와 광주로 제한되었으나 신조례에서는 중국 보험당국이 인가한 지역으로 수정되었다. 상기의 상해조례 제17조는 외국보험회사는 1)해외기업의 모든 보험,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보험과 관련보험(재보험 포함), 3)감독당국이 허가한 기타 종목에 한하여 영업이 가능하며, 신조례에서 대형기업 물건 및 Master policy가 추가되었다. 주재사무소의 설치는 <외국금융기관의 주재사무관리조례>(96년)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주재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1)금융감독체계가 정비된 국가 소재 금융회사, 2)해당국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3)최근 3년간 이익 실현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중국 보험사 및 외국보험사 진출 현황

보험분야에서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가 중국의 WTO가입 직후인 2001년 12월 13일 외국보험회사의 중국내 설립 및 영업확대를 허용하여 뉴욕생명보험, 메트로폴리탄생명보험, 일본생명보험은 보험영업 허가를 받았고 AIG는 100%소유 지점(北京, 蘇州)의 개설을 허가받았다. ACE-INA는 중국의 기존 보험회사인 후아타이보험(華泰保險)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중국 보험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선 라이프 에버브

라이프 생명보험은 2002년 6월부터 천진(天津)에서 보험영업을 개시하였다. 중국이 이같이 北京, 蘇州, 天津의 보험시장을 외국보험사에 개방한 것은 WTO가입시의 약속이행을 2년간 앞당긴 것이다.

2002년 8월말 현재 중국보험회사는 20개사이며, 외국보험회사는 12개국 34개 회사가 진출해 있으며, 총54개의 영업성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보험사로는 삼성화재가 2000년 10월 영업허가를 취득하여 2001년 4월 상해 포동에서 영업을 개시하고 있다.

중국 보험회사와 외자보험회사 현황(2002.8월말 현재)¹⁶⁹⁾

	중국 보험회사	중외합자기업	외국독자기업
생명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인민생명보험 · 태평양(太平洋)보험 · 신화(新華)생명보험 · 평안(平安)보험 · 화태(華泰)재산보험 · 태평양(太平洋)생명보험 · 태강(泰康)생명보험 · 민생(民生)생명보험 · 동방(東方)생명보험 · 생명(生命)생명보험 · 항안(恒安)생명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평(中平)생명보험(캐나다) · 태평양안태(太平洋安泰) · 생명보험(미국) · 안련대중(安聯大衆) · 생명보험(독일) · 금성(金盛)생명보험(프랑스) · 중보강련(中保康聯)생명보험(호주) · 신성(信誠)생명보험(영국) · 항강원안(恒康天安)생명보험(미국) · 영명광대(永明光大)생명보험(캐나다) · 중의(中意)보험(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A
재산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인민보험 · 태평양(太平洋)보험 · 평안(平安)보험 · 천안(天安)보험 · 대중(大衆)보험 · 영안(永安)보험 · 화안(華安)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안련(獨國安聯)보험 · 독일격녕(獨國格寧)보험 · 스위스 소여세(蘇黎世)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U · 홍콩 민생보험 · 도쿄해상화재보험 · Winterthur · RSA · AFIAC · 삼성화재해상보험 · 삼정(三井)해상화재
재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재보험회사 · 20개사 		

169) 中國保險管理監督委員會.

(3) WTO가입이후의 보험제도 전망

중국 보험시장은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과 노령화 인구의 증가로 양로, 의료보험 등의 생명보험과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실업보험 시장을 중심으로 급성장 추세이다. 이와 같은 보험산업의 성장과 WTO 가입 이후 보험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98.11월 보험감독기능을 인민은행에서 분리, 국무원 산하 독립기관인 보험관리감독위원회로 독립시켰다.¹⁷⁰⁾ 99년 보험시장은 금융위기 여파로 위축되었으나, 2000년부터 경제성장과 개인소득증가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14.5% 증가하는 등 회복추세로 전환하고 2001년과 2002년에는 각 보험사의 투자성보험, 배당보험 등 생명보험 관련 신규상품이 출시되면서 보험시장 규모는 각각 전년대비 32.3%, 44.8% 증가하는 등 급증세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¹⁷¹⁾

중국보험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점중의 하나는 생명보험 가입자의 증대와 늘어나는 보험수수료를 운용할 투자수단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1999년 10월 이전까지만 해도 보험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수수료를 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하거나 국채를 매입하는 것 이외에는 투자가 금지되어 있었다. 1996년이래 중국은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예금 금리를 다섯 차례나 인하하였고 2000년 1월 기준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는 년 2.25%, 여신금리는 년 5.85%로 낮은 수준이다. 결국 중국 보험당국의 제한 조치로 중국 보험사들은 자금을 주로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1998년말 기준으로 중국계 보험사들의 평균 수익률은 2.2%에 불과하였다. 1999년 10월 보험사의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었으나 개별 유망기업의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하지 못하고 증시에 상장된 투자펀드를 구매하는 간접투자만 가능하다.¹⁷²⁾

170) 그 기능에 대해서는 杜穎, *op.cit.*, pp.30-32 참조.

171) 餘文娟, "論中國保險市場監管的完善",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991.

172) 중국 전체 보험시장은 중국 인민보험공사, 중국인수보험공사, 평안보험공사, 태평양보험공사가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생명보험시장에서는 중국인수보험공사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과점체제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규보험회사들은 시장 점유율확대를 위하여 보험수수료 인하를 통하여 고객을 유치하려고 경쟁하고 있는 실

한편,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래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외국보험회사, 보험평가기관, 보험중개업체, 보험대리점과 관련한 4개의 규정을 발표했으나, 이들 규정은 높은 수준의 설립자본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지점설치시에는 어떤 자본요건을 적용하는지 명확하지도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반 서비스 업무를 모두 외국은행에게도 개방하게 되어 가장 커다란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의 경우도 영업지역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외국인보험회사가 지분을 50%까지 가질 수 있도록 개방 폭이 확대될 예정이다. 증권업은 금융위기 발생국가들로부터 교훈을 얻어 개방에 많은 신중을 기하고 있어 단기간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¹⁷³⁾

WTO 가입 합의문안에 따라 각종 개방내용을 법제화 할 것으로 전망되며 점진적 개방원칙에 따라 WTO 가입의정서¹⁷⁴⁾에서 약속한 각종 개방일정을 법제화 할 것으로 보인다. 전전성 규제를 통해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입속도를 컨트롤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보험회사의 보험활동을 규율하고 보험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 《保險法》은 외자주식참여의 보험회사의 설립, 외국보험회사의 중국내 지점설치에 대해서는 동 법을 적용하되 그 밖의 사항에 대해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경우 그러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관련 대외적 수락내용을 이행하고 외자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22일 국무원은 《外商投資保險公司管理條例》를 제정하여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¹⁷⁵⁾ 동 조례는 외상투자보험공사의 설립과登記, 업무의 범위, 영업중지와 청산, 감독관리, 법률책임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례는 향후의 보험시장개방을 촉진하고 외자보험공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정이다.

173) 徐文娟, "論中國保險市場監管的完善",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991.

174) 이에 대해서는 法制日報 2002年 1月 26日 참조.

175) 이에 대해서는 沙銀華, "中國WTO의加盟後外資保險公司에對する新しい法規則-「外資保險會社の管理條例」の構造解明問題點(上)", 『國際商事法務』, Vol.30, No.2(2002), pp.197-199 참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2년 1월 개최한 “전국보험공작회의”에서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보험회사의 투자 및 운영범위 확대 ②보험중개시장의 활성화 ③보험시장 감독강화 ④농촌보험시장의 개발 ⑤보험회사의 서부지역 진출 촉진 ⑥생명 및 재산(손해) 보험의 각종 신종 보험상품개발 ⑦자동차보험의 상품 개발 등의 금년도 정책을 확정할 바 있다.

2002년에는 중국의 WTO 가입과 더불어 <외자보험공사관리조례>(2002. 2.1시행), <보험공사 관리규정 수정에 관한 규정>(2002.3.1 시행), <보험법(수정안)>(2003.1.1 시행) 등을 발표하면서 대외개방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03년 8월에도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관리규정(保險公司管理規定)(수정-의견)>에서 처음으로 자연인의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를 허가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¹⁷⁶⁾, 그밖에 보험감독을 위한 법령 정비도 이루어졌는 바, 중국 보험감독위원회는 <보험대리회사 관리규정> <보험중개회사 관리규정> <보험公佑공사 관리규정>을 2002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하여 보험감독을 강화하고 있다.¹⁷⁷⁾

제 4 절 신탁업 부문

I. 중국에서의 신탁업 발전

현재 중국 신탁업의 발전은 전례없는 위기에 처해있고 각성의 신탁결영은 문제무 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탁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국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신탁법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이 법에 의하면 신탁은 '위탁인은 수탁인에 대한 신뢰에 의거하여 그 재산을 수탁인에게 위탁하고 수탁인은 위탁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수익인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관리를 실시

176) 人民日報, 2003.8.25.

177) 이에 따라 2002년 2월 1일에는 천진, 석가장, 무한, 난창, 심천 등에 보험감독위의 사무실을 설치하였으며, 그후 12개 등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티벳 지역 제외)에 총 31개의 보험감독위 사무실을 설치하여 전국적인 보험 감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는 처분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중국은 이미 신탁업무가 이루어져 왔다. 1979년 10월 중국국제신탁투자회사가 설립되었고 그 뒤를 이어 各省들에 의해서도 지방 신탁투자회사가 설립되었다. 또한, 그 밖의 각종 상업은행들도 신탁투자회사 또는 신탁부를 설립하여 신탁업무를 개시하였다.¹⁷⁸⁾

중국에서 신탁업은 잠시 호황을 맞았지만, 상업은행법과 증권법이 공포됨에 따라 금융업 부문별 분업관리체제는 법에 의해 확립되었고 이에 따라 신탁업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많은 신탁투자기업들이 업무를 축소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나 일부 경영업무를 제때에 전환하지 못한 신탁기업들은 곤경에 빠졌고 결국 부도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였다. 광둥신탁투자회사가 그 예에 속한다. 또한 일부 신탁기업들은 지방재정에 의해 근근히 명맥을 이어가는 실정이다.¹⁷⁹⁾

이러한 상황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즉, 신탁투자회사들은 설립초기부터 신탁 예금, 신탁대출업무에 종사하거나 은행업무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3년 국가의 금융질서정리방침에 따라 대출금의 시한부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대규모 증권업무투자를 개시하면서 증권부를 설립, 증권투자로 이익을 실현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1999년 증권법의 시행과 더불어 엄격한 분업경영으로 중국의 신탁투자기업들은 또 한번의 수난을 당했다. 이들 수입의 대부분이 증권업경영으로 충당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업무에서부터 증권투기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신탁투자회사들은 자신들의 경쟁우위의 업무를 찾아내기보다는 은행 업무부터 증권투자에 이르기까지 업무의 확장만 도모하였던 것이다. 내부관리측면에서 볼 때 많은 신탁투자회사들이 위험부담의식이 없고 맹목적인 확장으로 투자실패를 초래하였다.¹⁸⁰⁾

178) 沙銀華, "中國投資・金融債權に關聯する紛争の解決策課題-CITIC系列ノンバンクの倒産・債務不履行等事件を中心に-", *op.cit.*, pp.841-842.

179) 중국에서의 신탁법 제정이전의 초보적인 신탁관련법이라 할 수 있는 은행관리감독조례 및 금융신탁투자기구관리감독규정과 그 시행에 대해서는 羅大鈞, "信託法律關係探討", *政法論壇*, 2001 第2期(總第98期), pp.75-76 참조.

180) 沙銀華, "中國投資・金融債權に關聯する紛争の解決策課題-CITIC系列ノンバンクの倒

예를 들면 20세기 80년대 중반부터 각 신탁투자회사들은 부동산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초대형 도시부동산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신탁투자회사의 투자구성을 보면 정부투자비중이 지나치고 높고 이로 인하여 관료화 경향이 극심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앙에서 설립한 신탁투자회사에서부터 지방의 신탁투자회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신탁투자회사들은 정부의 은행이외의 또 다른 중요한 자금원 구실을 하여 왔다. 기존 은행의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취득할 수 없는 자금을 신탁투자회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 신탁투자회사는 정부부문이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중개조직 역할을 하였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신탁투자기관의 운영은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신탁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 법은 7장 74조에 불과하고 그중 신탁회사의 경영활동을 규율하는 조항은 대단히 내용이 허술하였다. 또한, 1999년 10월 1일 시행한 통합 계약법도 신탁계약행위에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신탁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업무 수행과정에서 애매한 부분이 많았다. 결국, 이러한 제반 상황으로 인하여 인해 신탁투자회사들은 힘든 조정기에 처하여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강력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II. 상사신탁업무

1. 신탁투자공사의 상사신탁업무

중국에서는 이번에 신탁법이 제정되기 오래 전부터 이미 신탁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물론 일반인은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설립한 신탁투자공사가 활동하고 있었고, 1997년 말부터는 증권투자기금(펀드)도 운영되어 왔다.

중국에서는 신탁투자공사가 어떠한 통일된 법적 기반 없이 설립·운영되어 왔다. 1979년에 설립된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CITIC)를 비롯한 신탁투자공사들은 계획경제제도의 제한으로 은행이 취급할 수 없는 업무

産・債務不履行等事件を中心に”、op.cit., p.841.

를 수행하였다. 신탁투자공사는 당초 '은행업무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던 만큼 '제2의 은행'으로서의 색채가 강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 당시에는 타인을 위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수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신탁투자공사는 그 업무범위를 수출입업무, 부동산개발, 리스 등으로 확대하여 '금융백화점'으로 불렸다. 처음에는 신탁업무에의 참가자격이 까다롭지 않았고 관리규칙이 정비되지 않은 데다가 각종 우대조치가 많아 투자수익이 매우 높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신탁투자공사들이 방만하게 부동산 및 증권시장에서 투기적인 투자를 일삼게 되었고 상당수의 신탁투자공사가 지급불능 위기에 빠져들었다. 수년전 국제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던 廣東국제신탁투자회사(GITIC)의 파산으로¹⁸¹⁾ 상징되는 바와 같이 중국의 신탁투자업계는 심각한 국면에 처하여 대대적인 정비가 불가피하였다.

사실 신탁투자공사에 대하여는 1982년, 1985년, 1988년, 1992년, 1995년 5차례 걸쳐 정리작업이 이루어졌으며, 2001년 1월 10일에는 중앙은행 격인 중국인민은행이 [신탁투자공사관리규칙]을 공포였다. 동 관리규칙의 제정은 장기간에 걸친 중국 신탁업의 정리작업이 근본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 관리규칙이 제정된 후에도 그 운용상

181) 공동국제투자공사 이사회는 1999년 1월 10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다. 총부채는 361.45억원, 그 자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는 146.94억원, 총자산은 214.71억원이었다. 1998년 10월 6일 중국인민은행은 공동국제투자공사에 대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할 것을 공고하였다. 전국 공사의 채무상태도 판단하여 볼 때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업파산법』, 『회사법』 및 중화인민은행의 금융감독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동 공사의 이사회는 만기도래한 채무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광둥공사 및 그 산하 3개의 공사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였던 것이다. 법원에 파산신청을 제출, 중국인민은행이 지정한 關閉청산 팀에 의하면 중국인민은행과 중국證監會의 승인을 얻어 1월 6일 廣發증권공사와 공동증권주식회사는 각각 광둥국제투자공사의 증권영업부와 투자기금을 대입하였다.

이러한 처리는 증권시장의 안전과 주식보유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입가격과 자연인의 예탁금(存款)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이 구성한 청산조가 시장원칙에 따라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확정할 것이라고 한다. 자연인의 예탁금은 광둥성 재정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관할법원이 동 공사의 파산사건을 수리하기 전에 중국인민은행명의로 예금자의 채권을 대수하여 그들에게 예금원금(이자도 지불하지 아니함)을 지불하고 예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자연인의 채권에 대하여는 유관부문이 소조를 결성하여 선별하여 승인한 후 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欠債三百億(廣國投)經營不善申請破產: 自然人本金省財政墊付, 法制日報, 1999年 1月 12日 1面.

황 및 효과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신탁공사에 대한 자리 매김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신탁업법의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신탁업계에 대한 5차례의 정리작업이 일단락된 지금 전국의 신탁투자공사 수는 239개에서 50개 내외로 크게 줄었다. 2001년 초 [신탁투자공사관리규칙]의 제정은 신탁업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부여하였다. 동 관리규칙에 의하면 신탁투자공사의 업무범위는 자본의 신탁, 동산·부동산 기타 자산의 신탁, 투자펀드업무 등 '타인의 위탁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밖에 본질적으로는 신탁업무라 할 수 없는 담보의 제공 등도 업무로 하고 있다(규칙 21조). 동 관리규칙은 신탁법보다 먼저 제정된 관계로 母法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규이지만, 나중에 제정된 신탁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기타 상사신탁 업무

1997년 11월 14일에 제정, 시행된 [증권투자기금관리장정규칙]도 실질적으로는 신탁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탁법이 제정되기 전에 만들어져 내용적으로 충분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기금위탁자 또는 기금관리자가 그 직책에 위반한 경우의 기금권리자의 구제규정이 불충분하다. 따라서 구제의 근거를 민법통칙에서 규정하는 부당이득, 손해배상의 이론에서 찾을 경우에는 본래의 신탁법리에 의하여 수익자가 얻을 수 있는 구제보다도 크게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그밖에 주목하여야 할 것으로는 국유자산의 관리운용을 행하는 신탁기관을 들 수 있다. 특수한 예이기는 하지만, [금융자산관리공사조례](국무원, 2000.11.10 시행)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자산관리공사는 100% 국가의 출자로 설립되어 4대 은행의 부실자산을 유동화(ABS)하는 등 자산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본질은 신탁관계에 해당한다.

중국의 분배제도 개혁과 사유재산의 증가로 인하여 최근 수년간에 중국에서는 거대한 자산관리시장이 형성되었다. 관리대상 자산에는 개인재산과 기업재산 외에도 각종 공익성기금, 보험기금, 사회보장기금 등이 포

함되어 있다.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중국의 어느 통계수치에 의하면 전국의 각종 신탁회사, 투자자문회사, 재무관리회사는 이미 1천 개를 넘어섰고, 관리하고 있는 자산 총액은 2천억 위엔(人民幣)을 돌파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미루어보건대,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신탁업계의 유일한 플레이어였던 신탁투자공사가 이제는 상신탁시장의 하나의 참가자로 남게 된 것이다.

Ⅲ. 신탁법의 및 주요 내용

1. 신탁법 시행의 의의

2001년 4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채택된 신탁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미 1993년에 신탁법 제정작업에 착수하였으나 1996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가 연기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¹⁸²⁾ 중국은 은행, 증권, 보험에 이어 현대금융의 4대 기둥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신탁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신탁법의 시행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금융산업이 개방됨에 따라 외국자본이 중국 신탁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신탁법은 대륙법계 국가인 중국이 영미법 체계에 속하는 신탁제도를 민사특별법의 형식으로 도입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¹⁸³⁾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탁법은 관리권과 수익권의 분리, 신탁재산의 독립성, 수탁자의 의무, 수익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 등에 있어서 상당히 상세하게

182) 羅大鈞, *op.cit.*, p.75.

183) 신탁법은 증권법(1999년 제정), 독점금지법, 파산법(이 두 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음) 등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와는 조화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자본주의적 법률이라 할 수 있다(羅大鈞, *op.cit.*, pp73-74.). 일찌기 미국의 신탁(trust)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정착과정에서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우리 나라로서도 중국의 금융산업 개방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중국 신탁법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신탁법은 7장 7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탁의 설정, 신탁재산, 신탁당사자, 신탁의 변경 및 종료, 공익신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신탁법과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다.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동법의 제정은 현대적 신탁제도의 확립을 향한 일보 전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수익권·우선권의 내용, 신탁의무(fiduciary duty)의 내용 및 신탁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등 신탁제도와 관련된 기타 규정의 정비가 요청되고 있어 향후 신탁법의 운용 과정에서 이러한 미비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주요 내용

(1) 신탁의 정의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신탁에 기초하여 그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의사에 기하여 자기 명의로써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관리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2조). 신탁은 문언상으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위탁'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법률효과에 있어서는 재산권이 '이전'된다. 즉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자기 명의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을 하는 것이다. 수탁자의 관리·처분행위는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목적(공익신탁의 경우)에 구속되고 관리·처분에 의한 이익은 수익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재산의 관리권과 수익권을 분리하는 새로운 권리관계가 특별법에 의하여 창설되는 것이다.

(2) 적용범위

신탁법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가 중국 국내에서 민사·영업·공익신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법 3조). 수탁자가 신탁기구의 형식으로 행하는 신탁활동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그 조직 및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한다(법 4조). 이는 신탁법이 민사·상사 및 공익신탁 전반에 걸쳐 신탁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이른바 신탁업법에 해당하는 법규의 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국무원이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3년 입법작업에 착수할 당시에는 신탁투자공사에 관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도 주된 목적의 하나였다. 그러나 신탁투자공사에 대하여는 아직도 정리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중국 당국은 신탁업법의 입법시기와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신탁법 제정에 있어서 신탁업 부분은 법제화를 미룬 것이다.

(3) 신탁의 설정

1) 신탁설정의 요건

신탁을 설정하는 요건으로 합법적인 신탁목적의 존재, 확정할 수 있는 신탁재산의 존재, 서면방식의 채용이 규정되어 있다(법 6~8조).

2) 신탁의 공시

신탁을 설정하는 것은 신탁재산 명목이 변경되어 위탁자 및 수탁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것이 불가능(신탁재산의 독립성에 기한 효과)해지는 등 제3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법률이나 행정법규 상으로 등기를 요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이 설정되었다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법 10조).

3) 무효신탁

신탁설정의 적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해 신탁설정은 당연 무효가 된다. 뿐만 아니라 불법재산 또는 신탁의 설정이 불가능한 재산에 신탁을 설정한 경우, 수익자 또는 수익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오로지 소송 또는 채권추심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도 무효이다(법 11조).

4) 위탁자의 채권자신탁행위에 대한 취소권

신탁의 설정이 위탁자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자는 법원에 당해 신탁을 취소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법 12조). 이른바 사해행위 취소권은 중국의 계약법인

合同法 제74조에도 일반 규정이 있다. 그런데 합동법에서는 시효소멸 사유 이외에 취소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이 소멸한다는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4) 신탁재산의 특성

1) 신탁재산의 통일성

신탁재산이란 수탁자가 신탁을 승낙함으로써 취득한 재산을 가리킨다(법 14조 1항).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 처분 및 기타 상황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신탁재산에 귀속된다(법 14조 2항).

2) 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재산의 독립성에는 다음 4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신탁재산은 신탁을 설정하지 않은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구별된다. 위탁자가 사망 또는 해산, 파산하여도 신탁재산은 그의 유산 또는 청산재산으로부터 제외된다. 다만, 위탁자가 유일한 수익자인 경우에는 신탁은 종료되고,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유산 또는 청산재산에 귀속된다(법 15조).

둘째,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된다. 수탁자가 사망 또는 해산, 파산한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유산 또는 청산재산으로부터 제외된다(법 16조).

셋째,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신탁설정 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채권자,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 신탁재산 자체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 등에 한한다(법 17조). 이것은 신탁재산 소유의 채권자 이외에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넷째,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무는 상계할 수 없다.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과 수탁자 소유

재산에 속하는 채무와의 상계, 다른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채무의 상계 등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법 제18조).

(5) 수탁자의 권리의무

1) 수탁자의 권리

수탁자의 권리는 우선 신탁사무를 행하는 권리와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이다(법 제25조). 권리와 의무라는 양면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보수를 받을 권리(법 제35 및 제36조), 수탁자가 고유자산으로부터 신탁사무처리 비용 및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지급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법 제37조).

2)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익자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신탁재산을 관리할 때에는 '성실·신용·신중·유효'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법 제25조). 이는 우리 나라 신탁법의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fiduciary duty)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안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에는 그 이익은 신탁재산에 귀속된다(법 제26조).

그밖에 수탁자는 분별관리의무(제27~29조), 자기집행의무(제 30조), 신탁업무에 관하여 위탁자 및 수탁자에게 보고하고 검사를 받을 의무를 진다(법 제33조).

(6) 위탁자 및 수익자의 권리

1) 위탁자의 권리

① 수탁자에 대한 감독권

신탁재산의 관리운용, 처분 및 수지상황에 대하여 알 권리 및 수탁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를 열람하고, 초록 및 복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법 제20조).

② **신탁방법의 변경권**: 신탁설정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이 신탁목적의 실현 및 수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법 제21조).

③ **신탁행위 취소권 및 신탁재산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 수탁자가 신탁목적 또는 관리책임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신탁사무의 처리로 의하여 신탁재산이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위탁자는 법원에 대하여 당해 처분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권은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또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법 제22조).

④ **수탁자 해임권**: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수탁자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다(법 제23조).

⑤ **강제집행 이의권**: 신탁재산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위탁자는 법원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법 제17조).

⑥ **신탁해제권** : 위탁자가 유일한 수익자인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신탁을 해제할 수 있다(법 제50조). 또한 수익자가 위탁자 또는 기타 공동수익자에 대하여 중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및 수익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위탁자는 신탁을 해제할 수 있다(법 제51조).

2) 수익자의 권리

수익자의 기본적인 권리는 신탁수익권이다(법 제43조). 수익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중국 민법통칙(중국에는 민법이 없고 민법통칙만이 제정되어 있다)에 없는 개념으로 이것이 일반적 채권인지 아니면 물권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한도로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법 제34조), 수익자는 신탁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다(법 제46조 1항). 수익자는 위탁자가 가진 상기 (1)의 권리를 똑같이 향유한다(법 제49조, 제17조 및 제54조).

(7) 공익신탁

일반적으로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탁자 세 당사자로 구성되지만 공익신탁에 있어서는 그밖에 2인의 주체가 더 등장한다. 하나는 공익사업관리기구이고 다른 하나는 신탁감사원이다. 공익신탁의 설립 및 수탁자의 확정에는 공익사업관리기구의 인가를 요한다(법 제62조). 수탁자의 활동은 공익사업관리기구의 검사·감독을 받고(법 제67조 제1항), 신탁 문서의 변경(법 제69조), 신탁종료시의 청산보고에도 공익사업관리기구의 승인(법 제71조)이 필요하다. 신탁감사원은 수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타 법률행위를 행할 수 있다(법 제65조). 또한 신탁감사원은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 및 신탁재산보고, 신탁종료시의 청산보고에 대하여 승인을 한다(법 제67조 제2항 및 제71조).

IV. 신탁법 제정과 분업경영의 문제

신탁법의 제정은 지금까지 혼란한 가운데 있던 신탁업에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은 '분업경영, 분업관리'의 원칙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과 신탁의 분업경영을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정부는 이상 4대 금융기관에 대한 분업관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르는 필요한 관리기관을 설치하게 될지도 모른다. 신탁법은 신탁관제를 규율하는 신탁법제의 기본법으로서 앞으로 제정될 예정인 신탁기구에 관한 관리조례(이른바 신탁업법), 투자기금법 등의 근거법이 될 것이다. 또한, 신탁법의 제정으로 신탁감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현행처럼 금융업 분업경영을 전제로 한 분업관리체제를 WTO가입이후에도 그대로 존속·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면 단기간내에 신탁투자회사를 관리하는 감독관리기관이 설립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앞으로도 은행, 보험, 증권업은 중국 금융업의 3대 부문으로서의 위치를 갖게 될 것이고 신탁업은 이들 3대 금융업종의 혼합경영 영역으로 남게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즉 만약 중국정부가 기존의 분업경영정책을 변경한다면 신탁투자

회사들은 다른 금융영역에 뛰어들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1930년대부터 서방 국가들은 대규모의 금융위기 발생을 막기 위해 분업경영·분업관리제도를 실시하여왔으나,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점차 금융기업의 타 업종 경영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업들이 전면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 기존의 금융관리체제는 분업경영·분업관리 체제를 고수하고 있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경직돼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¹⁸⁴⁾

V. 신탁업의 과제

중국 신탁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현행법률상 독자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현재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설립한 신탁투자회사들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행정관여에 의하여 등록자본금이 과대평가되어 등기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자금은 충분하지 아니하여 독립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도시지역에서의 신탁업무는 신탁회사 내부관리문제로 인하여 고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업무량이 지극히 적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중국의 신탁업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첫째, 신탁투자회사는 정부부문 또는 다른 정부투자기업과의 철저한 분리를 통하여 점차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주식상장 방식으로 자금문제를 해결하여 그 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대형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정부는 신탁투자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셋째, 상장회사의 증권매매 또는 국제발행과 관련하여 신탁투자회사에게 참여의 기회를 준다.

184) 法制日報, 2001년 4월 9일.

제 4 장 WTO가입 이후 정비된 금융업관련 주요 법령

제 1 절 은행부문

1. 외자금융기구관리조례

2001년 11월 WTO가입에 따라 〈외자금융기구관리조례〉를 공포하여, 외국계 은행에 대한 지역 및 외환업무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2002년 상반기에 중국은행은 〈외자금융기구관리조례 실시세칙(1.29)〉, 〈외자금융기구가중국대표처관리관법(6.27)〉을 공포하여, 외국계 금융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관련 대외적 수락내용 및 은행감독에 관한 국제관계, 선진국의 국가감독정책과 감독경험 그리고 중국의 中資은행에 대한 감독정책과 그 경험을 토대로 하여 국무원은 《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를 개정하여 2002년 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로써 1994년 2월 25일의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금융기관관리조례》를 폐지하였다.¹⁸⁵⁾ 중전의 관리조례와 대비하여 변화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자금융기구의 위엔화 업무취급지역과 서비스 대상범위를 중국 인민은행이 심사·확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둘째, 외자금융기구의 영업허가 신청기준을 완화하여 신청전 3년간 중국에서 영업경험이 있고 신청전 2년동안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하였고 중국 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 세부조건에 부합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중국인민은행은 외자금융기구의 업무범위와 심사 및 감독관리의 필요에 따라 등록자본금 및 운영자금의 최저한도를 높이고 그 중 위엔화 보유금액을 규정하였다.

넷째, 합자은행 및 합자캐피탈회사의 중국측 합작당사자의 자격요건을 금융기관이외에 일반기업까지 확대하였다.

185) 이 조례에 대한 기타 자세한 평가에 대해서는 胡建芳, "中國WTO加盟後の外資金融機構に對する法規制の動向-「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の改正について-「國際商事法務」, Vol.30, No.6(2002), pp.790-795 참조.

다섯째, 중국인민은행이 외자금융기구에 대하여 인가하는 업무범위를 종전의 외화예금과 대출 등에서 일반예금, 대출 및 외화의 예금, 대출, 어음인수, 정부채권, 금융채권, 주식이외에 기타 외화 유가증권 매매, 신용장 업무, 콜시장 업무까지로 확대하였다.

여섯째, 외자캐피탈회사, 합자캐피탈회사의 업무중 1백만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유태환화폐의 수수(최소 3개월 이상)업무를 추가하였다.

일곱째, 외자은행, 합자은행, 외자캐피탈회사 및 합자캐피탈회사의 건전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기자본비율(BIS)을 8% 이상 유지하도록 하여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외자금융기구나 합은 외국인투자은행, 외국은행의 지점, 중외합자은행, 외자캐피탈회사(본점이 중국 국내에 있는 외국자본의 재무공사), 및 합자캐피탈회사등을 말한다.¹⁸⁶⁾ 이 조례에서는 합작방식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I. 외국인투자리스회사심사승인관리관법

《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은 중국내 외국인투자리스회사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외무역경제합작투자(회사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투자리스회사는 금융리스회사와 기타 리스회사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합작, 합영의 형태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독자기업형태의 외국인투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辦法은 조문 수가 불과 21개에 불과하여 향후에도 추가보완이 예상된다.

1. 입법배경

이 관법의 제정목적은 리스業의 발전을 규율함으로써 시장경제의 발전이라는 절박한 필요에 부응한다는 것이다. 리스는 시장경제의 산물이며 리스業은 투자, 금융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판매 촉진 및 자산관리 등의

186) 제2조.

여러 측면에서 효능을 가지며, 리스거래에 대한 규율, 리스업에 대한 감독, 회계준칙, 세수정책 및 외환관리 등 여러 가지 경제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중국의 리스업의 발전상황을 보면, 리스업은 부침의 과정을 반복하여 왔으며, 완비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법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였다. 중국의 리스업의 발전은 크게 다음 세 단계를 거쳐왔다.

첫째, 1980년대초부터 중후기까지 이며 리스업은 금융리스를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당시 개혁개방초기였기 때문에 경제법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아니하여 리스업도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1980년대 중후기부터 1990년대 중기까지이며 중국의 산업구조가 조정을 거치고 있었으며 국유기업은 큰 곤란을 겪고 있었고 시장환경은 변화되고 신용질서도 혼란에 빠져 리스업에 대한 감독도 취약하였고 리스업 내부에서도 관리경험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리스업은 리스료의 미수금이 엄청나게 누적되는 지경에 이르렀다.¹⁸⁷⁾

세 번째는 1990년 중기이후이다. 內資리스기업과 중외합자리스리스기업의 조직개편과 창업으로 리스업계에는 새로운 상황이 출현하게 되었지만 리스업이 시장경제에 부응하여 발전하는데 필요한 법적 환경이 여전히 조정되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중국의 리스기업의 상당수가 중외합자기업이며 금융리스 분야에서 7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누적 리스실적은 80% 이상이다.¹⁸⁸⁾ 중국은행은 2000년 6월 30일 《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을 공포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외국인투자리스업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못하였다.

대외경제부역부가 2001년 8월 공포한 《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은 《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법에 의거하여 외상투자리스기업의 행위를 규율함으로써 중외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중국 리스업의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WTO가입이후 서비스무역의 양허협정에 따라 리스업은 가입후 1년내에 외자가 다수지분을 차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3년내에는 外資獨資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여야 하게 되었다.

187) 張德霖(主編), 『中國加入WTO經濟法律調整概覽』, (北京: 法律出版社, 2002), p.225.

188) *Ibid.*, p.225.

이러한 내용도 법률, 법규중에 반영되어야 한다.

2. 주요내용

이 판법에서 외상무자리스회사라 함은 중국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어 금융리스업에 종사하는 리스회사(금융리그회사)와 그 외의 리스업에 종사하는 리스회사(기타 리스회사)를 말하며 모두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제3조). 설립요건으로는 첫째 금융리스회사는 등록자본금 2천만 달러 이상이고 중국측 투자자의 출자액이 등록자본금의 20% 이상이 되어야 하며 경영기간을 3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7조). 또한 중국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는 각각 설립신청前 1년 동안의 총자산이 각각 4억원 인민폐, 4억 달러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측 투자자는 5년 이상의 금융리스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제6조). 둘째, 기타 리스회사는 등록자본금 5백만 달러이상이고 중국측 투자자의 출자액이 등록자본금의 20%이상이어야 하며 경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9조). 또한 중국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는 각각 설립신청前 1년 동안의 총자산이 각각 3억원 인민폐와 5,000만 달러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측 투자자는 3년 이상의 리스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제8조).

금융리스회사의 경영범위는 국가의 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승인을 얻어 ①국내외의 각종 선진적 또는 응용성 생산설비, 통신설비, 의료설비, 과학연구설비, 검사검측실험설비, 공정설비, 교통운송수단(항공기, 자동차, 선박) 등 기계설비 및 附帶기술의 직접 리스, 再리스, 리스회수, 위탁리스, 연합리스 등과 관련된 각종 방식의 인민폐 및 외화의 융자성 리스 업무, ②임차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국내외 리스업무에 필요한 물품 및 부대기술의 구매, ③리스물품 잔여가치 매매 및 처리업무, ④리스거래의 자문 및 담보 업무, ⑤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승인을 얻은 기타 업무 등이다(제12조). 금융리그회사가 상기의 규정된 범위 이상으로 영업을 확대할 경우에는 중국인민은행의 <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의 별도의 허가를 요한다(제13조).

기타 리스회사의 경영범위는 ①국내외의 각종 선진적 또는 응용성 생산설비, 통신설비, 의료설비, 과학연구설비, 검사검측설비, 工程기계, 교통운송수단 등의 설비에 대한 리스업무, ②리스 물품의 잔여가치 매매 및 처리업무, ③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승인을 얻은 기타 업무이다(제14조). 한편, 금융리스회사의 리스 항목으로 상품과 그 부대기술의 수입이 쿼터·허가증 등의 전문적인 정책관리와 관련된 경우, 임차인 또는 금융리스회사는 규정에 따라 신청·수령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기타 리스회사가 리스에 사용할 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현행 외상투자기업의 설비수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제15조). 설립을 위한 신청서류는 중국 및 외국측 투자자가 서명한 외국인투자리그 회사 타당성 연구보고서, 계약서, 정관, 중국 및 외국측 투자자의 자본등기증명, 은행잔고 증명 등이다.(제10조) 또한 금융리스회사의 위험을 방지하고 경영상의 안전을 위하여 금융리스회사의 담보잔액에 포함되는 리스크 자산액은 총 자본액의 10배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16조).

Ⅲ. 외국인투자벤처캐피탈기업잠정규정

《關於設立外商投資創業投資企業的暫行規定》이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과학기술부, 공상행정관리 총국이 공동으로 제정하여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규정의 제정근거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회사법》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그 입법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외국인투자가 각종 형태와 방식으로 행하여져 왔는바, 그중 전문적으로 주식투자에 종사하는 기업도 대단히 많다. 현재 중국의 벤처캐피탈기업은 주로 북경, 상해, 심천 등에 집중되어 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2001년 6월말까지 중국 전역에 약 160여개의 벤처캐피탈기업이 설립되어 있으며 약 180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벤처 투자된 금액은 약 30억원이다. 그중 외국의 벤처캐피탈기업이 투입한 자금은 대략 3억달러에 달하였다. 그리고 약 15개의 벤처

캐피탈관리회사가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 벤처캐피탈사업이 발전하고 있는 과정중에 있으며 중국의 벤처캐피탈사업은 다음,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해왔다.¹⁸⁹⁾

첫째, 법적 환경이 성숙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는 중국 내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에 의한 벤처캐피탈사업의 발전을 규율할 전문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둘째, 민간자본의 참여가 부족하다. 현재 설립되어 있는 벤처캐피탈기업에는 중국 정부가 투입한 자금이 대단히 많으며 민간투자는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자를 포함하여 각종 자금이 벤처캐피탈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벤처캐피탈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벤처캐피탈사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넷째, 인재 양성이 지체된 후 벤처캐피탈기업의 경영자가 그러한 기업을 경영관리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급히 선진적인 관리이념과 관리경험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국의 벤처캐피탈기업의 규모가 너무 영세하여 신속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섯째, 중국의 WTO가입한 후 WTO요구와 중국의 대외적 수락내용에 부합되는 법률법규를 시급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外商投資創業投資企業暫行規定》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外商投資創業投資企業暫行規定》에 의하면, 벤처투자자란 함은 주로 비상장 하이테크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벤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본의 부가가치를 획득하는 투자방식을 말한다(제3조). 따라서, 외국인투자 벤처캐피탈기업은 중국의 비상장 하이테크 사업에 대한 지분투자과 벤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투자 벤처캐피탈기업은 1)중국에 외국인투자를 장려, 허용하는 하이테크 산업 및 국가가 허가한 기타 영역에 자산 투자,

189) *Ibid.*, pp.217-218.

2)벤처캐피탈 컨설팅 제공, 3)투자대상기업에 컨설팅 제공, 4)심사비준 기관이 비준한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제12조). 그러나, 외국인투자 벤처캐피탈기업은 1)국가가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는 영역에 투자, 2)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 채권, 선물거래 등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다만, 투자기업이 상장된 후 외국인투자 벤처캐피탈 기업이 소지한 지분 및 배당지분은 제외), 3)비업무용 부동산에의 직접 또는 간접의 투자, 4)대출금에 의한 투자, 5)자기 자본이외의 자금으로 투자, 6)대출 또는 담보의 제공, 7)법률, 법규에 의하여 금지되는 기타 활동에 종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3조).

한편 투자자의 자격요건으로, 외국투자자의 경우에는 기업 설립 신청 전 3년동안 자본 누계액이 1억 달러이상이어야 하고 중국투자자의 경우에는 기업 설립신청전 3년간 누계액이 1억원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투자자는 3년 이상 벤처투자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및 제6조). 그밖에도 공히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 정당한 자금출처를 가져야 한다는 것 등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기업과 중외합자, 중외합작은 물론이고 獨資의 형식으로도 그러한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중외합작의 경우에도 비법인 형태를 채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제관례에 따라 합작계약에 내부 수익분배제도에 대하여 약정할 수 있다(제15조). 비법인 중외합작 형태로 설립된 외국인투자 벤처캐피탈기업의 투자자는 외국인투자 벤처캐피탈투자기업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지게 된다(제16조).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벤처캐피탈은 투자자가 정관에 관리인원의 실적보수를 약정할 수 있다(제15조). 다만 외국인 투자비율이 총 출자액중 25%이상이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제7조). 한편,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외국인투자벤처캐피탈기업은 이사회를, 비법인 중외합작방식의 기업은 연합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가 경영관리기구가 된다.

IV.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금융자산처리업무 관련 조세문제 통지」

국가세무총국이 2003년 1월 7일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금융자산처리 업무 취급 관련 조세문제 통지(國稅發[2003]3호 2003.1.7). 이 통지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 및 그 실시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중국금융자산처리 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조세문제를 다루고 있다.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하 "기업"이라고 약칭)이 중국금융자산처리 업무에 종사하고 취득한 수입은 세법 및 본 통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업세 및 기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융자산처리(金融資產處置)업무라 함은 기업이 구매, 지분인수 등 방식으로 중국경내 금융자산관리회사로부터 중국경내 기타기업의 주식, 채권, 실물자산 및 상술한 각종 자산을 조합한 집합자산(이하 "치환자산(重置資產)-Replacement Assets"이라 약칭)을 취득하고, 상술한 치환자산을 양도, 회수, 교환 및 판매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여 상술한 수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금융자산처리는 (1)채권 회수 또는 양도, (2)채권을 주식으로 전환, (3)지배권을 가진 실물자산 처분, (4)주식 매각 또는 양도, (5)치환자산 반환, (6)기타 치환자산 처리 방식을 포함한다.

기업이 취득한 치환자산의 원가는 실제 구입금액 또는 지분인수시의 가격으로 한다. 치환자산의 분류는 취득시의 가격결정 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즉 단독으로 가격을 결정한 어느 한 기업의 하나의 주식, 채권 또는 실물자산에 대한 독립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의 자산을 하나로 묶어 일체로 결정한 조합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기업이 취득한 치환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분류·조합하는 경우에는 새로 분류 또는 조합하여 확정된 개별 또는 조합 치환자산의 원가

에 외할 수 있다. 다만 새로 분류·조합한 후 치환자산의 원가는 기업이 해당자산을 취득했을 때의 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채권인 치환자산 처리하는 경우 및 주식인 치환자산을 처리하여(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 포함) 취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기타 실물 치환자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수입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이 부동산에 속하는 경우 영업세를 징수하고, 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치환자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수입은 관련 자산의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치환자산을 시간을 달리하거나 품목별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 취득한 수입이 해당 개별자산 또는 조합자산인 치환자산의 원가를 초과하면, 원가를 초과한 부분을 기업의 당기 과세소득액에 산입하여 기업소득세를 계산·징수한다. 치환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기 과세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중국경내에 기구와 장소를 설립하지 아니한 외국기업은 스스로 또는 중국경내의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기업소득세는 하나의 치환자산이 속한 기업의 소재지를 선택하여 납부하고, 납부할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결정한다.

V. 은행감독관리법, 인민은행법 및 상업은행법 개정안

2003년 10월 23일 개최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부실대출 등에 따른 은행권 위기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고 은행감독관리법, 인민은행법, 상업은행법 등의 대대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법(초안)>, <중국인민은행법 수정안(초안)>, <중국 상업은행법수정안(초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¹⁹⁰⁾ 심의 중인 중국의 은행감독관리법은 국제관례와의 상당히 가까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 최근 수년간 중국 은행업은 급속한 발전을 가져와 저금과 대부

190) 中國金融時報, 2003. 10.24.

금 총액이 년 평균 10% 이상의 속도로 성장하고 은행서비스 종류가 늘어나고 수준도 부단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업무의 신속한 발전과 더불어 상업은행에서는 금융사기사건 등의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은행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금융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은행업 감독관리법 초안〉은 은행업 금융기구의 관리 정책에 대한 은행감독관리 위원회의 정책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중국 은행업의 상황에 따라 특히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은행이 직면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감독관리제도를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감독관리수단 분야의 내용을 강화하며 은행업의 돌발적 위협의 발견, 보고와 처리 제도 등 분야의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은행감독관리법 초안을 심의하였다. 법률초안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많은 은행감독관리규정을 받아들이고 참작하였는바 이것이 통과, 시행되면 중국의 현 은행감독관리상황을 개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시종일관 금융감독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금융기구의 안전성, 안정성 및 고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은행감독관리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금융감독관리체제 개혁의 필요에 부응하여 은행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감독관리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 은행업 금융기구에 대한 법정 감독정책을 부여함으로써 은행업 감독관리업무가 법률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려는데 있다.

은행감독관리법 초안은 해 은행의 위험감독능력을 강화하였으며 은행감독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은행업금융기구에 경영원칙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는 법인,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산의 질, 자산이동성등의 내용이 포함되어며 은행업 금융기구는 이런 원칙에 기초해 여러 가지 경영활동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은행감독관리의 중점이 위험통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밖에도 은행감독관리법 초안은 기타 외국의 금융감독관리 수법을 고려하여 은행감독관리법 초안은 은행의 감독관리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초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중국의 금융시장이 아직 매우 성숙되지 못하고 시장위험을 예방

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은행감독관리법을 제정하는 것은 위험을 방지하는데 대단히 필요하다는데 일반적으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그러나, 많은 위원들은 여전히 은행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결코 상업은행의 발전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감독관리법이 너무 엄격하면 국내의 상업은행이 치열한 시장경쟁에 대처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자본시장이 점차 개방되어 최근 수년간 중국에 외자금융기구가 적지 않게 설치되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은행업에 대한 엄격한 감독관리가 필요한 여지가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 금융업에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아직 매우 많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중국 금융업의 발전도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너무 엄격히 제한하게 되면 금융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어 되어 경쟁에서 불리한 지위에 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바로 이러한 인식하에 은행감독법 초안은 단순히 은행업무의 적법성을 감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기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은행감독법에 따라 국가은행감독위원회(CBRC)는 외국 은행감독기관과 공조하여 국경을 초월한 감독을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상업은행들의 금융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침도 만들 계획이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CBRC는 중국내에 있는 모든 은행들과 금융기관들을 감독하며 불법 대출이나 위법행위 등을 처벌할 권한을 갖게 된다.

CBRC는 2003년 4월28일 설립된 후 4개 국유상업은행의 부실대출을 조사하는 등 은행 위기관리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왔고, 국유·민간 은행 모두 5등급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해야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은행들의 부실대출과 이에 따른 채무부담이 은행업 발전을 저해해왔다. 올해 2003년 6월말 현재 4개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19.6%로 무려 2조 5천 400억 위엔(3천71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은행감독법과 함께 상업은행 관련법도 개정돼 이들이 독립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유 상업은행들이 더 이상 정책자금을 대출할 필

요가 없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국유은행들은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손실이 발생하면 국무원 등으로부터 상응하는 배상을 받아왔다. 아울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법도 개정돼 인민은행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CBRC로 넘기는 대신 거시경제 정책 수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그러나 인민은행은 역할축소와 CBRC의 위상강화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제 2 절 증권부문

I. 중외합자펀드관리회사(外資參股基金管理公司)설립규칙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2002년 6월 1일 公布하고 2002년 7월 1일부터 施行하고 있으며, 증권시장 대외개방에 대비하고 중외합자펀드관리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중외합자펀드관리회사의 설립조건과 절차를 明示하기 위해 《회사법》(《공사법》)과 《증권투자자금관리잠정방법》(이하 《잠정방법》이라 약칭함)의 관련규정에 의해 제정한 것이다. WTO 가입 후 중국 정부는 《외자합자증권회사설립규정》, 《외자합자펀드관리회사설립규정》 발표하고 해외증권회사의 B주식 직접거래를 허가하고 있다.

이 규칙 제1조는 증권시장의 대외개방 수요에 부응하고 외자합자펀드관리회사의 설립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외자합자펀드관리회사라 함은 중국밖의 주주가 중국내 펀드관리회사의 주권을 양수 또는 매입하여 변경한 펀드관리회사 또는 중국밖의 주주가 중국내 주주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펀드관리회사를 포함한다(제2조). 이러한 펀드관리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이며(제4조 제1항), 외자지분비율 또는 권리의 비율의 누계(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지하는 경우)가 33%를 초과하지 못하며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3년내에는 당해 비율이 49%를 초과할 수 없고 중국밖의 주주는 자유태환 가능 화폐로 출자하여야 한다(제8조).

II. 외국인투자주식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關於外商投資股份有關問題的通知》(외국인투자주식회사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가 《關於設立外商投資有限股份公司的若干問題的暫行規定》(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설립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잠정규정)에 근거하여 200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이후 경상거래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개방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민폐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주식시장의 개편이 진행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회사 전환으로 중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가할 것이다.

이 통지에 의하여 외자계 기업은 법적으로 B주 시장뿐만 아니라 A주 시장 상장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투자의 주식회사 설립 또는 이미 설립된 외국인투자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전환은 《關於設立外商投資有限股份公司的若干問題的暫行規定》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미 설립된 외국인투자 주식회사가 A주 또는 B주를 공개발행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하며 상장시 외자소유의 비유통주 비율은 총 발행주식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B주를 발행한 후, 비상장 중 외합자 주식회사가 외국인투자자 보유분의 B주를 상장하여 유통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자의 비유통 주식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유통 후 외자소유의 비유통주 비율이 총 발행주식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III. 외자투자주식회사의 비상장외자주식을 B주식시장에서 유통하는 문제에 관한 보충통지

한편, 2002년 8월 19일 대외경제무역부는 《외자투자주식회사의 비상장외자주식을 B주식시장에서 유통하는 문제에 관한 보충통지》를 공포했다. 이는 중국내의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B주식을 포함한 외자투자기업의 비상장외자주식을 B주식으로 전환하여 유통하는 행위를 규범

하기 위하여 공포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B주식을 가지고 있는 외자투자 주식회사의 비 상장 주식을 B주식시장에서 유통하는 것을 허락한다. 유통과정에서 반드시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중국 증권 감독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2001년 10월 8일 공포한 《상장회사의 외자투자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의견》에 따라 집행한다. 상장유통에 관해 반드시 구비해야 할 조건 6가지가 있고 절차 구비서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IV. 상장회사인수관리판법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2002년 9월 28일 공포하여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장회사인수관리판법은 64개조 구성된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장회사의 구매인수활동을 규율하고, 증권 시장 자원의 최적배분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고, 증권 시장의 정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법”, “증권법” 및 기타 법률과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제1조). 상장회사의 인수란 인수자가 증권거래소의 주식양도활동을 통하여 타 상장주식회사의 주식 일부를 취득하여, 또는 증권거래소의 주식양도활동이외의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타 상장주식회사의 지분 일정부분을 취득하여 동 회사에 대하여 실제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제2조) 인수 방법은 협의인수, 요청인수 또는 증권거래소의 집중경매를 통하여 진행되는 인수를 말하며 인수 관련하여 보고, 정보공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3조).

상장회사의 인수활동은 공개, 공평, 공진정의 원칙, 정보의 진실성·정확성·완벽성 등도 요구하고 있다(제4조 및 제5조). 인수는 현금이나 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증권 및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지불 방식에 의할 수 있으며 피인수회사와 주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감회’)는 법에 의거하여 상장회사 인수 등에 대하여 감독과 관리를 진행하고, 증권거래소와 증권등기결산 기구는 중국증감회가 부여한 책무 및 영업 규칙에 따라 상장회사 인수활동에 대하여 일상적인 감독과 관리를 진행한다(제10조). 이 판법 제5장

은 증감회의 감독관리조치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밖에 제2장에서는 협의인수 규칙, 제3장에서는 약정인수 규칙, 제4장에서는 약정인수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V. 상장회사 국유주와 법인주의 외국인투자자에의 양도에 관련한 문제에 관한 통지

중국 증권당국은 상장사의 거래금지대상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세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상장사의 거래금지대상 주식을 외국인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던 1995년의 규제는 해제되었다. 이미 2002년 11월 중국 재무부와 중국증감회(CSRC),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SETC)는 이러한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거래금지대상주식의 외국인 취득을 허용하면 외국기업들은 해당기업의 보통주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중국정부는 국영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M&A를 적극 장려해왔지만 자국의 이익과 아직 미성숙한 금융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왔다. 중국 상장사 주식의 3분의 2정도인 거래금지대상 주식은 사실상 정부지분으로 간주돼왔으나 거래제한이 해제될 경우 주식시장 공급과잉을 초래해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돼왔다. 문제는 거래금지대상 주식이 외국인에게 판매된다고 해도 증사에서 거래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¹⁹¹⁾

결국, 2002년 11월 1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재정부 및 경무위 공동으로 《상장회사 국유주 및 법인주의 외국인투자자에의 양도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공포함으로써, 그 동안 제한하던 중국내 상장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의 외국투자자에 대한 양도를 허용하게 되었다. 이 통지의 제정 목적은 외국의 선진적인 경영관리 경험과 기술 및 자금 도입을 통한 경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조정 개선에 의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합법권익 보호 등을 통한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소개하며 다음과 같다.

191) 證券新聞 2003년 8월 21일.

첫째, 양호한 경영관리능력 및 자금력, 신용, 해당 상장회사의 관리체제 개선 및 지속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등 신용과 역량을 보유한 외자기업에 한하여 국유주와 법인주의 주식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192) 상장회사 국유주 및 법인주의 외국인투자자 양도가 산업정책 및 기업구조조정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유주 관리범위에 속할 경우 재정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주요 사항인 경우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장회사 국유주 및 법인주의 외국인투자자 양도는 반드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상장회사 인수, 정보공개 등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지방 혹은 부문은 단독으로 상장회사 국유주 및 법인주의 외국인투자자 양도를 허가할 수 없다. 193) 외국인투자자는 반드시 자유태환 화폐로 양도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미 중국 내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는 외환관리부문의 허가를 거쳐 인민폐(투자이윤에 한함)로 지불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지불 완료 12개월 후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상장회사 국유주 및 법인주 양도에 따른 외환수입은 반드시 양도인이 규정된 기한 내 양도심의 문건을 외환관리부문에 보고·심의회 결산할 수 있다.

둘째, 국유주와 법인주의 양도가격은 공개 경매방식을 통한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외국인투자자의 중장기투자자를 유도하여 주식인수 후 최소 1년 동안 보유하도록 하고 1년 후에는 재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2) 양도 원칙으로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국가 경제안전 및 사회공공이익을 유지해야하며, 국유자산의 손실을 방지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2)국유경제 전략적 조정정책과 국가산업정책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유자본 분배 및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3)공개, 공정,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고 주주 특히, 중·소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4)중장기투자자를 도입, 단기투입에 따른 증시조작을 방지하여 증권시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193) 양도당사자는 반드시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의 양도허가문건, 외국인투자자 지불 증빙문서 등을 증권등기결산기구에 제출하고 주권변경등기 수속을 해야한다. 또한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주주변동 등기수속을 해야한다. 양도가격이 완결되기 전에는 증권등기결산기구 및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주주변경 및 주권변경신청을 접수할 수 없다.

상장회사 국가보유주 및 법인주를 양도하는 양도 당사자는 반드시 주권변동 전 외환관리부문에 외자의외화등기를 해야하며 외국인투자자의 주권이 재양도될 경우 주권변경 전 반드시 외환관리부문에 외자의외화 등기변경을 신청해야한다.

넷째, 외국인투자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해당 상장회사는 지분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기업 우대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던 바, 이는 주식 양도 1년 후 재양도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세율의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상장회사 국유주 및 법인주의 외국인투자자 양도는 반드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외상투자금지산업의 국유주 및 법인주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또한 반드시 양도후에도 중국측이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상 외국인투자 금지산업에 속하는 상장회사의 주식은 양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여섯째, 외국인투자자는 상장회사 국유주 및 법인주를 양도받은 후 상장회사의 주식배당금, 주권재양도에 따른 수입, 상장회사의 상장 폐지후 청산금액에 대한 분배금액 등은 외환관리부문의 심의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조치에 따라 향후 외국기업들의 중국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을 통한 M&A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VI. 상장회사와 관련당사자 자금거래 및 상장회사의 대외적 담보 제공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통지

이 통지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2003년 8월 28일 공동으로 공포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상장회사와 관련 당사자의 자금 거래 및 대외 담보 활동을 규범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와 지주 회사 및 기타 관련 당사자와의 자금거래를 규율하고 상장회사의 대외담보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것으로 <통지>는 지주회사 및 기타 관련당사자가 상장회사에게 월급, 복지, 보험, 광고 등 기본비용을 대신 지불해주거나 서로 원가 부담하거나 기타 지출을 부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상장회사에서 발생하는 비정형성 자금의 유용문제에 관하여 <통지>는 <어음법> <대출통칙>등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을 재강조하면서 상장회

사에서 유료 혹은 무료로 자금을 지주회사 및 기타 관련 당사자에 단기 대출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상장회사는 은행 혹은 비은행 금융기구를 통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위탁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상장회사가 지주회사 및 관련당사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 상장회사가 지주회사 및 그 관련 당사자에게 진실 거래가 없는 상업어음을 인수, 상장회사에서 지주회사 및 기타 관련 당사자에게 위탁하여 투자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부분적인 상장회사에서 대외 담보의 과도 확장으로 인해 채무위험이 급속히 증가되는 문제에 관하여 <통지>에서는 상장회사는 옹당 심중하게 경영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내부 규제체도를 강화하여 리스크 방지능력을 제고하여야 하며, 상장회사의 대외 담보 총 채무액의 상선을 최근 회계 연도에 따른 자산의 50%를 초월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자산 부채비율이 70%를 초월하는 피담보회사 대상에 대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채무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동시에 상장회사의 대외담보 활동은 내부 심사기준 절차와 정보공개 강화를 요구하였다.

또한 이 <통지>의 규정을 위반한 상장회사 및 그 지주회사에 대하여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는 일정 기간 내에 증권 공개 발행 신청 혹은 기타 심사 비준 사항을 접수하지 않으며 또 그 자산부실 기록을 국가자산감독 관리위원회,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및 관련 지방 정부에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VII. 외자주식참여 증권회사 설립 규칙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2002년 6월 1일 제8호령으로 <<외자주식참여 증권회사 설립 규칙>>을 공포(2002년 7월 1일 실시)했다. 증권시장의 대외개방 필요에 부응하고 외국 주식참여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고 외국주식투자 증권회사의 설립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이 규칙은 28조 구성된 비교적 간결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외자주식참여 증권회사란 외국이 국내 증권회사 주식에 대한 구매 양도등의 형식으로 주주가 변경된 증권회사 혹은 국내 주주와 국외

주주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증권회사이다(제2조). 본 규칙의 주요 내용은 외자주식 참여 증권회사의 조직형식 경영범위 설립조건 설립절차 외자구비조건 등이다.

외자주식참여 증권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이며(제4조 제1항) 주식(인민폐 보통주와 외자주 포함)과 채권(공채와 사채를 포함)의 수탁 판매, 외자주의 중개 및 채권의 중개와 자사 경영, 중국 증감회가 승인한 기타 업무를 그 업무 범위로 한다. 여기에서 외자주라 함은 중국내에 상장된 외자주(B주)와 중국밖에 상장된 외자주를 포함한다(제5조 제1항 및 제2항). 증권회사는 중국증감회에 제5조 제1항에 따라 업무 범위를 신청하여야 하며 주식을 주위탁매매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중국 증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업무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제5조 제3항).

외자주식참여 증권회사는 등록자본이 종합 증권회사 등록자본에 관한 증권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주주는 이 규칙이 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그 출자비율, 출자방식도 이 규칙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증권업 종사 자격이 있는 직원이 50명 이상이고 업무에 필요한 회계, 법률 및 컴퓨터 전문직원이 있어야 하며, 전전한 내부관리와 위험제어 및 위탁판매, 중개, 자사경영 등의 면에서 각각의 관리체도를 확립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기술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요구에 부합되는 영업장소와 합적된 거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중국증감회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제6조).

중국밖의 주주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즉 1)소재국에 완벽한 증권법들과 감독관리체도가 있고 그 증권감독기구가 중국 증감회와 증권감독관리 합작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동시에 효과적인 합작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2)소재국에서 증권경영자격이 있고 금융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하였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중대한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을 것, 3)최근 3년 동안 각종 위험제어지표가 소재국 법률 규정과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요구에 부합될 것, 4)완벽한 내부통제체도가 있을 것, 5)국제증권시장에서 양호한 신뢰와 경영실적이 있을 것, 6)중국 증감회에서 규정한 신중성 조건을 구비할 것 등이다(제7조). 중국내 주주들은 중국

증감회가 규정한 증권회사 주주의 자격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그중 1인은 내자증권회사여야 한다(제8조).

중국내 주주는 현금, 경영에 필요한 실물로 출자 할 수 있지만 중국밖 주주는 자유대환 화폐로 출자하여야 한다(제9조). 중국밖 주주의 지분비율 또는 권익비율이 누계로 3분의 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국내 주주 중의 내자 증권회사는 지분비율 또는 권익비율이 3분의 1이상인 주주가 최소한 1인은 있어야 한다(제10조).

VIII. 역외기관투자가역내증권투자관리잠정판법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인민은행이 2002년 11월 5일 공동으로 공포하여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기관투자가가 중국내에서 증권투자를 하는 경우 이를 규율하는 법규로서 동 방법의 규정에 따른 조건에 부합되는 기금관리기구, 증권회사, 보험공사 및 상업은행이 그 규제대상이다. 외국기관투자가는 동 잠정방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의 상장 거래되는 A주를 포함한 국제, 전환사채 등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바 그 한도에 있어서 개별기관투자가가 개별상장회사의 주식을 최대 10% 보유할 수 있으며 모든 기관투자가는 개별상장회사의 주식을 최대 20% 보유할 수 있다. 기관투자가가 중국경내에서 증권투자를 진행할 시 반드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 밖에 해외송금 및 취득한 주식의 양도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IX. 역외기관투자가 역내증권투자 외환관리 잠정규정

국가외환관리국이 2002년 11월28일 공포, 2002년 1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경내증권시장에서 합격정외기관투자자의 투자행위를 규범화하고 중국외환시장의 온정과 국제수지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규정이다.

X. 상장회사 주주의 보유지분변경 정보공시 관리관법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 관법은 상장회사 주주의 보유지분변경 정보공시행위를 규범화하고, 상장회사 주주의 보유지분변경 정보공시의무인의 규정요구에 따라 정보공시의무를 감독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법〉, 〈증권법〉 및 기타 법률과 관련행정법규에 근거하여 하여 제정한 것이다(제1조).

상장회사 주주의 보유지분변경이라 함은 증권거래소의 지분양도활동을 통해 투자자가 소유한 1개 상장회사의 지분수량에 변화가 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보유 지분량은 변화가 없지만 증권거래소의 지분양도활동 이외의 기타 합법적 채널을 통해 투자자가 통제하는 1개 상장회사의 지분수량에 변화가 있거나 혹은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제2조). 보유지분변경 정보공시 의무인은 자신이 공시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공시하기 전에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보유지분의 변경은 상장회사나 그 주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거래, 시장조작 기타 사기행위에 의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보유지분변경 정보공시행위에 대해 감독관리를 하고, 증권거래소와 증권등기결산기구는 부여된 임무와 업무규칙에 따라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한다(제5조). 정보공시 의무인은 증권거래소에 상장회사 주주의 보유지분변경 보고서(이하 "보유지분변경보고서"라 함)를 제출함과 동시에 중국증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2조). 정보공시 의무인이 다수인 경우 보유지분변경 보고서에 언급된 각자의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의무인 공통의 정보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제13조).

투자자가 1개 상장회사의 지분이나 지배비율이 5%에 달하거나 그와 같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제15조 내지 제18조). 또한, 보유지분변경으로 인해 1개 상장회사의 실제적인 지배권을 획득 또는 획득 가능할 경우, 구매인수인은 "상장회사 구매인수관리관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증감회에 상장회사의 구매인수보고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상장회사 소재지의 중국증감회 파견기구 및 증권거래소에 사본을 제출하고 본 상장회사에 통보하도록 하며 이를 공고한다(제20조).

XI. 상장회사와 관련 당사자간의 자금거래 및 상장회사의 대외 담보 제공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통지

이 통지는 2003년 8월 28일 상장회사와 지주 회사 및 기타 관련 당사자와의 자금거래를 규율하고 상장회사의 대외담보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증감회 및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 연합으로 <상장회사와 관련당사자의 자금 거래 및 상장회사의 대외담보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통지>를 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주회사 및 기타 관련 당사자는 상장회사에 월급, 복지, 보험, 광고 등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거나 상장회사에서 발생한 비경영성 자금을 단기 대출할 수 없으며, 상장회사는 은행 혹은 비은행 금융기구를 통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위탁대출을 제공하거나 지주회사 및 기타 관련 당사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지주회사 및 그 관련자로 터 실제 거래가 없는 상업어음을 인수하거나 지주회사 및 기타 관련 당사자에게 위탁하여 무자활동을 할 수 없다.

상장회사의 과도한 대외 담보로 인한 급속한 채무 증가와 관련하여서는 상장회사로 하여금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여 리스크 방지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대외 담보 총 채무액의 상한선을 최근 회계연도 자산의 50%를 초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70%를 초월하는 피담보회사에 대하여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채무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상장회사의 대외담보환동에 대한 내부 심사비준 절차와 정보공개를 강화하도록 요구하였다.

XII. 증권법 개정 추진

중국이 99년 7월 1일 증권법 개정을 추진한 것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직전부터였다. 중국의 증권법은 시장발전에 큰 역할을 했으나 WTO 가입국 기준으로 볼 때 문제점이 많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¹⁹⁴⁾ 중국증감회(CSRC)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B주식의 내국인 거래에 따른 각종 문제해결, WTO 가입

이후의 상황을 고려한 규정개정 등을 꼽았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증권법 가운데 21개 조항에 대해 대폭적인 수정을 하는 것이며 그 중 14개 조항은 증권회사와 관련된 조항들로 현행 금지 대상인 은행자본의 시장진입 금지, 증권업자의 일반고객 대상 용자금지 등의 조항은 삭제하였다. 특히 증권시장으로의 은행 자금유입 역시 무자의 한 방식이므로 현행 은행자금 시장유입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증권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자금의 사용이 불법적이지 않고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면 시장진입은 허용되어야 함에도 허용되고 있지 않다.

한편, 일부 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감독관리와 법률집행에 대단히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특히 WTO가입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다.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주요내용 중에는 “외국의 증권서비스제공자가 중국내 증권기구 회원자격을 취득한 경우, 증권시장에 어떤 형식으로 참여하더라도 중국의 증권서비스 제공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으나 증권법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증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중이며 2003년말에 증권법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 3 절 보험부문

I. 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保險公司管理條例)

국무원이 WTO가입이후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에 따른 자국 보험업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¹⁹⁴⁾ 《보험법》에 근거하여 2001년 12월 22

194) 현행 증권법은 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중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시장원리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수 없었으며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에 여러 조항이 경직적이고 융통성이 있었다. 지나치게 형식에 묶여 있어 실무 집행자들의 자율성이 구속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재정위원회와 법제위원회가 상반된 입장을 취하였는 바, 재정위의 기본태도는 중국시장이 미성숙단계이지만 포용성을 발휘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데 반해 법제위원회의 경우 위법행위의 법률적 근거를 원천봉쇄한다는 입장이어서 현행 증권법은 법사위의 입장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

195) 입법배경에 대해서는 張德霖, *op.cit.*, pp.96-97.

일 공포,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외자계 보험회사는 중외합자, 독자 및 지사 형태의 보험업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제3조).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중외합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합자에 형태의 외자계 보험회사는 설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점은 외국인투자벤처캐피탈기업에 대해 독자, 중외합자, 중외합자를 허용하고 합자의 경우에도 비법인 형태까지 인정한 《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와는 다르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의 경우에도 합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중외합자 형태의 보험회사 또는 은행은 설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국인투자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외자비율을 50%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합자기어의 설립에 대해서는 외자비율 51%까지 인정하되, 가입후 2년이내에는 외자의 생명보험회사 이외의 보험회사에 대해 100 출자의 자회사 설립도 인정된다. 한편 외자보험중개회사의 경우에는 가입시에는 외자비율을 50%까지 그리고 가입후 3년이내에는 51% 이상, 5년이내에는 100%까지 허용하게 된다. 외자계 보험회사의 설립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합자 또는 독자 보험회사의 최소 등록자본금은 2억원 인민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제통화여야 하다. 외국의 보험회사는 국제통화로 출자하여야 한다.
- 외국보험회사의 지사(分公司)는 그 총공사가 최소 2억원 인민폐에 상당하는 국제통화를 운영자금으로써 무상지급하여야 한다.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외자보험회사의 업무범위, 경영규모에 근거하여 외자보험회사의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의 최소 한도액을 상향조절할 수 있다.
- 외자계 설립조건은 1)30년 이상 보험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을 것, 2)중국내에 대표기구를 설치하여 2년이상 유지하였을 것, 3)설립신청서를 제출하기 1년 전의 연말 총자산이 40억 달러 이상일 것 등이다.
-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에 종사하는 외자계 보험회사의 설립 형태 및 외자지분 비율은 중국보험감독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정하도록 하

였다.

- 외자계 보험회사는 기업설립후 등록자본이나 총운영자금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중국보험감독위원회가 지정한 은행에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외자계 보험회사의 업무범위로서는 재산손실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 등의 재산보험 및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생명보험이다.¹⁹⁶⁾

II. 재보험사 설립규정(再保險公司設立規定)

재보험설립규정은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재보험회사의 설립을 규율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中華人民共和國保險法)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자보험회사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保險公司管理條例)를 근거로 하여(제1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령 2002년 제4호로 2002년 9월 17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제10조). 재보험사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등록된 재보험전문경영회사를 말하며(제2조) 허가된 경영범위에 따라 생명재보험회사, 비생명재 보험회사 및 종합재 보험회사로 구분된다(3조).

생명재보험사와 비생명재보험사는 각각 자신의 관련 분야에서 중국내 재보험업무, 중국내 보험전환 업무 및 국제 재보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종합재보험사는 생명재보험과 비생명재보험과 관련된 상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제4조).

제5조 생명재보험사·비생명재보험사 및 종합재보험사의 실제 화폐자본금은 각각 2억위엔 및 3억 이상이거나 또는 등가(等價)의 자유태환 화폐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출자는 자유태환 화폐로 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196) 이 조례에서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투명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예컨대, 제12조 제7目的「중국보험감독회가 규정하는 기타 신중하게 대응하는 조건…」, 제11조의 「신청자는 정식 신청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립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규정된 기한내에 설립준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증권감독회의 동의를 얻어 3개월 연장할 수 있다.……」등의 규정에서 믿줄 천 부분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沙銀華, 「中國WTO의加盟後外資保險公司に對する新しい法規則-「外資保險會社の管理條例」の構造解明問題點(下)」, 『國際商事法務』, Vol.30, No. 3(2002), p.345.

중국측 당사자가 재보험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험회사지분투자잠정규정>에 의거하여야 하며, 보유주식비례 및 주권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외합자, 외자독자재보험회사에 투자하는 외국보험회사는 중국이 가입한 WTO의 관련 이행규정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7조). 외국재보험회사가 중국 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운영자금기준 및 설립요건은 이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8조). 이에 따라 2003년 10월 24일 독일 뮌헨 재보험공사가 북경 지점을 개설함으로써 중국 최초 외자 재보험공사가 되었다. 197)

Ⅲ. 2003년 개정 보험법

1. 의 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02년 제9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수정에 관한 결정이 통과됨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수정)>을 공포하고 2003.1.1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 보험법 개정과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보험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2002년 5월 국무원에 제출하여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과하고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제1회 심의를 거쳐 10월 18일 최종심의회에서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개정 보험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¹⁹⁸⁾ 1995년 10월부터 시행되어온 중국 최초의 보험법은 8장 15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총칙, 보험계약, 보험회사, 보험경영규칙, 보험법의 감독관리 및 보험증개인, 법률책임, 부칙 등이다. 이 법률은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혼합한 법률이었으며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그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197) 人民日報, 2003.10.25, 6면

198) 보험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행정법규는 제정된 적이 없으며 보험법의 시행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행정규장을 통하여 행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2. 개정 배경

중국이 보험법 개정을 서두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보험법을 WTO규정에 부합되도록 할 필요성 때문이었으며 기존의 보험법이 WTO규정과 충돌하는 부분은 이번 개정으로 모두 해소되었다고 중국 당국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은 증흥적인 부분개정으로 응급처치의 성격이 강하며 국제관례상 국제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의 분리 등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평가도 아울러 받고 있다.¹⁹⁹⁾

중국보험감독회 정책법규부는 업제와 학제의 보험계약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너무 커서 공통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개정되지 못한 부분은 보험감독회와 최고인민법원의 협의후 사법해석의 형식을 통하여 해결을 할 수밖에 없으며 증권법에서 모든 쟁점 문제들에 대한 최종적인 규정을 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법에 대한 대규모 개정을 할 수 없었던 배경에는 중국 보험업제의 실제발전상황과 생존환경을 고려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향후 보험사와 보험시장의 발전에 따라 대규모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²⁰⁰⁾

3. 주요 개정 내용

보험법 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 152개조 중 23개 조항이 개정되고 6개 조항을 신설되었으며 개정된 조문 대부분이 보험업 관련 조항이며 보험계약법은 3개 조항만 개정되었다. 중국보험관리위원회는 보험계약법 관련 문제조항이 30개 이상 있었으나 학자와 업제간에 의견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인민법원에 사법적 해석을 요청하여 해결하기로 하였으며, 보험사의 보험약관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199) http://www.chinaeconomy.co.kr/index.jsp?job+121&page0&col_inde...

200) *Ibid.*

중국보험감독위원회가 밝히 보험법 개정의 3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WTO 가입시 WTO회원국과 한 약속을 보험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법상 이 약속에 합치하지 않는 부분은 개정한다. 둘째, 7년간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정한다. 셋째, 사법부 해석, 기타 방법으로 통해 설명 가능한 조문 또는 개정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는 조문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잠정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감독관리기구의 명시하였다. 1995년 보험법 제정당시 보험업 감독 기관은 중국인민은행이었으나 금융감독기관이라고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보험업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보험감독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관련조항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 개정에서 이를 명시하였다.

재산보험사도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안은 상해보험 규정을 완화하여 <재산보험사가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단기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하였다. 중국에서는 보험을 物的보험과 人的보험으로 분류하고, 보험회사 업무범위와 관련 종전 보험법은 <보험사는 재산보험과 인신보험을 겸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91조 2항), 인신보험 업무에 인수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업무를 포함한다(91조 1항 1호)라고 하고 있는 바, 상해보험은 제3분야가 아닌 인신보험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보험법에서는 재산보험사가 단기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수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상해보험(단기건강보험 포함)을 재산보험사, 인수보험사 모두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책임준비금 관련 조항도 정비되었다. 책임준비금과 관련하여 종전 보험법은 미경과보험료 준비금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기타 책임준비금에 대한 규제는 중국인민은행이나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행정규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법률의 개정이라는 복잡한 수단보다는 개정이 용이한 행정규장을 통한 규율방식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개정 보험법에서는 보험사가 지급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명시하였지만, 구체적인 책임준비금과 관

련된 중요 사항을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정하도록 함으로써 여전히 법률에는 근거조항만을 두고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규장에 위임함으로써 투명성의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재보험과 관련하여 종전의 보험법 제101조는 인수보험을 제외한 재산보험은 인수하게 된 매회 보험의 20%에 대하여 재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재보험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WTO 가입 당시 중국의 재보험은 가입 후 즉시 모두 개방한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개정의 불가피하였다. 개정 보험법은 재산보험, 인수보험에 관계없이 보험사는 보험감독관리기구(즉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유관 규정에 따라 재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강제적으로 20%를 재보험에 들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였다. 다만, 재보험의 규제에 대한 방침 등은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위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행정규장도 WTO 가입시 중국정부가 행한 약속과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약관 및 요율과 관련하여서는 종전 보험법은 주요 보험의 보험기본약관과 보험요율은 중국인민은행의 원래 보험관리기구가 통일적으로 제정·관리하도록 하고 있었으며(제106조 제1항) 이 권한은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동 위원회로 이관되었다. 그런데 보험법이 공포된 후 실제로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의해 공포된 보험기본약관은 재산보험 뿐으로 인수보험에 관한 기본약관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개정 보험법에서는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주요 보험종류의 보험기본약관과 보험요율을 통일적으로 제정하는 대신에 심사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심사대상은 공중의 이익과 연관 있는 보험상품과 새로 개발된 인수보험상품 등의 보험약관 및 보험요율이며 이에 대한 심사범위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은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07조 제1항).

개정 보험법은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는 바, 보험요율과 제제조항부분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대중의 이익과 관련된 보험상품, 법에 의하여 강제로 규정된 보험상품과 새로 개발한 생명보험상품의 보험상품과 보험요율은 보험감독기구에 보고하여 심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또한 기타 보험상품과 보험요율은 보험감독기구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보험법과 구 보험법을 비교하여 본다면 전자는 행정관료적인 색채가 많이 해소되었으며 사회공공이익과 부당경쟁법을 언급한 것이외에도 관목할 만한 것은 보험회사에 시장변화에 따른 자발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점이다. 이 개정법률이 많은 보험회사들의 보험상품개발 속도를 앞당길 것이며 보험상품의 품종을 다양화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어떠한 회사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면 다른 회사들이 모방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다. 보험상품의 연구개발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새로운 상품을 기피함으로써 새로운 상품의 개발도 어려워질 수 있다.²⁰¹⁾

개정 보험법에서는 보험대리인은 생명보험의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 동시에 2이상의 보험자의 위탁을 받을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인수보험업무를 영위하는 모든 보험대리인은 일사전속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구법에서는 대리인이 동시에 두 사람의 위임을 받아 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개인 대리인과 조직대리인이 구별되고 은행보험은 법률의 틀속에서 그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재물보험회사들도 단기 및 손해보험분야에서 생명보험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보험 업무에 관한 개정내용의 결과이다.

개정 보험법은 보험자금의 운용규제를 완화하였다. 개정 보험법이 WTO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국무원은 “기타 자금의 운용형식을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보험사들의 자금의 시장진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보험업계의 최대의 관심사인 보험자금 시장진입문제는 개정 보험법에서도 여전히 허용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무원이 언급한 “기타 자금의 운용형식” 부분에 아직 영업이익이 크지 아니한 중국 보험회사들이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 공포된 개정 보험법은 중국보험회사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보험감독회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자금은 이미 5,977억 위엔에 달한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

201) *Ibid.*

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자본시장 진입허용”을 보험업계서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개정보험법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아직도 입법당국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험업계의 자금운용 다양화 요구가 언제쯤 입법당국에 의하여 수용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개정보험법은 보험자금을 증권영업기구 설립에 이용할 수 없으며 보험업 이외의 기업에 사용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자금운용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자금이 직접 보험업계가 기업을 설립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강하다. 이를 통하여 보험시장의 확장, 산업규모의 확대 및 충분한 경쟁력 확보를 가져다 줄 것이며 따라서 중국 보험시장의 성장에 대단히 유리한 작용을 할 것이라는 논거이다.²⁰²⁾

그러나, 이와는 상반된 견해도 만만치 않다. 보험자금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경쟁을 격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개정 보험법의 국무원은 “기타 자금 운용 형식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실시세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충해석될 것이다. 사실상 종전에 보험자금이 증권투자기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시장에 흘러 들어갔으며 사실 이것은 구 보험법에 관련 조항에 대한 확대보충해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보험자금중에서 현재 은행에 보관된 자금은 2,683억원에 달하여 전체 보험시장 자금 총액의 40%를 점하고 있지만 보험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은행으로부터 이자수익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보험사가 국채에 투자하는 자금은 987억위엔으로 자금 총액의 17%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채이자 역시 보험사에게 큰 소득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자금의 자율적인 운용은 중국에서 단기간 내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²⁰³⁾

개정 보험법은 보험감독관리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바, 109조 제3항을 신설하여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보험회사가 금융기관 제좌에 예치

202) *Ibid.*

203) *Ibid.*

하고 있는 잔고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중개조직의 정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 보험 시장에서 보험료의 85%는 중개조직을 통하여 수령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개정 보험법에서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개조직의 정리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었다. 종전의 경우 보험회사와 보험대리회사들은 중개조직의 양성, 관리, 직업윤리를 법률처럼 강조하였다. 그러나, 은행 보험업이 인기를 끄는 이유중의 하나가 중개조직이 신용위기로 인한 것이다. 일반시민들은 말 못하는 은행계좌를 신용할 망정, 대리인이나 중재인의 감언이설을 더 이상 듣고 싶어하지 아니 한다는 것이다. 개정 보험법은 중개조직의 행위규범에 은폐, 사기, 방패 등 4가지 금지 항목을 추가시켰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동일한 상황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구 보험법에서는 벌금액이 1만위엔 내지 5만위엔 상당이었지만 개정 보험법에서는 5만위엔 내지 30만위엔까지 높아졌다.²⁰⁴⁾

4. 개정보험법의 문제점

개정 보험법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행정기관인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집중된 위험이 있다. 개정법 조문의 대부분이 보험감독관리기관의 관련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방법은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제정한다고 되어 있다. 사실상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쟁 매커니즘을 위해서는 모든 권한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최소한 보험업 관련 규제는 국가의 입법기관(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상임위원회)이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의 분리가 필요하다. 현재 보험법과 관련된 대부분이 보험감독위원회의 행정규장으로 제정되어 있는 바, 이들 행정규장을 토대로 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가 보험업법

204) 예전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보험회사에 대해 '1만위엔 이상 5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행위를 한 중업원에 대해서는 처분하는 한편 '1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라는 규정에서 벌금을 '5만위엔 이상 30만위엔 이하'와 '2만위엔 이상 10만위엔'으로 개정하였다(제139조 제1항 및 제1항).

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WTO 가입 후 중국의 보험시장은 순차적으로 개방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경영에 관한 규제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입법기관에서 법제화하여 투명도 높은 법률로 공포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에 중요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개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투명성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보험시장의 공평·공정한 시장경쟁 메커니즘 구축이 곤란해진다.

아울러 사법해석 및 약관에 의하여 보험법을 보충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법을 개정하면서도 보험계약법 부분을 개정하지 않고 그 대신 관련 문제점들을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통하여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을 개정하여 해결하고자 하지만 사법해석은 법률 자체를 대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사법해석으로 결정할 경우 입법권과 사법권의 혼동이 초래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개정을 통해서도 극히 일부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고 투명성도 유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제5장 결론

중국은 급속하게 개혁과 변화를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장 취약한 산업분야를 금융산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WTO가입 최종 협상에서 금융업이 쟁점이 됐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2001년 11월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WTO 가입의정서 등에 의하면, WTO에 가입한 후 즉시 중국은 외국 은행이 중국 기업과 개인들에게 외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이며, 2년 후에는 외자은행에게 중국 내 외환 경영 업무를 비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5년 후에는 외자은행이 자유롭게 위안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동등한 국민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일정에 따르면, 중국 금융업은 5년간의 완충기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5년 안에 금융업무, 금융업 종사자의 자질, 금융상품 개발, 서비스 향상 등 모든 방면의 업그레이드를 중국 금융기관들은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금융관련 법적 제도에서 또 다른 주목할만한 특징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도기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중앙은행법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와 '국가의 발전목표'간에 일종의 타협점을 찾고 있다. 중앙은행법의 제정으로 한편으로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법적 지위, 통화정책 집행의 독립성, 금융기관 감독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강화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국무원이 중앙은행의 행장 및 부행장을 임명하고 화폐정책위원회의 운영, 통화정책의 수립, 국가발전전략의 수행과 같은 주요 안전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은 여전히 국무원의 지시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²⁰⁵⁾

205) 중앙은행법 (제 38조)는 당국의 정책집행에 의한 중앙은행의 손실이 재정자금으로 보전된다고 언급한다. 이것은 양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통화정책과 당국의 지시에 따른 준재정정책의 격리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당국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반영한다.

이러한 과도기적 요소는 상업은행법에서도 나타난다. 상업은행법 〈제 41조〉에 의하면, 국유상업은행은 국무원의 지시를 받거나 필요한 경우 국무원의 승인 아래 국가의 정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에 대한 국유상업은행의 손실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국유은행 지점에 대한 지방정부의 간섭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국유은행 자금에 대한 당국의 정책적 활용과 지시적 대출의 손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지속적인 정책금융의 길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국유상업은행의 실질적 상업은행화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금융관련 법안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의 과도기적 타협점이며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는 법적 제도의 발전 과정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01년 11월 WTO가입에 따라 〈외자금융관리조례〉, 〈외자금융관리조례 실시세칙〉 등을 공포하여, 외국계 은행에 대한 지역 및 외환업무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2002년 상반기에 중국은행은 〈외자금융기구관리조례 실시세칙(1.29)〉, 〈외자금융기구在중국대표처 관리방법(6.27)〉을 공포하여, 외국계 금융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주식시장은 지난 10년간의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과 향후 엄청난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국 특유의 제도적 환경과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질적인 측면에서 여러 형태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목할만한 제도적 환경으로는 은행중심 금융제도, 분업체제, 과도기적 금융관련 법적제도, 그리고 A주식시장과 B주식시장의 비대칭적 발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 은행중심 금융제도는 개발도상국들이 갖는 공통적 특징이다. 분업체제는 비록 세계적 추세인 겸업화에 배치되나 금융질서의 구축을 우선시하는 정책당국의 의지를 엿보게 한다.

중국의 금융관련 법적 제도는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도기적 요소를 갖고 있다. 이러한 과도기적 법체제는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시장경제체제가 강화되면 점진적으로 개선되리라 전망된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A주식시장의 개방은 향후 자본자유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의 하나이다. A주

식시장과 B주식시장의 통합과 통합된 시장의 개방은 인민폐 태환을 가능하게 하는 외환자유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국 주식시장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통 가능한 주식이 전체의 35.5%에 불과하다. 중국의 주식시장은 유통이 거의 불가능한 국유주와 법인주 비율이 65%이상에 달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2002년 외국인 전용 B주 시장을 내국인에게 개방한 이후, 2003년에서야 내국인용 A주 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QFII 제도를 본격 시행하였다. 중국 증권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간섭, 둘째, 상장기업의 정보 미공개 및 조작, 셋째, 시장의 무기적 요소 만연, 넷째, 공정한 경쟁시스템 미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법률 인프라 부족, 국유기업의 퇴출 제한, 금융시스템 개혁 부진 등은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왜곡하는 요인이다.

중국의 보험감독업무는 1998년 11월 18일 국무원 산하에 설치된 보험감독위원회가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종전에는 중국인민은행이 보험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국무원의 금융감독분리정책에 의하여 보험감독위원회가 보험감독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는 보험감독위원회이외에 인민은행, 증권관리위원회가 있으며 인민은행은 은행·비은행(무선 포함)을, 증감회는 증권회사를 감독하고 있다. 보험업 관련 법체계는 1995년 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정비되기 시작하였으며 보험감독위원회는 설치이후 본격적으로 관련법과 규정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보험법은 보험계약 및 보험업 감독 관련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2000년에 개정된 보험회사관리규정은 보험회사 경영전반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모집, 자산운용, 외국보험회사 등 각부분별로 법률 또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

보험업에 대해서는 보험법 이외에도 해상법, 계약법, 회사법, 민법등에도 관련 규정들이 있으며 그 밖의 관련 법규로는 보험회사관리규정, 보험기구임원자격관리규정, 보험감독관리보고관련규정, 보험회사정산규정, 보험대리점관리규정, 보험중개인관리규정, 보험회사사채투자규정, 보험회사주식4투자기금관리잠정조치, 보험기관자산관리조례, 보험회사지분투자관

련규정, 외국보험기구주재대표관련규정, 상해외자보험기구조례등이 있다.

중국의 보험산업은 은행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방수준이 낮으며 개방속도도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이 보험시장 개방속도를 낮추고 있는 주된 이유는 아직까지 중국보험회사들이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편, WTO 가입직후 새로 제정된 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가 2001년 12월 12일 공포되어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조례는 외상투자보험공사의 설립과登記, 업무의 범위, 영업중지와 청산, 감독관리, 법률책임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례는 향후의 보험시장개방을 촉진하고 외자보험공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외국보험회사 운용에 있어서 중외 합작회사에 관한 법률 및 규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합작회사 설립시 반드시 1개 이상이 중국계이어야 하고 외국인 지분의 최대한도는 51%이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래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외국보험회사, 보험평가기관, 보험중개업체, 보험대리점과 관련한 4개의 규정을 발표했으나, 이들 규정은 높은 수준의 설립자본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점설치시에는 어떤 자본요건을 적용하는지 명확하지도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외국보험회사의 보험활동을 규율하고 보험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保險法》은 외자주식참여의 보험회사의 설립, 외국보험회사의 중국내 지점설치에 대해서는 동법을 적용하되 그 밖의 사항에 대해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경우 그러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관련 대외적 수락내용을 이행하고 외자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外商投資保險公司管理條例》를 제정하여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2년 1월 개최한 “전국보험공작회의”에서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보험회사의 무자 및 운영범위 확대 ②보험중개시장의 활성화 ③보험시장 감독강화 ④농촌보험시장의 개발 ⑤보험회사의 서부지역 진출 촉진 ⑥생명 및 재산(손해) 보험의 각종 신종 보험상품개발 ⑦자동차보험

의 상품 개발 등의 금년도 정책을 확정할 바 있다.

2002년에는 중국의 WTO 가입과 더불어 <의자보험공사관리조례> (2002. 2.1시행), <보험공사 관리규정 수정에 관한 규정>(2002.3.1 시행), <보험법(수정안)>(2003.1.1 시행) 등을 발표하면서 대외개방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03년 8월에도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관리규정(保險公司管理規定)(수정-의견)>에서 처음으로 자연인의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를 허가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參考文獻

〈單行本〉

管仁林(主編),『中國入世承諾:法律文本解釋』,(北京:中國民主法制出版社,2002)。

繆劍文·羅培新,『WTO與國際金融 法律實務』,(長春:吉林出版社,2001)。

聳炳星,『中外外商投資法問題研究』,(北京:法律出版社,2001)。

楊國華,『中國加入WTO法律問題專論』,(北京:法律出版社,2002)。

劉文華(主編),『WTO與中國企業法律制度的衝突與規避』,(北京:中國城市出版社,2001)。

—————,『WTO與中國金融法律制度的衝突與規避』,(北京:中國城市出版社,2001)。

劉 筭,『國際投資保護的國際法制:若干重要法律問題研究』,(北京:法律出版社,2001)。

李本森,『WTO與國際服務貿易法法律實務』,(長春:吉林人民出版社,2001)。

李雙元·蔣新苗,『世界組織(WTO)的法律制度 - 兼論中國“入世”後的應對措施』,(北京:中國方正出版社,2001)。

張軍旗,『WTO監督機構的法律與實踐』,(北京:人民法院出版社,2001)。

張德霖(主編),『中國加入WTO經濟法律調整概覽』,(北京:法律出版社,2002)。

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參考文獻

(World Trade Organization WT/ACC/CHN/49/October 2001).

崔承煥, 『國際經濟法』, (서울:法榮社, 2001).

劉文華, 『WTO與中國金融法律制度的衝突與規避』, (北京:中國城市出版社, 2001).

顧功耕, 『證券法』, (北京:人民法院出版社, 1999).

卞耀武, 『中華人民共和國證券法釋義』, (北京:法律出版社, 1999).

郭延杰, 『證券法』, (北京:法律出版社, 1999).

張軍旗, 『WTO監督機構的法律與實踐』, (北京:人民法院出版社, 2001).

〈論文〉

姜一春, “中國のWTO加盟に向けての實際と法制度改革の現状課題”, 『國際商事法務』, Vol.29, No.8(2001).

郭志雲, 鄭普英, “芻議金融調控法體系”, 『法學雜誌』, 2002年 第6期(總第134期).

歐陽濤, “金融私騙罪”, 『法學雜誌』, 2001年 第6期(總第129期).

羅大鈞, “信託法律關係探討”, 『政法論壇』, 2001 第2期(總第98期).

藍壽榮, 任晶惠, 吳洪芳, “論證券市場信息披露的法律監管與新聞輿論監督”, 『法學雜誌』, 2003年 第2期(總第137期).

남수중, “최근 중국의 금융개혁 추진 내용과 전망”, 『국제금융센터』, 2003년 1월.

賴湘平, “GATS與我國服務貿易立法”, 『法學雜誌』, 2002年 第5期(總第134期).

- 戴根有, “銀行間拆借市場和債券市場的回顧與展望”, 『金融與保險』第12期(2000), (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
- 戴國農·楊之剛·俞亞麗, “論中國國債的市場化構建”, 『財政與稅務』第2期(2001)(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
- 杜穎, “中國保險業的監督與管理”, 法學雜誌, 2002年 第5期(總第134期).
- 馬忠法, “論建立我國證券交易中的民事賠償制度”, 民商法論叢 第12卷, 梁彗星(主編)(北京:法律出版社, 2000).
- 封樹標, “年終基金市場透視,大擴容,對污損”, 南方日報, 2002年 12月 30日.
- 方浩·楊國華, “WTO對成員貿易法制度的透明度要求”, 法學研究, 2001年 第2期(總第125期).
- 符鳳林, “試論我國證券監管的模式” 政法論壇, 2000 第2期(總第92期).
- 史樹林, “入世’影響我國外貿制度的幾個問題”, 法學研究, 2001年 第21期(總第125期).
- 沙銀華, “中國WTO加盟後の外資保險會社に對する新しい法規制—「外資保險會社の管理條例」の構造解明と問題點”(上), (下), 國際商事法務, Vol.30.No.2-No.4(2002).
- , “中國WTO加盟後初の「保險法」改正”,(上) 國際商事法務, Vol. 30.No.12(2002).
- , “中國WTO加盟後初の「保險法」改正”,(中.1) 國際商事法務, Vol. 31.No.1(2003).
- , “中國WTO加盟後初の「保險法」改正”,(中.2) 國際商事法務, Vol. 31.No.2(2003).
- , “中國WTO加盟後初の「保險法」改正”,(中.3) 國際商事法務, Vol.

參考文獻

- 31.No.3(2003).
- , “中國WTO加盟後初の「保險法」改正”, (中.4) 國際商事法務, Vol. 31.No4(2003).
- , “中國投資・金融債權に關聯する紛争の解決策課題-CITIC系列ノ
ンジクの倒産・債務不履行等事件を中心に—”, 國際商事法務,
Vol.29.No.7(2001).
- 徐冬根, “小議「國民待遇原則」在B股市場中的實施”, 法學雜誌, 2003年 第
5期(總第140期).
- 薛 峰, “證券法中民事責任的設定方式研究”...中國法學 2003 第1期(總
第111期).
- 宋一欣, “證券市場投資者權益維護與法律責任”, 法制日報 2002.1.20.
- 顏盈盈, “試析《證券法》第63條對委叛新息披露義務的民事責任的規定 -
兼評最高人民法院《關於受理證券市場因虛價陳述印發的民事侵權
糾紛案件有關問題的通知》的相關規定”,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1654.
- 安徽省法學會民商法研究會國企改革課題組, “國有控股公司實踐中的問題及
法律對策研究”, 政法論壇, 2000 第3期(總第93期).
- 楊 松, “國際貨幣基金協定變革與中國金融立法”, 中國法學 2000 第4期
(總第96期).
- 餘文娟, “論中國保險市場監管的完善”,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991.
- 閻秀華, “健全退市制度, 加強證券監督”, 法學雜誌, 2002年 第5期(總第
134期).
- 閻 海, 石柱奉, “中央銀行獨立性的法律思考”, <http://www.law-lib.com>

/lw/lw_view.asp?no=8.

- 吳曉求 (主編),『證券投資學』, (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0).
- 王蕭元, 周江洪, “上市公司收購中股東權的保護”, 政法論壇, 2000 第2期 (總第92期).
- 王淑敏, “入世對實施律師責任保險制度的影響”, 法學雜誌, 2001년 제4기 (總 第127期).
- 王洪林, “析證券內幕交易罪”, 法學雜誌, 2001年 第5期(總第128期).
- 魏現州, “設立國內二板市場的法律問題”, 法制日報, 2001.6.27.
- 劉洋海, “入世對中國金融業的影響及其法律對策”,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400.
- 劉傳葵 “內部風險控制是基金立足之本”, 21世紀經濟報道, 2002년 4월 1일.
- 劉定華, 鄭遠民, “金融監督的立法原則與模式”, 法學研究, 제24권 제5기 (총제142권)(2002).
- 殷 武, “目前我國《證券法》存在的主要問題及修改建議”,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2030.
- 李金澤, “我國銀行監管法制存在的問題及其對策”,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4.
- 李 立, “金融監管重任材肩”, 法制日報, 2001.1.4.
- 李曙光, 肖建華, “中國市場經濟法律:進展餘評價”, 政法論壇(2002年 第5期).
- 李純貴, 趙玉寶, “商業銀行論中的貸款風險及防范”,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948.
- 李仁真, 溫樹英, “國際金融服務貿易的多辯法律框架”, 政法論壇, 2001 第

參考文獻

6期(總第102期)。

李俊敏, “操縱證券交易市場民事責任賠償若干問題初探”,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1559.

李春杰·劉崇明, “我國證券市場的六大風險”, 『投資與證券』第1期(2001), (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

蘭翠屏, “保障金融經濟安全的法律思考”, 法學雜誌, 2003年 第3期(總第138期)。

岑劍平, “淺論證券操縱行爲”,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1034.

張若思, “WTO金融服務貿易法類制度”, 『法學研究』, 第22卷 第6期(總131期)(2000.11)。

張長利, “政策性銀行法律地位研究”,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1104.

———, “政策性銀行法性質探討” 法學雜誌, 2000年 第1期(總第118期)。

———, “從金融不良資產處置看中國法治建設”,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1251.

張忠軍, “WTO與中國金融法制的完善”, 『中國法學』, 2000年 3期(總 第95期)。

———, “論金融法的安全觀”, 中國法學 2003 第4期(總第114期)。

張惠芳, “淺析操縱證券、期貨交易價格罪的有關問題”, 政法論壇, 2000 第3期(總第93期)。

鄭坤山, “試論證券民事賠償制度的建立與完善”,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1569.

- , “混業經營模式與我國銀行業的發展”,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1476.
- 鄭成思, “WTO與知識財產權研究”, 『中國法學』, 2000年 3期(總 第95期),
- 鄭 州, “金融業存量資產流失不容忽視”, 法制日報, 2002.6.29.
- 周 理, “貨幣市場：我國商業匯票市場的發展及存在問題”, 『金融與保險』第8期(2000), (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
- 朱鎔基材全國銀行證券保險工作座談會上強調, 整頓金融姪婿強化金融法治, 法制日報, 2001.1.16.
- 周友蘇, “論證券民事責任”, 中國法學 2000 第4期(總第96期),
- 陳 甦, “民事責任制度與證券法宗旨”,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795.
- , “析證券發行審核制度的二元結構”, 法學雜誌, 2001年 第1期(總第124期),
- 陳 俊, “WTO所需的我國金融立法創制”, 法學雜誌, 2001年 第4期(總第127期),
- 陳青東, 村尾龍雄, “中國における外商投資企業の上場に関する法制度および最近の政策動向”, (上), 國際商事法務, Vol.30.No.3(2002),
- 陳青東, 村尾龍雄, “中國における外商投資企業の上場に関する法制度および最近の政策動向”, (下), 國際商事法務, Vol.30.No.4(2002),
- 陳曉棟, “基金真的減創了嗎”上海證券報 港懷資訊 2003년 1월 27일.
- 蔡祖國, “規制我國開放式基金風險的法律思考”,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1366.
- 戚 寶, “金融創新餘金融監管”, http://www.law-lib.com/lw/lw_

參考文獻

view.asp?no=1391.

肖黎明, 劉莞, 陳俊鋒, “從稅收聽升看開市後的走勢”, 法制日報, 2001.5.23.

崔勤之, “保障商業銀行信貸安全的幾項措施”, 法學雜誌, 2003年 第4期
(總第139期).

何雁明, “國際政券市場法律規範方式的創新對深化中國證券市場改革的啓示”,
『金融與保險』第7期(2000), (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

栢林, “中國證券法反詐欺規則分析”, 法學雜誌, 2001年 第5期(總第128期).

胡健芳, “中國WTO加盟後の外資金融機構に對する法規制の動向 -「中華
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の改正について-”, 國際商事法務,
Vol.30.No.6(2002).

黃曉萍, “基金信息披露等待陽光”, 證券時報 2003년 1월 23일.

曉 軍, “銀行與證券業開展合作的趨勢分析”, 『金融與保險』第6期(2000),
(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

朴起舜, “中國의 WTO加入과 金融改革”, 對外經濟政策研究, 제4권 제3호
(2000).

<http://finance.sina.com.cn> 2003-8-11 新浪財經.

<http://finance.sina.com.cn> 2003-8-28 《證券日報》.

www.homeway.com.cn 2003-6-26 《證券日報》.

www.homeway.com.cn 2003-7-27 曉平, 劉廷鋒 《上海證券報》.

www.homeway.com.cn 2003-7-30 張勇軍 《上海證券報》.

www.homeway.com.cn 2003-8-20 章項 《沈川商報》.

www.homeway.com.cn 2003-8-28 林堅 《上海證券報》.

“Chinese Economist Argue For State-Owned Bank Market Listings”, China On Line, <http://www.chinaonline.com/industry/financial/NewsArchive/Secure/1999/november/B>.